

[한화에너지(주)]

공정거래 자율준수 편람

(2026)

Copyright © 2026 All rights reserved.

# INDEX

## Part. I. 임직원 공정거래 자율준수 행동 가이드

- 01 기본 원칙\_6
- 02 공정거래법 자율준수\_9
- 03 하도급법 자율준수\_14
- 04 영업비밀보호 자율준수\_15
- 05 당사 적용 주요 공정거래 법규\_16

## Part. II.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의 이해

- 01 CP의 개요\_19
- 02 CP핵심 8대 요소\_20
- 03 한화에너지의 CP 안내\_21
- 04 CP 등급평가\_29
- 05 공정거래 위원회 소개\_30

## Part. III. 공정거래 관련 법규 해설

- 01 공정거래법 해설\_34
  - 1.1. 공정거래법 개관\_34
  - 1.2. 부당한 공동행위\_36
  - 1.3. 일반 불공정거래 행위\_46
  - 1.4. 대기업집단의 규제\_62
  - 1.5. 부당지원행위 규제\_79
  - 1.6.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금지\_96
  - 1.7. 부당 기업결합의 제한\_109
  - 1.8.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_117

# INDEX

## Part. III. 공정거래 관련 법규 해설

- 02** 하도급법 해설\_122
  - 2.1. 하도급법 개요\_122
  - 2.2. 원사업자의 의무사항(계약체결 관련)\_124
  - 2.3. 원사업자의 의무사항(대금 결정 등 관련)\_132
  - 2.4. 원사업자의 의무사항(계약 이행 관련)\_144
  - 2.5. 원사업자의 의무사항(하도급대금 지급 등 관련)\_153
  - 2.6. 원사업자의 의무사항(기술탈취 금지)\_161
  - 2.7. 원사업자의 의무사항(기타 불공정 행위 금지)\_170
  - 2.8. 하도급법 위반시 제재\_171
  
- 03** 약관규제법 해설\_172
  - 3.1. 약관규제법 개요\_172
  - 3.2. 약관의 명시 설명 의무\_173
  - 3.3. 약관 해석의 원칙\_175
  - 3.4. 불공정 약관\_172
  - 3.5. 불공정 약관 주요 사례\_182
  - 3.6. 약관규제법 위반시 제재\_183
  
- 04** 상생협력법 해설\_184
  - 4.1. 상생협력법 개요\_184
  - 4.2. 상생협력법상 의무 및 금지행위\_185
  - 4.3. 상생협력법 위반시 제재\_186
  
- 05** 부정경쟁 방지법 해설\_187
  - 9.1. 부정경쟁 방지법상의 영업비밀 침해금지\_187

# INDEX

## Part. IV. 공정거래 자율점검 체크리스트

- 01 체크리스트 안내\_196
- 02 CP 자가점검 체크리스트\_197
- 03 공정거래법 체크리스트\_198
- 04 하도급법 체크리스트\_207
- 05 기타법령 체크리스트\_210
- 06 영업비밀 체크리스트\_211

## Part. V. 공정거래 관련 법령 안내

- 01 공정거래법 및 관련 법규\_213
- 02 하도급법 및 관련 법규\_217
- 03 부정경쟁 방지법 및 시행령\_217
- 04 기타 법령\_218

## 부록. 공정거래 관련 주요 규정 안내

- 01 H-Standard\_220

# I. 임직원 행동 가이드

1. 기본 원칙
2. 공정거래법 자율준수
3. 하도급법 자율준수
4. 영업비밀보호 자율준수
5. 당사 적용 주요 공정거래 법규



## 1. 기본 원칙

### 1.1. 임직원의 준법의무 및 실천

#### ▪ CP 관련 최고경영자의 의무

##### ▶ 당사 CP 운영규정 제4조(최고경영자의 의무)

- ① 최고경영자는 회사의 모든 임직원들이 공정거래법규를 준수하는 문화를 조성하고 CP를 적극적으로 실천할 수 있도록 CP 실천의지를 선언하고, 이를 임직원들에게 수시로 전달하며, 홈페이지 등을 통해 외부에 공표하여야 한다.
- ② 최고경영자는 CP 실천의지를 전 부서의 사업목표에 반영하도록 직접 지시하여야 한다.
- ③ 최고경영자는 CP 문화 촉진 및 관련 캠페인, 행사 등에 연 2회 이상 직접 참여하여야 한다.
- ④ 최고경영자는 CP가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CP 운영을 총괄하는 자율준수관리자에게 독립적인 권한과 책임을 부여하고, CP가 기업 운영의 최우선이 되는 정책임을 보장하여야 한다.
- ⑤ 최고경영자는 CP 운영 및 제도 개선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자율준수관리자 및 CP 전담부서에 CP 운영에 관한 예산과 조직을 지속적으로 지원하여야 한다.

#### ▪ 2026년 CEO 자율준수 의지 선언

##### ▶ 한화에너지는 공정거래 관련 법규를 자율적으로 준수할 것을 선언함

우리 한화에너지는 준법 경영 강화를 위해 2025년 12월 ISO 규범준수 경영시스템(ISO 37301) 취득하였으며, 이는 한화에너지가 국제적인 수준에 부합한 내부통제 및 리스크 관리 체계를 갖추고 있음을 대외적으로 검증 받았다는데 의미가 있습니다.

이러한 흐름에서, 한화에너지는 2026년부터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Compliance Program)을 고도화 하고자 하며, 특히 전사적인 준법의식 확산을 위하여 기존 CP 제도와 조직을 정비하고, CP 관련 교육, 행사 등 실효적인 방안을 도입하여 규범준수 문화를 회사 핵심 가치로 내재화 하려 합니다.

임직원 모두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한화에너지

대표이사 이재규



## 1. 기본 원칙

### 1.1. 임직원의 준법의무 및 실천

- 당사의 모든 임직원은 아래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 운영규정(CP 운영규정) 제10조를 준수하고 이에 따라 행동하여야 함

#### ▶ 당사 CP 운영규정 제10조(임직원의 의무)

- ① 회사의 임직원은 공정거래법규 및 CP 관련 사내 규정 등과 자율준수편람의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한다.
- ② 회사의 임직원은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공정거래법규 및 CP관련 사내 규정 위반행위를 발견하였거나 위반가능성을 인지하는 경우 또는 위반 여부에 대하여 의문이 있는 경우, 그 내용을 신속하게 자율준수관리자 또는 CP 전담부서에 보고하여야 한다.
- ③ 최고경영자를 포함한 회사의 모든 임직원은 자율준수관리자 또는 CP 전담부서에서 실시하는 CP 교육(이 규정의 위임에 따라 회사 내 다른 부서가 실시하는 CP 교육을 포함한다)에 참여하여야 한다.
- ④ 회사는 임직원으로 하여금 공정거래법규 등을 위반하는 내용의 지시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임직원이 그와 같은 지시를 받은 경우에는 이를 즉시 거부하여야 하며, 회사 또는 다른 임직원으로부터 위와 같은 지시의 이행을 강요 받을 때에는 즉시 이를 CP 전담부서에 제보하여야 한다.
- ⑤ 각 부서의 부서장은 소속 임직원의 준법 여부를 감독하고, 공정거래법규 및 CP 관련 사내 규정을 위반하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 당사 CP 운영규정 제11조(CP 매니저)

- ① 회사는 임직원의 자율준수 활동을 위하여 팀 별로 CP매니저를 지정한다.
- ② CP 매니저는 CP 전담부서와 협력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은 팀별 자율준수 활동을 실시한다.
  1. 자율준수편람, 업무 매뉴얼 등 각종 지침의 전파 및 홍보
  2. 팀별 CP 자율 점검
  3. 자율준수관리자 및 CP 전담부서와 협력하여 공정거래 관련 회사 정책 및 CP활동의 수행



## 1. 기본 원칙

### 1.1. 임직원의 준법 의무 및 실천

- 공정거래 자율준수 실천서약서

▶ 대표이사, 자율준수관리자를 포함한 전사 임직원 공정거래 자율준수 실천 서약

#### 공정거래 자율준수 실천 서약서

나는 전사적인 준법 의식 확산을 위하여 한화에너지의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CP) 및 규범준수 경영시스템 운영에 적극 동참함으로써 회사가 지향하는 준법경영을 실천할 것을 서약합니다.

첫째. 나는 공정거래 자율준수 실천 및 사회적 가치 제고에 적극 참여한다.

둘째. 나는 공정거래 관련 법령을 숙지하고, 위반행위가 없도록 사전 예방을 위해 노력한다.

셋째. 나는 공정거래 자율준수 문화를 회사 핵심 가치로 내재화하기 위해 노력하며, 협력업체 및 이해관계자와 상생발전을 도모한다.

2026 년 4 월 15 일



## 2. 공정거래법 자율준수

### 2.1. 부당한 공동행위 분야



#### 임직원 실천 가이드



##### 부당한 공동행위 관련 행동지침

- 가격 등을 포함한 거래조건이나 이를 결정하는데 필요한 자료를 경쟁사에 요구, 제공, 교환하지 않을 것
- 경쟁사로부터 가격이나 거래조건에 대한 문의 또는 요청이 있을 경우 제공이 불가능함을 밝히고 이를 기록으로 남겨둘 것
- 상대방 또는 모임, 교류회 등으로부터 담합 요청 또는 권유가 있을 경우 이를 명확하게 거절 하고, 향후 해당 상대방 또는 모임 등의 접촉은 자제할 것
- 경쟁사 관련 정보는 적법하게 입수하여야 하며, 입수경위와 출처를 명확하게 기록할 것
- 입찰에 참여하려 하는 경우, 실적, 대상, 물건 등에 관한 수주예정사의 선정과 관련한 정보를 입찰 참가가 예상되는 다른 사업자와 교환하지 말 것
-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입찰에 관한 발주 수량, 비율 등을 경정하지 말 것
- 입찰대상이 되는 상품 또는 용역의 가격수준이나 동향에 관한 정보를 당해 입찰에 참가하려고 하는 사업자간 정보교환을 하거나, 동종업체간 정보수집 또는 제공, 정보교환 촉진 불가
- 동일 입찰에 참여하는 다른 사업자의 입찰 관련 서류를 대신 작성해 주거나 전달해 주지 말 것
- 당사가 낙찰받은 사업 건과 관련하여, 해당 입찰에 참여하였던 다른 사업자를 당사의 하도급 업체로 선정하는 행위는 담합으로 의심받을 소지가 크므로 지양. 단, 반드시 해당 업체 소싱이 필요한 경우는 법무부서 검토를 거친 후 해당 사업 건 발주자로부터 서면 승낙을 받을 것
- 들러리로 입찰에 참여해 달라는 요구가 있을 경우 이를 단호히 거절할 것
- 입찰 관련 회사 내부 자료, 이메일 등에 담합 사실이 없음에도 외부에서 오해할 만한 표현을 사용하지 말 것(업체 사전 협의 완료, 협력 또는 협조 강화, 당사 지원 예정 등)
- **다른 사업자와 합의·협의 등을 통해 입찰가격을 정하는 행위, 낙찰 예정자 또는 수주 물량을 결정하는 행위는 절대로 불가함을 명심할 것**



## 2. 공정거래법 자율준수

### 2.2. 일반 불공정 거래행위 분야



#### 임직원 실천 가이드



##### 일반 불공정 거래행위 행동지침

- 당사와 거래를 원하는 업체가 있을 경우 해당 업체에 거래 개시에 대한 대가로서 해당 거래와 무관한 부당행위를 요구하지 말 것
- 상기 부당행위 요구에 업체가 응하지 않는다고 하여 거래 개시를 거절하지 말 것
  - ☞ 상기 부당행위에는 당사가 지정하는 제3자의 물품, 용역을 의무적으로 구입하게 하는 행위, 금품 또는 향응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등이 있을 수 있음
- 거래 대상 업체의 선정 또는 거래 거절은 반드시 회사 내부의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할 것
- 동일한 상품·용역 등을 제공하는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비계열회사에 현저하게 불리한 가격 조건을 설정하지 말 것
- 합리적인 이유 없이 특정 사업자만을 거래조건, 서비스 내용 등을 차별하여 거래하지 말 것
- 고객이 당사 서비스, 제품 등을 구입·사용하게 하기 위하여 고객 또는 고객 담당자에 불법적 금품 또는 향응(리베이트)을 제공하지 말 것
- 고객에게 제공하는 당사 서비스, 제품 관련 정보는 항상 진실된 정보만을 제공하여야 하고, 고객을 유인하기 위하여 허위·과장된 정보를 고객에게 전달하여서는 아니됨
- 고객이 당사와 거래하게 하기 위하여 경쟁사 사업활동을 방해·침해하는 행위를 하지 말 것
- 당사 용역, 서비스 제공을 조건으로 고객에게 불필요한 기타 용역, 서비스 등을 구매하도록 하지 말 것(끼워팔기 금지)
- 당사의 업계 지배력 강화 또는 신규 사업자 진입 저지를 위해 물품·용역 등을 현저히 저가로 판매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
- 협력업체 거래 시 객관적으로 봤을 때 업체가 달성할 수 없는 조건을 내세우고 업체가 이를 달성하지 못할 것을 빌미로 거래물량 축소, 협력업체 탈락 등의 불이익을 주지 말 것
- 특정 사업을 위하여 경쟁사 핵심인력을 과도한 이익을 제공하는 등의 방식으로 빼오는 행위를 하지 말 것



## 2. 공정거래법 자율준수

### 2.2. 일반 불공정 거래행위 분야



#### 임직원 실천 가이드



##### 일반 불공정 거래행위 행동지침

- 부당하게 상대방에게 불이익을 주는 계약조건(업체 귀책 시 계약금액 무조건 전액 환수 등)을 설정하지 말 것
- 업체의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당초 계약 내용과 다르게 그 내용, 품목, 가격, 요금 등에 관하여 당사의 지도를 받거나 허가를 받도록 하는 등의 부당한 경영 간섭 행위를 하지 말 것
- 당사의 제품, 서비스 등을 정당한 사유 없이 특정 지역이나 상대방에 한하여 거래 하지 말 것
- 사업 수행 시 거래 상대방의 기술을 무단으로 이용하지 말 것
- 당사와의 기존 거래 관계를 종료하고 거래처를 다른 회사로 변경하려고 하는 업체에게 정당한 환급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기존 재고를 일방적으로 전량 반품 또는 담보·보증보험 등을 해제, 반환하지 않는 등의 방식으로 거래처 이전을 방해하지 말 것
- 업체가 당사의 경쟁사업자와 거래하거나 경쟁사업자의 물품 등을 취급한다는 이유로 업체에 부당한 요구를 하거나, 이를 지키지 않았다는 이유로 거래 종료 등 불이익을 주지 말 것
- 업체의 당사에 대한 거래 의존도가 매우 높음을 이유로 해당 업체에 부당한 요구를 하거나, 합리적인 이유없이 거래를 거절하는 등 부당하게 불이익을 주지 말 것



## 2. 공정거래법 자율준수

### 2.3. 부당지원행위 분야



#### 임직원 실천 가이드



##### 부당지원 행위 행동지침

- 공정거래법상 '일반 부당지원 행위(상당한 규모·유리한 조건의 거래, 통행세 거래)' 금지규정은 당사와 계열사간 거래 뿐만 아니라, 당사와 비계열사간 거래에도 적용되는 규정임을 명심할 것
- 계열사와 내부거래를 추진하고자 할 경우(수의계약, 경쟁입찰 모두 포함) 시 회사 규정·지침 등에 따라 사전에 내부거래 심의를 거쳐 공정거래법 위반 여부를 심의 받을 것
- 공정거래법상 부당지원 행위는 그러한 부당지원을 받은 회사, 부당지원을 한 회사 모두 처벌 대상이라는 점을 유의할 것.
- 계열사인 고객이 계약 내용에 포함되지 않은 추가 업무를 그에 대한 대가 지급없이 수행할 것을 요청하는 경우, 이는 공정거래법상 금지되는 부당지원 행위에 해당할 소지가 있음을 알린 후 추가업무에 대한 정당한 변경계약 체결 후 이를 수행할 것
- 역할이 없는 회사(계열사, 비계열사 포함)을 거래 단계에 추가시키거나, 그 역할에 비해 과도하게 높거나 낮은 대가를 지급하지 말 것
- 특별한 역할 없이 거래 단계에 끼어드는 행위, 역할에 비해 과도하게 높거나 낮은 대가를 받는 행위를 하지 말 것
- 계열사와의 거래라 하여 상호 체결한 계약 내용상의 상대방 책임을 면제하는 행위, 계약 대금 지급 기한을 연장하는 행위 등을 통해 상대방을 간접적으로 지원하는 행위 또한 공정거래법상 부당지원 행위에 해당할 소지가 있으므로, 계열사간 거래 시에도 상호 체결한 계약의 내용을 철저히 준수할 것
- 계열사와 내부거래 시 그 가격에 대해 정상가격과의 비교절차, 보안성·효율성·긴급성 등의 검토 등 공정거래법에서 규정하는 절차를 거칠 것
- 계열사에 대한 지원 행위가 그 요건상 공정거래법상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지원 행위'에는 해당하지 않더라도, '일반 부당지원 행위'에는 해당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하고 그러한 부당지원 행위를 하지 말 것



## 2. 공정거래법 자율준수

### 2.4.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 분야



#### 임직원 실천 가이드



#####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 행동지침

- 당사가 어떤 시장에서 시장지배적인 지위에 있는지 미리 확인할 것
- 시장지배적 지위가 있는 시장에서 거래할 때는 거래상대방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거래조건이나 경제적 이익을 제공할 것을 요구하거나 거래상대방 사이에 부당한 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할 것
- 시장지배적 지위가 있는 시장에서는 경쟁사업자에게 영향을 미치기 위한 목적으로 가격을 상당히 낮추거나 경쟁사업자와 거래하지 않는 조건을 거래상대방에게 부과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할 것
- 시장지배적 지위가 있는 시장에서는 원가 인상등의 요인이 있다고 하더라도 판매 가격 인상에 있어 원가 인상분에 비해 판매 가격 인상분이 지나치게 크게 되지 않도록 주의할 것



### 3. 하도급법 자율준수

#### 3.1. 하도급법 분야



#### 임직원 실천 가이드

##### 하도급법 행동지침



- 하도급법은 기본적으로 당사와 중소기업인 수급사업자간의 하도급거래에 적용되는 규정이나, 대금 지급, 보복행위 금지 등 일부 규정은 당사/중견기업간 거래에도 적용된다는 점 유의
- 업체가 중소·중견기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법무부서에 문의하여 확인 받을 것
- 하도급 계약이 체결완료되기 전에는 절대로 업체에 업무를 지시하지 말 것
- 공정위 표준계약서가 아닌 양식으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해당 계약서에 대해 반드시 법무부서 사전 검토를 거쳐 하도급법 위반소지(부당특약 등)가 있는 지를 확인할 것
- 선급금 및 하도급대금은 하도급법상 규정에 맞게 지급할 것(15일·60일 이내, 현금 비율 유지)
- 하도급법상 대금 지급기한 초과 시 내부 프로세스에 따라 즉시 보고 후 업체에 하도급법에 따른 지연이자를 지급할 것
- 정당한 사유 없이 업체가 납품한 물건·용역 등의 수령·검수 요청을 거절·반품하지 말고, 거절 등에 대한 정당 사유가 있는 경우 공문, 검수 미통과 사유서 등으로 명확하게 증빙을 남길 것
- 당초 정한 하도급 금액을 감액하거나 업무를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하는 경우 반드시 합의서 등 서면으로 그 상세 내용을 업체에 알리고, 그로 인해 업체에 발생한 손해를 보상할 것
- 부당하게 업체에 금전, 물품, 용역 등을 포함한 경제적 이익을 제공할 것을 요구하지 말 것
- 기술자료는 회사 내 기술자료 요구 프로세스에 따라 정당하게 요구서를 발급하여 요구할 것
- 업체로부터 수령한 기술자료는 해당 요구서, 비밀유지계약 내용에 따라 유용·유출하지 말 것
- 업체의 하도급대금 조정 요청이 있을 경우 하도급법 규정에 따라 성실히 이에 응할 것
- 당해 거래와 관련한 업무 연락을 하는 것 외에 부당하게 업체 경영에 간섭하지 말 것
- 하도급법상 예외 사유(그 특성상 검사에 장기간이 소요되는 업무 등)에 해당하지 않는 한, 검사 결과는 10일 이내에 통지할 것



## 4. 영업비밀보호 자율준수

### 4.1. 영업비밀 보호·침해 예방 분야



#### 임직원 실천 가이드

##### 영업비밀 보호·침해 예방 행동지침



- 타사 영업비밀로 의심되는 자료를 무분별하게 수집하지 말 것
- 수령한 타사 자료를 NDA 등에 따른 공유·사용 권한 확인 없이 사내에 공유하지 말 것
- 사내 보고 시 그러한 사실이 없음에도 타사 중요 정보를 수집하였다는 오해를 받을 수 있는 표현을 사용하지 말 것
- 타사 자료를 수집, 사용, 폐기하는 방법과 관련하여 불분명한 사안이 존재할 경우 이를 개인이 임의적으로 판단하지 말고 법무, 보안부서 등 유관부서와 협의할 것
- 타사 영업비밀이 유입된 정황 발견 시 상대방에게 전화나 문자, 이메일로 답변하는 등 부서별 독자적으로 대응하지 말고, 법무, 보안부서 등 유관부서와 협의하여 이에 대응할 것
- 경쟁업체 영업비밀을 취득할 의도로 경쟁업체에서 전직한 인력을 통해 그 인력의 기존 팀원 채용을 유인하지 말 것
- 경쟁업체 직원 상당수에 대해 동시에 전직할 것을 권유·유도하지 말 것
- 경력직 사원에게 종전 근무회사로부터 습득한 기술상, 경영상 정보 등 종전 회사의 영업비밀 자료를 당사에 제공할 것을 요구하지 말 것
- 경력직 사원이 종전 회사로부터 습득한 영업비밀이 포함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은 물품(PC, 저장매체 등)은 회사 내에 반입하지 말도록 할 것
- 상호간에 NDA를 체결하기 전까지는 제3자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거나 요구하지 말 것
- 업무 편의를 위하여 중요 정보·자료를 취급하는 임직원에게 필요 이상의 권한을 부여하거나, 정보 등의 취급 인력을 무분별하게 확대하지 말 것
- 신규로 생성되거나 취득한 정보·자료를 회사 규정에 따른 승인 없이 외부에 공개하지 말 것
- 직원 퇴사 시 반드시 영업비밀 유출 방지를 위한 회사 내부 검증 절차를 거칠 것 (PC·정보매체 반납 확인, 중요 자료 반납·폐기 확인 등)



## 5. 당사 적용 주요 공정거래 법규

### 5.1. 당사 적용 주요 공정거래 법규

법령	주요 내용	관련 부서
공정거래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부당한 공동행위(담합) 금지</li> <li>• 일반 불공정 거래행위 금지</li> <li>•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규제</li> <li>• 부당지원 행위·통행세 금지</li> <li>• 특수관계인 부당이익 제공 금지</li> <li>• 부당 기업결합의 제한</li> <li>• 계열사간 상호출자 금지</li> <li>• 시장지배적지위 남용금지</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 부서</li> </ul>
하도급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서면의 발급 및 서류의 보존</li> <li>• 부당한 특약의 금지</li> <li>• 부당한 하도급대금의 결정 금지</li> <li>• 물품 등의 구매강제 금지</li> <li>• 선급금의 지급</li> <li>• 내국신용장의 개설</li> <li>• 부당한 위탁취소의 금지 등</li> <li>• 검사의 기준·방법 및 시기</li> <li>• 부당반품의 금지</li> <li>• 감액금지</li> <li>• 물품구매대금 등의 부당결제 청구의 금지</li> <li>• 경제적 이익의 부당요구 금지</li> <li>• 기술자료 제공 요구 금지 등</li> <li>• 하도급대금의 지급 등</li> <li>• 건설하도급 계약이행 및 대금지급 보증</li> <li>• 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li> <li>• 관세 등 환급액의 지급</li> <li>• 설계변경 등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조정</li> <li>• 공급원가 등의 변동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조정</li> <li>• 부당한 대물변제의 금지</li> <li>• 부당한 경영간섭의 금지</li> <li>• 보복조치의 금지</li> <li>• 탈법행위의 금지</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구매·회계·자금 부서</li> <li>• 그 외, 하도급 업체 거래·협업하는 전 부서</li> </ul>
영업비밀 보호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영업비밀 침해 금지</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 부서</li> </ul>



## 5. 당사 적용 주요 공정거래 법규

### 5.1. 당사 적용 주요 공정거래 법규

법령	주요 내용	관련 부서
약관규제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약관의 명시 설명</li> <li>•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 금지</li> <li>• 고객이 예상하기 어려운 조항 금지</li> <li>• 고객의 계약상 본질적 권리 제한 조항 금지</li> <li>• 면책조항 금지</li> <li>• 부당한 손해배상액의 예정 조항 금지</li> <li>• 계열사간 상호출자 금지</li> <li>• 계약의 해제·해지권 제한 금지</li> <li>• 일방적으로 제공되는 급부를 변경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 금지</li> <li>• 의사표시 의제조항 금지</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 부서</li> </ul>
상생협력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약정서, 수령증 발급 의무</li> <li>• 비밀유지계약 체결의무</li> <li>• 납품대금 지급의무</li> <li>• 검사 및 불합격 통보 의무</li> <li>• 적정한 납품대금 결정 의무</li> <li>• 부당한 발주 중단 및 감축 금지</li> <li>• 기술자료의 부당한 요구 금지</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구매·회계·자금 부서</li> <li>• 그 외, 하도급 업체 거래·협업하는 전 부서</li> </ul>

## II.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의 이해

1. CP의 개요
2. CP 핵심 8대 요소
3. 당사의 CP 안내
4. CP 등급평가
5. 공정거래위원회 소개



## 1. CP의 개요

### 1.1. CP(Compliance Program)란?

경제주체인 기업들이 경제활동을 하는데 있어 경쟁질서를 확립하고, 공정거래 관련 법규를 스스로 준수하기 위하여 자체적으로 제정 운영하는 교육·감독 등의 내부 준법 시스템

### 1.2. CP의 의의

CP는 공정거래 관련 법규를 준수하기 위한 기업의 내부 준법 시스템으로서, 다음과 같은 의의를 가짐

#### 공정거래 법규 준수를 위한 행동기준 제시

- 임직원의 공정거래 관련 법규 준수를 위한 행동 기준을 제시
- 준법의식을 기업문화로 체화
- 공정거래 관련 법규 위반 여부를 조기 발견하고 자진 시정할 기회를 제공
- 동일한 법 위반 행위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대응책 마련 기반 제공

#### 글로벌스탠다드(Global Standard) 부합

- 미국·일본·유럽 등 경제 선진국은 오래전 부터 CP를 도입하여 운영 중
- 이러한 선진국들은 CP를 기업의 법 위반에 대한 재판 시 양형기준에 포함
- 우리나라도 기업 경제활동의 핵심 요소로 CP를 요구하고 있음

#### CP 운영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 우리나라는 2001년 민간 주도로 CP제도를 자발적으로 시행
- CP 운영 기업들에 대한 CP 등급 평가 등급별 인센티브
  - 평가 결과 AA 등급 이상 기업은 공정거래 관련 과징금 감경, 시정조치 감경, 직권조사 면제, 표창 및 평가증 수여 등



## 2. CP 핵심 8대 요소

2.1. 의의: 기업이 CP를 도입한 것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다음 8가지 요건을 충족하여야 함

### 1. CP 기준과 절차 마련 및 시행

소속 임직원들이 업무와 관련된 공정거래 법규 준수사항을 명확히 인지하고 이를 실천할 수 있도록 필요한 기준과 절차를 마련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 2. 최고경영자의 자율준수 의지 및 지원

최고경영자는 공정거래 관련 법규 자율준수 의지와 방침을 공개적으로 표명하고 CP 운영을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 3. CP의 운영을 담당하는 자율준수관리자 임명

이사회 등 최고 의사결정기구는 조직 내 자율준수관리자를 임명하고, 자율준수 관리자에게 효과적인 CP운영에 대한 책임을 부여하여야 한다.

### 4. 자율준수편람의 제작·활용

자율준수편람은 자율준수관리자의 책임 하에 작성된 것으로 공정거래 관련 법규 및 CP기준과 절차 등을 포함한다. 편람은 모든 임직원이 쉽게 접근하여 활용할 수 있는 문서 혹은 전자파일 등의 형태로 제작되어야 한다.

### 5.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자율준수교육 실시

CP 기준·절차, 공정거래 법규 준수 사항 등에 대하여 최고 경영자, 구매·판매부서 등 공정거래 위반 가능성이 높은 분야의 임직원을 대상으로 효과적인 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 6. 내부감시체계 구축

위법행위의 예방 또는 조기 발견을 위해 합리적으로 계획된 감시 및 감사 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용하여야 한다. 감시 및 감사 결과는 주기적으로(최소 연 2회 이상) 이사회 등 최고 의사결정기구에 보고되어야 한다.

### 7. 공정거래 관련 법규 위반 임직원에 대한 제재

공정거래 관련 법규 위반책임이 있는 임직원에 대하여 그 위반정도에 상응하는 제재조치를 규정한 사규를 마련·운용하여야 한다. 또한 임직원의 법 위반 행위 발견 시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추후 유사한 행위가 재발되지 않도록 예방하여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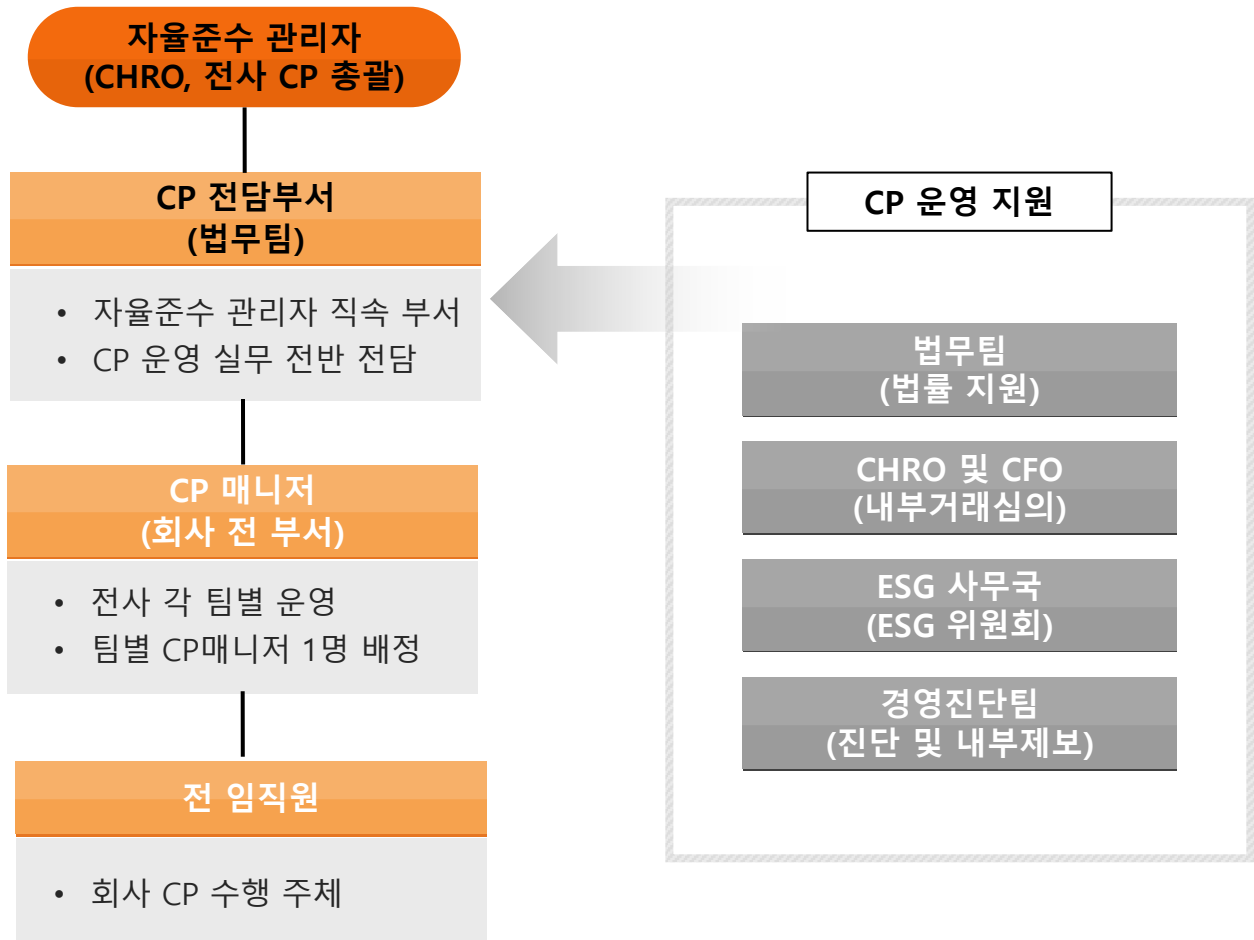
### 8. 효과성 평가와 개선조치

CP가 효과적으로 지속하여 운영될 수 있도록 정기적으로 CP 기준, 절차, 운용 등에 대한 점검, 평가 등을 실시하여 그에 따라 개선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3. 한화에너지의 CP 안내

#### 3.1. 한화에너지 CP 조직





### 3. 한화에너지의 CP 안내

#### 3.2. 한화에너지 CP 주요 제도

##### 3.2.1. 공정거래 자율준수프로그램 운영기준(CP 운영기준)

- 회사 CP 전반에 대한 근본 규정
  - CP 운영은 회사 규정인 'CP 운영기준'을 근본으로 하여 이에 근거를 두고 이루어짐
  - CP 운영기준은 회사 CP의 근본규범으로,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규정되어 있음
  - 모든 임직원은 CP 운영기준을 준수하고 이에 근거한 회사 CP 활동 전반에 적극 참여·협조하여야 함

#### CP 운영기준 주요 내용

- 목적 및 정의
- 최고경영자의 의무
- 회사 내 CP 운영 조직의 지정(자율준수관리자, CP 전담부서 등)
- CP 운영 조직별 권한과 책임
- 자율준수관리자의 독립성 보장
- 임직원의 준법 및 CP 준수 의무
- 준법경영 의지의 표명
- CP 운영 현황 및 성과의 검토, 점검·보고
- 사전업무협의제도
- CP 교육 전반에 대한 사항(계층별·부서별·업무관련성별 교육 시행, 교육 예산, 교육 효과성 평가 등)
- 내부제보시스템
- 자율준수 편람에 관한 사항
- 공정거래 관련 제재 및 포상에 관한 사항
- 개정에 관한 사항 등



### 3. 한화에너지의 CP 안내

#### 3.2. 한화에너지 CP 주요 제도

##### 3.2.2. 사전 업무협의 제도

###### 상시 법률 자문

- 모든 임직원은 언제든지 법무팀에 공정거래 관련 법규에 대한 법률 자문을 요청할 수 있음
- 자문 요청은 그룹웨어 내 전자결재 방식이 원칙이며, 이메일로도 검토 요청 가능함
- 법무 부서는 자문 요청 접수 시 이를 관련 법규에 비추어 면밀히 검토 하고, 검토 완료 시 합당한 자문을 제공하여야 함
  - ※ 필요 시 법무법인 등 외부 전문가의 조력을 구할 수 있음
- 자문 의견을 회신 받은 자는 해당 자문을 존중하여 관련 법규 위반이 없도록 업무 수행

###### 계약 사전 법무검토

- 제3자와 체결하는 모든 계약은 사전에 법무 부서를 통해 해당 계약 및 계약서의 내용이 공정 거래 관련 법규를 포함한 제반 법규에 위반되는지 여부를 검토 받아야 함
- 회사 규정에 따른 검토 면제 대상 계약 건(공정위 표준 계약서 활용 매입 계약 등)은 예외
- 계약 검토는 그룹웨어 내 법무시스템(HELIS)을 통하여 법무 부서 담당자에 검토 요청 및 계약 문서 관리
- 법무 부서 담당자는 계약 검토 요청 접수 시 해당 내용을 관련 법규에 비추어 면밀히 검토하여 법규 위반 여부, 발생 가능한 법적 리스크 및 이를 보완하기 위한 합리적인 방안 등을 회신
  - ※ 필요 시 법무법인 등 외부 전문가의 조력을 구할 수 있음
- 검토 의견을 회신 받은 자는 해당 의견을 존중하여 관련 법규 위반이 없도록 업무 수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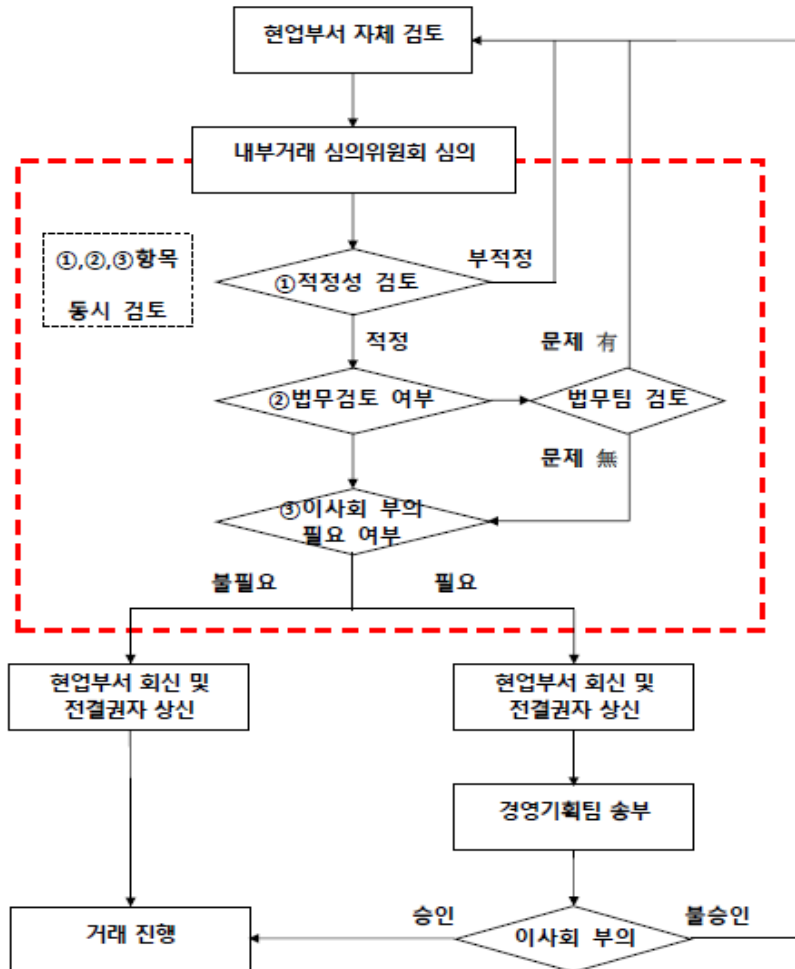
### 3. 한화에너지의 CP 안내

#### 3.2. 한화에너지 CP 주요 제도

##### 3.2.2. 사전 업무협의 제도

###### 내부거래 심의

- 당사와 상호출자 제한 기업집단 “한화” 소속 계열사간 내부 거래는 사전에 사내 내부거래 심의 위원회를 통해 상법 및 공정거래법상 관련 규정에 저촉되지 않는지 여부를 심의
- 심의 내용: 상법상 이사 자기거래, 공정거래법상 부당지원, 사익편취 금지, 대규모 내부거래 저촉 여부
  - 내부거래 필요성, 거래상대방 역할, 가격 및 기타 거래조건의 적정성 등
- 개최 주기: 월 1회 정기 개최. 단, 필요 시 임시 위원회 수시 개최 가능
- 위원회 프로세스 상세



※ 관련 상세 내용은 회사 게시판 내 “법률안내\_내부거래심의 가이드라인” 참조



### 3. 한화에너지의 CP 안내

#### 3.2. 한화에너지 CP 주요 제도

##### 3.2.3. 직접 보고체계

###### 자율준수관리자의 독립성 보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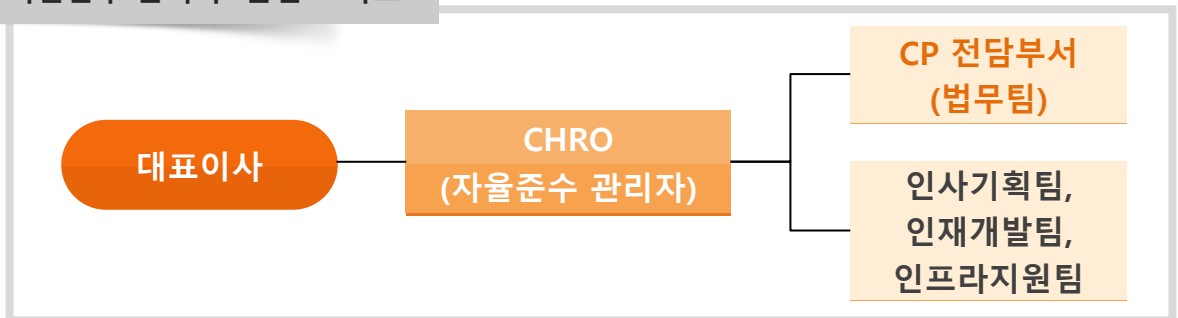
- 자율준수관리자는 CP 운영규정 제9조에 따라 그 업무에 있어 독립성을 보장받으며, 회사 CP 운영 관련 제반사항을 대표이사·이사회 등 최고 경영진에게 독립적으로 직접 보고할 권한을 가짐

###### ▶ CP 운영규정 제9조(자율준수관리자 및 CP 전담부서의 독립성)

- ① 회사 및 최고경영자는 자율준수관리자 및 CP 전담부서 소속 임직원이 당해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일체의 부당한 지시 내지 간섭을 받지 않도록 독립성을 보장하여야 한다.
- ② 자율준수관리자는 최고경영자 및 최고의사결정기구에 대하여 CP 운영에 관한 일체의 사항을 독립적으로 보고할 권한을 갖는다.
- ③ 전항에 따라 자율준수관리자가 최고경영자 및 최고의사결정기구에 대하여 독립적으로 보고할 수 있는 내용에는 회사가 준수하여야 하는 공정거래법규 위반 행위에 관한 일체의 사항이 포함된다.
- ④ 자율준수관리자 및 CP 전담부서 소속 임직원은 이 규정에서 정한 업무를 수행함으로써 인하여 그 어떠한 불이익도 받지 아니한다.
- ⑤ 회사 및 최고경영자는 자율준수관리자 및 CP 전담부서 소속 임직원이 이 규정에서 정한 업무를 수행함으로써 불이익을 받거나 받게 될 위험이 있는 경우, 실효성 있는 구제방안을 즉시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하며, 재발방지 대책을 함께 수립하여야 한다.

- 자율준수관리자 소속 부서를 최고 경영자 직속 부서로 독립하여, 자율준수 관리자가 위 규정 외에 실질적으로 독립성 및 직접 보고체계를 확립·확보할 수 있도록 함

###### 자율준수 관리자 관련 조직도





### 3. 한화에너지의 CP 안내

#### 3.2. 한화에너지 CP 주요 제도

##### 3.2.4. CP 관련 교육

- 회사는 임직원의 공정거래 자율준수를 위하여 다음과 같은 준법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음

##### 전사 기본교육

- CP 주관부서 주관 하에 시행되는 회사 전 임직원 대상 준법 교육
- 반기 1회 실시

##### 계층별 교육

- 대상자별 반기 1회 이상 실시
- 신규, 경력 입사자 대상 교육
- 법 위반 임직원, 교육 미이수자 대상 보수교육
- CP 전담부서 및 CP담당자 대상 교육
- 대표이사/임원 대상 세미나

##### 부문별 교육

- CP유관부서 대상 교육
- 여수·군산 공장 및 컨버전스 사업부 교육

##### 교육관련 활동

- 전사 CP 뉴스레터 발행
- CP매니저 워크샵 및 간담회

\* 모든 CP·준법교육은 공정거래 관련 사항 포함하여 시행하는 것이 원칙

\* 위 교육 외, 필요 시 임시·수시 교육 시행 가능



### 3. 한화에너지의 CP 안내

#### 3.2. 한화에너지 CP 주요 제도

##### 3.2.5. 내부 고발 및 제재·포상

###### 내부 고발제도

- 전 임직원은 다음과 같은 사항을 경영진단팀에 제한 없이 상시 제보할 수 있음
  - ✓ 임직원의 공정거래법 및 하도급법 위반행위
  - ✓ 임직원이 공정거래법 및 하도급법 위반행위 지시나 참여, 이를 묵인하는 행위
  - ✓ 임직원 이중 취업 사례, 공금횡령 및 수뢰 사실 및 부당한 업무 처리
  - ✓ 기타법규의 중대한 위반행위 및 회사의 규정 위반행위
  - ✓ 비상장 거래업체 부당 지분 참여
  - ✓ 금품, 접대 요구나 제공 사실, 성희롱에 따른 풍기문란 사례
  - ✓ 기타 윤리강령에 위배되는 사항
- 제보자 신원은 철저히 비밀로 보호되며, 제보 내용은 내부 규정 및 절차에 따라 조사·처리됨

구분	제보 창구
홈페이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윤리·준법경영 → 제보하기 → Hot Line</li> <li>- 제보 방식 선택 : 실명 제보 / 익명 제보</li> <li>- 제보하기</li> </ul>
Cleverse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메인화면 → (우측상단) 공정거래 자율준수 제보</li> </ul>

###### 법규 위반 임직원에 대한 제재

- 공정거래 법규 위반 임직원은 회사 인사규정상의 제재 규정의 절차·내용에 따라 제재
- 인사규정상 제재와는 별도로, 법규 위반 발생 시 해당팀 CP매니저 활동 점수 감점 부여

###### 포상제도

- 연간 CP 활동 우수 임직원에 대한 포상 실시



### 3. 한화에너지의 CP 안내

#### 3.2. 한화에너지 CP 주요 제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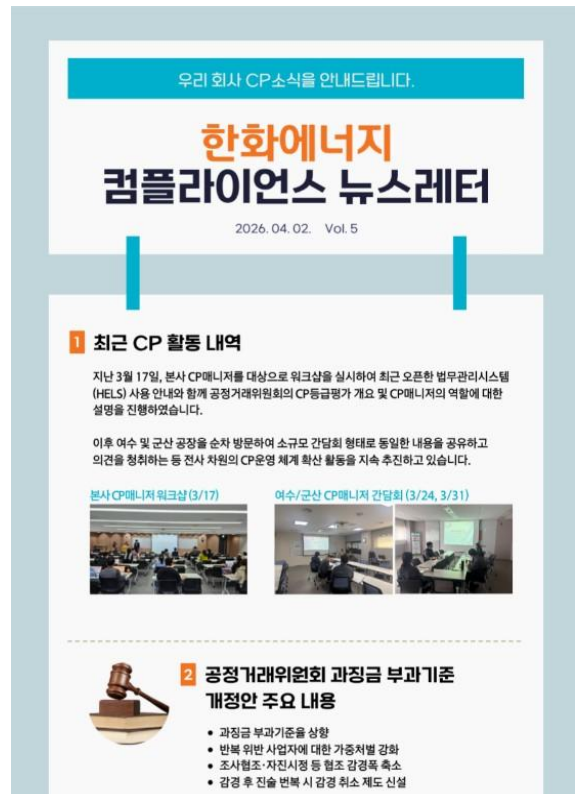
##### 3.2.6.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 게시판 운영 및 CP 뉴스레터 발행

######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 게시판 운영

- 게시판 메인에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 게시판 신설
  - ✓ '26년 CEO 자율준수 의지 선언, 공정거래 자율준수 실천 서약서 등 CP공지사항 게시
  - ✓ CP매니저 워크샵, 간담회 등 행사 게시
  - ✓ 기타 공정거래 법령 개정 등 게시
  - ✓ CP운영규정, 공정거래 자율준수 편람 등 게시

###### CP 뉴스레터 발행

- CP 전담부서(법무팀)은 월 2회 Compliance News Letter 발행
  - ✓ 월별 CP 활동 계획 및 활동 내역
  - ✓ 공정거래 법령 내용 및 개정 사항
  - ✓ CP 자율준수 키워드 등 콘텐츠
  - ✓ CP 관련 언론기관 주요 보도내용 등





## 4. CP 등급평가

### 4.1. CP 등급평가 개요

#### 4.1.1. 개념

- CP 등급평가는 공정위에서 CP를 1년 이상 운영한 기업의 CP운영실적을 기준으로 기업별 등급을 산정하는 제도
- CP 등급평가 공통기준
  - ✓ C : Construction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 구축
  - ✓ D : Diffusion 공정거래 자율준수 문화의 전파와 확산
  - ✓ O : Operation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의 운영
  - ✓ E : Evaluation 평가와 피드백

#### 4.1.2. CP 등급평가 근거 규정

##### ▶ 공정거래법 제 120 조의 2( 공정거래 자율준수 문화의 확산)

-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경쟁촉진의 일환으로 공정거래 자율준수 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할 수 있다.
- ②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법령을 자율적으로 준수하기 위하여 내부준법제도 이하 공정거래 자율준수제도 라 한다 를 운영하는 사업자를 대상으로 그 운영상황에 대하여 평가(이하 '공정거래 자율준수평가' 라 한다)를 할 수 있다.
- ③ 공정거래 자율준수평가를 받으려는 사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정거래 위원회에 신청하여야 한다.
- ④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정거래 자율준수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공정거래 자율준수평가를 받은 사업자를 대상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평가 결과 등에 근거하여 시정조치 또는 과징금 감경이나 포상 또는 지원 등을 할 수 있다.

#### 4.1.3. CP 운영·평가에 관한 규정

등급	평가점수	정의
AAA	90이상~100 미만	• CP 구축 및 운영, CP 문화 확산, 평가와 개선 등 모든 부문에서 체계적인 시스템을 갖추고 매우 높은 성과를 시현
AA	80이상 ~90미만	• CP 구축 및 운영, CP 문화 확산, 평가와 개선 등 거의 모든 부문에서 체계적인 시스템을 갖추고 높은 성과 시현
A	70이상 ~80미만	• CP 구축 및 운영, CP 문화 확산, 평가와 개선 등 각 부문에서 비교적 우수한 시스템을 갖추고 비교적 우수한 성과를 시현



## 5. 공정거래위원회 소개

### 5.1. 공정거래위원회 개요

#### 5.1.1. 설립목적 및 기능

##### ▪ 설립목적

- 독점 및 불공정 거래에 관한 사안을 심의 의결하기 위해 설립된 국무총리 소속의 중앙행정기관이자 합의제 준사법기관으로, 경쟁정책 및 소비자정책을 수립 운영하며 관련 사건을 심결 처리

#### 공정거래 위원회 주요기능

##### 1) 경쟁촉진

- 각종 진입장벽 및 영업활동을 제한하는 반경쟁적 규제를 개혁하고 경쟁제한적 기업결합을 규율함으로써 경쟁적 시장환경을 조성
- 시장지배적지위남용행위, 부당한 공동행위, 기타 불공정거래행위를 금지하여 시장에서의 공정한 경쟁질서를 확립
- 정부 각 부처에서 정책을 수립할 때 경쟁의 원리가 중요한 요소로 고려되도록 하기 위하여 정부에 경쟁원리를 확산(경쟁주창)

##### 2) 소비자 주권 확립

- 소비자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하게 만들어진 약관조항을 시정하고 표준약관을 보급함으로써 불공정 약관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방지합니다.
- 허위,과장의 표시,광고를 시정하고 소비자 선택에 꼭 필요한 중요정보를 공개하도록 하여 소비자가 정확한 정보를 바탕으로 합리적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합니다.
- 할부거래, 방문판매, 전자상거래 등 특수한 거래분야에서 나타날 수 있는 특수한 유형의 소비자피해를 방지

##### 3) 중소기업 경쟁기반 확보

- 하도급대금지급, 물품수령 등 하도급 거래에서 발생 가능한 대기업들의 각종 불공정행위를 시정함으로써 중소 하도급업체의 발전기반을 확보
- 대형 유통업체, 가맹사업본부 등이 거래상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중소 입점, 납품업체, 가맹점에게 행하는 각종 불공정 행위를 시정

##### 4) 경제력 집중 억제

- 대기업집단 계열사간 상호출자,채무보증 금지, 부당내부거래 억제 제도 등을 운영함으로써 선단식 경영체제의 문제점을 시정



## 5. 공정거래위원회 소개

### 5.1. 공정거래위원회 개요(위원회 조직도)





## 5. 공정거래위원회 소개

### 5.2.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법령

법률명	기본 개념
공정거래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사업자의 시장지배적지위의 남용과 과도한 경제력의 집중 방지 및 부당 공동행위·불공정거래행위 규제</li> </ul>
하도급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하도급거래질서 확립을 통하여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대등한 지위에서 상호 보완하며 균형 있게 발전할 수 있도록 함</li> </ul>
약관규제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사업자가 그 거래상의 지위를 남용하여 불공정한 내용의 약관을 작성하여 거래에 사용하는 것을 방지하고 불공정한 내용의 약관을 규제</li> </ul>
표시광고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상품, 용역에 관한 표시·광고 시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가 잘못 알게 하는 부당한 표시·광고를 방지하고 소비자에게 바르고 유용한 정보 제공을 촉진</li> </ul>
할부거래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할부계약 및 선불식 할부계약에 의한 거래를 공정하게 함</li> </ul>
방문판매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방문판매, 전화권유판매, 다단계판매, 후원방문판매, 계속거래 및 사업권유거래 등에 의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정한 거래에 관한 사항을 규정</li> </ul>
전자상거래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전자상거래·통신판매 등에 의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정 거래에 관한 사항을 규정</li> </ul>
대규모유통업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대규모유통업에서의 공정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대규모유통업자와 납품업자 또는 매장임차인이 대등한 지위에서 상호 보완적으로 발전</li> </ul>
가맹사업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가맹사업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가 대등한 지위에서 상호보완적으로 균형 있게 발전하도록 함</li> </ul>
대리점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대리점거래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공급업자와 대리점이 대등한 지위에서 상호보완적으로 균형 있게 발전</li> </ul>
소비자기본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소비자 권익 증진을 위하여 소비자의 권리와 책무,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사업자의 책무, 소비자단체의 역할 및 자유시장경제에서 소비자와 사업자 사이의 관계를 규정하고, 소비자정책 종합적 추진 위한 기본적 사항을 규정</li> </ul>
생협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상부상조 정신 바탕으로 소비자들의 자주·자립·자치적인 생활협동조합 활동 촉진함으로써 조합원 소비생활 향상과 국민 복지·생활문화 향상에 이바지</li> </ul>
제조물책임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제조물 결함으로 발생한 손해 관련 제조업자 등의 손해배상 책임을 규정하여 피해자 보호 도모하고 국민생활 안전 향상·국민경제 건전 발전에 이바지</li> </ul>

### III. 공정거래 법규 해설

1. 공정거래법 해설
2. 하도급법 해설
3. 약관규제법 해설
4. 상생협력법 해설
5. 부정경쟁방지법 해설



## 1. 공정거래법 해설

### 1.1. 공정거래법 개관

#### 1.1.1. 공정거래법의 의의

- 정식 명칭: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 목적
  - 사업자의 시장지배적 지위의 남용과 과도한 경제력 집중 방지
  - 부당한 공동행위 및 불공정거래행위의 규제를 통해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촉진함으로써 창의적인 기업활동을 조장하고 소비자를 보호함과 아울러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

#### 1.1.2. 공정거래법의 구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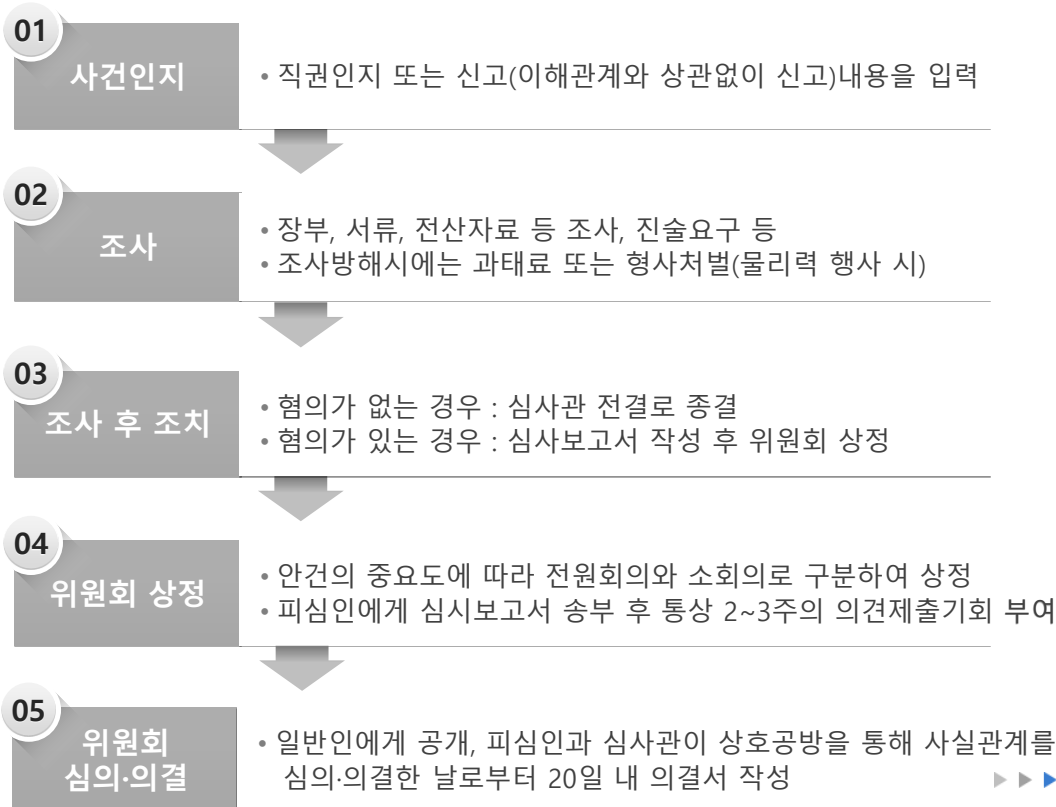
- 공정거래법은 '시장 구조'의 측면과 '거래 행태'의 측면에서 사업자를 규제함으로써 공정한 경쟁 시장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예1) '시장구조'를 규율: 제4조(독과점적 시장구조의 개선 등), 제9조(기업결합의 제한)

예2) '거래행태'를 규율: 법 제5조(시장지배적 지위의 남용 금지), 제40조(부당한 공동행위 금지),

제45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제46조(재판매가격유지행위 제한)

#### 1.1.3. 공정거래 위원회의 공정거래법 위반 사건 조사 및 심사 절차



- 불복 시
- 의견서 송달일로부터 30일 내 이의신청
- 또는 법원에 행정소송



## 1. 공정거래법 해설

### 1.1. 공정거래법 개관

#### 1.1.4.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치 유형

- 위원회가 심의를 거쳐 조치할 수 있는 유형으로 재심사명령, 심의절차종료, 무혐의, 종결처리, 조사 등 중지, 경고, 시정권고, 시정명령, 고발이 존재
- 공정거래법상 형사처벌조항 중 제124조와 제125조의 죄는 공정거래위원회에 전속고발권 존재
  - 위 죄는 공정위의 고발이 있어야만 공소 제기 가능
  - 위반 정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고 중대하여 경쟁질서를 현저히 해친다고 인정하는 경우 공정위는 검찰총장에게 이를 의무 고발하여야 함
  - 검찰총장,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조달청장은 공정위에 고발을 요청할 수 있는 권한을 보유

#### ▶ 공정거래법 제129조

- ① 제124조 및 제125조의 죄는 공정거래위원회의 고발이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 ② 공정거래위원회는 제124조 및 제125조의 죄 중 그 위반의 정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고 중대하여 경쟁질서를 현저히 해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검찰총장에게 고발하여야 한다.
- ③ 검찰총장은 제2항에 따른 고발요건에 해당하는 사실이 있음을 공정거래위원회에 통보하여 고발을 요청할 수 있다.
- ④ 공정거래위원회가 제2항에 따른 고발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결정하더라도 감사원장,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조달청장은 사회적 파급효과, 국가재정에 끼친 영향, 중소기업에 미친 피해 정도 등 다른 사정을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을 요청할 수 있다.
- ⑤ 공정거래위원회는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른 고발요청이 있을 때에는 검찰총장에게 고발하여야 한다.
- ⑥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소가 제기된 후에는 고발을 취소할 수 없다.

-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사업자·사업자 단체는 해당 위반으로 인해 발생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함
  - 단,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가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한 경우에는 제외
  - 부당공동행위, 보복조치 등 특정 규정 위반 시 실 손해의 3배 미만 범위 내 손해배상 책임 부담



## 1. 공정거래법 해설

### 1.2. 부당한 공동행위(담합)

#### 1.2.1. 부당한 공동행위(담합)의 의의 및 금지 유형

- 의의
  - 부당한 공동행위는 사업자가 계약·협정·결의 기타 방법으로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상품 또는 용역의 가격, 물량, 거래조건, 거래상대방, 거래지역 등을 제한하는 것을 합의하는 것을 의미하며, 일반적으로 카르텔(Cartel) 또는 담합 등의 명칭으로 알려짐
- 금지 유형: 공정거래법 제40조 및 시행령 제44조에 규정

#### ▶ 공정거래법 제40조 및 시행령 제44조

- ① 가격결정 : 가격을 결정·유지 또는 변경하는 행위
- ② 거래조건 결정 : 상품·용역의 거래조건, 대금지급조건의 결정
- ③ 생산·출고등 제한 : 상품 생산·출고·수송 또는 거래의 제한, 용역 거래 제한
- ④ 거래제한 : 거래지역 또는 거래상대방의 제한
- ⑤ 시설투자 제한 : 설비의 신설 또는 증설, 장비의 도입을 방해·제한
- ⑥ 상품제한 : 상품의 생산이나 거래시 상품의 종류, 규격의 제한
- ⑦ 입찰담합 : 입찰 또는 경매를 할 때 낙찰자, 경락자, 투찰가격, 낙찰가격, 경락가격, 낙찰 또는 경락의 비율, 설계 또는 시공의 방법, 그 밖에 입찰 또는 경매의 경쟁요소가 되는 사항을 결정
- ⑧ 타사업자 방해 : 다른사업자의 사업활동·사업내용을 방해 또는 제한함으로써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행위
- ⑨ 정보교환 : 가격, 생산량, 상품 또는 용역의 원가, 출고량, 재고량, 판매량, 상품·용역의 거래조건 또는 대금·대가의 지급조건 등의 정보를 주고받음으로써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행위



## 1. 공정거래법 해설

### 1.2. 부당한 공동행위(담합)

#### 1.2.2. '합의'의 의미 및 실행 행위

- 사업자간 공동행위에 대한 합의의 존재
  - 합의는 구두합의와 서면합의가 모두 포함되며, 계약이나 협정 등 명시적인 합의는 물론 사업자간 암묵적 양해와 같은 묵시적인 합의도 포함
  - 또한, 합의에 따를 의사 없이 합의한 경우에도 다른쪽 당사자는 당해사업자가 부당한 공동행위로 합의에 따를 것이라고 신뢰하고 이를 이용한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로서 제재될 수 있음
- 합의의 추정(공정거래법 제40조 제5항)
  - 해당 거래분야 또는 상품·용역의 특성, 해당행위의 경제적 이유 및 파급효과, 사업자간 접촉 횟수, 양태 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그 행위를 사업자들이 공동으로 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거나, 담합행위에 필요한 정보를 주고받았음이 입증된 경우 합의가 있었던 것으로 추정함

#### 제반사정에 비추어 합의의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볼 수 있는 경우

##### 직·간접적인 의사연락 등의 증거가 있는 경우

- 해당사업자간 가격인상, 산출량 감축 등 비망록 기입 내용이 일치하는 경우
- 모임을 갖거나 연락 등을 하고 그 이후 행동이 통일된 경우

##### 공동으로 수행되어야만 당해 사업자들의 이익에 기여할 수 있고, 개별적으로 수행되었다면 당해 사업자 각각의 이익에 반하리라고 인정되는 경우

- 원가상승요인이 없고, 수요가 감소되고 있음에도 가격을 동일하게 인상하는 경우
- 재고가 누적되어 있음에도 가격이 동시에 인상되는 경우

##### 당해 사업자들의 행위의 일치를 시장상황의 결과로 설명할 수 없는 경우

- 제조원가가 각각 다른데도 가격변동 폭이 동일한 경우
- 시장상황에 비추어 공동행위 없이는 단기간에 높은 가격이 형성될 수 없는 경우

##### 당해 산업구조상 합의가 없이는 행위의 일치가 어려운 경우

- 거래의 빈도가 낮은 시장, 수요자가 전문지식을 갖춘 시장 등 공급자의 행위의 일치가 어려움에도 행위의 일치가 이루어진 경우



## 1. 공정거래법 해설

### 1.2. 부당한 공동행위(담합)

#### 1.2.2. '합의'의 의미 및 실행 행위

##### ▶ 공정거래법 제40조 제5항

⑤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둘 이상의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자들 사이에 공동으로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것을 합의한 것으로 추정한다.

1. 해당 거래분야, 상품·용역의 특성, 해당 행위의 경제적 이유 및 파급효과, 사업자 간 접촉의 횟수·양태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그 행위를 그 사업자들이 공동으로 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상당한 개연성이 있을 때
2. 제1항 각 호의 행위(제9호의 행위 중 정보를 주고받음으로써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행위를 제외한다)에 필요한 정보를 주고받은 때

#### ▪ 합의 추정의 반복

- 외형상 일치가 없었다는 점 또는 외형상 일치를 창출하는데 필요한 정보가 교환된 적이 없었다는 점을 입증함으로써 합의 추정의 전제 사실이 없음을 입증하여 추정을 반복 가능

#### 외형상의 일치가 합의에 의한 것이 아니었다는 점을 입증하는 경우

##### 단순 우연, 행정지도, 자연스러운 현상에 따른 외형상 일치의 발생

-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외부적 요인(금리, 원자재 가격 등)의 변경에 사업자들이 각자 대응하는 과정에서 우연히 발생한 경우
- 행정지도(구두 등 유형 불문)에 각자 따른 결과 외형상 일치가 일어난 경우
- 다른 업체의 가격 인상 등을 단순 추종하는 과정에서 외형상 일치가 일어난 경우



## 1. 공정거래법 해설

### 1.2. 부당한 공동행위(담합)

#### 1.2.3. 공동행위 자진신고자에 대한 면책제도(Leniency제도)

- 의의
  - 공정위는 공정거래법 제44조, 시행령 제51조에 따라 공동행위를 자진신고하거나 조사협조를 하는 자에 대하여 시정조치나 과징금을 감경 또는 면제하는 조치를 취해주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음
- 감경 또는 면제 대상

#### 자진 신고자(과징금 및 시정조치 면제)

-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를 시작하기 전에 자진 신고한 자(아래 4가지 조건 만족 필요)
  - ① 부당한 공동행위임을 입증하는데 필요한 증거를 단독으로 제공한 최초의 자일 것
  - ② 공정거래위원회가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정보를 입수하지 못 하였거나 이를 입증하는데 필요한 증거를 충분히 확보하지 못한 상태에서 자진 신고하였을 것
  - ③ 부당한 공동행위와 관련된 사실을 모두 진술하고, 관련 자료를 제출하는 등 조사가 끝날 때까지 성실하게 협조하였을 것
  - ④ 그 부당한 공동행위를 중단하였을 것

#### 조사 협조자(시정조치 감경 또는 면제)

-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를 시작한 후에 조사 협조한 자 (아래 2가지 조건 만족 필요)
  - ① 공정위가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정보를 입수하지 못하였거나 이를 입증하는데 필요한 증거를 충분히 확보하지 못한 상태에서 조사에 협조하였을 것
  - ② 위 자진 신고자 조건의 ①, ③, ④를 충족할 것

#### 기타 자진 신고자 또는 조사 협조자(과징금 50% 및 시정조치 감경)

- 공정위 조사 전 자진 신고자 또는 조사 시작 후 조사 협조자(아래 2가지 조건 만족 필요)
  - ① 부당한 공동행위임을 입증하는데 필요한 증거를 단독으로 제공한 두 번째의 자일 것
  - ② 위 '과징금 및 시정조치 면제' 항목의 ③, ④조건을 충족할 것



## 1. 공정거래법 해설

### 1.2. 부당한 공동행위(담합)

#### 1.2.4. 부당 공동행위 금지 규정 위반 시의 제재

##### 시정명령

- 공정위는 부당한 공동행위가 있는 경우 해당 사업자에 대하여 당해 행위 중지,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 기타 시정을 위한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음
- 일반적으로는 합의의 파기를 명령

##### 과징금

- 공정위는 부당한 공동행위를 한 사업자에 대해 그 사업자가 위반기간 동안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판매한 관련상품이나 용역의 매출액 또는 이에 준하는 금액의 20%의 과징금을 부과
- 매출액이 없거나 매출액 산정이 곤란한 경우에는 40억원 이내에서 과징금 부과

##### 형사처벌

- 부당한 공동행위를 하거나 이를 행하도록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
- 공정위 시정조치등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5천만원 이하의 벌금

##### 징벌적 손해배상책임

- 부당공동행위 금지 규정을 위반한 자는 해당 위반행위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자가 있는 경우, 해당 피해자에 발생한 손해의 3배를 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손해배상의 책임을 부담
- 단,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가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한 경우에는 제외

##### 공공입찰 참가 제한

- 담합을 주도하여 낙찰을 받은 자: 2년
- 담합을 주도한 자: 1년
-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 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 수주 물량 또는 계약 내용 등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 또는 납품대상자 선정을 위하여 담합한 자 : 6개월



## 1. 공정거래법 해설

### 1.2. 부당한 공동행위(담합)

#### 1.2.5. 부당 공동행위 사례

### 24개 사업자의 콘크리트 파일 입찰담합 사건('21. 7. 26.)

• **법 위반 사항: 舊 공정거래법 제19조 제1항 제8호 '입찰 담합' 외**

✓ (주)삼일씨엔에스 외 23개사는 '08.4.~ '17.1.까지 아파트 등 건설 시 기초공사에 활용되는 콘크리트 파일(PHC 파일)의 기준가격 및 단가율, 생산량 감축 등을 합의하는 방식으로 6,500억원 규모 담합 실행

\*\* PHC 파일: 주로 아파트 건설현장에서 연약지반을 보강하는 기초공사에 활용되는 고강도 콘크리트 말뚝

\*\* 24개사: 대기업 및 중견기업 6개사, 중소기업 18개사

### (제재) 향후 금지명령 및 과징금 총 1,018억 부과

#### [ PHC 파일 입찰 담합 관련 제재 경과 ]

- '16.1. 공정위, 한국원심력콘크리트공업협동조합에 과징금 5억 부과  
- 비회원사의 신기술 적용 방해 등 사업자단체 금지행위 위반
- '16.7. 검찰, 입찰방해죄 등으로 23명 기소 → '17년 유죄 확정  
- 협동조합 임원 3명(구속), 업체 대표 3명(구속) 및 임직원 17명(불구속)
- '17.1. 공정위, 입찰 담합 조사 개시
- '20.6. 공정위, '관수 시장' 담합 건 제재  
- 시정명령 및 과징금 504억 부과
- '21.7. 공정위, '민수 시장' 담합 건 제재



## 1. 공정거래법 해설

### 1.2. 부당한 공동행위(담합)

#### 1.2.5. 부당 공동행위 사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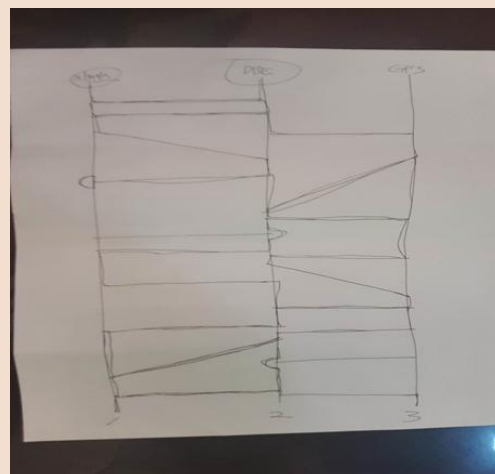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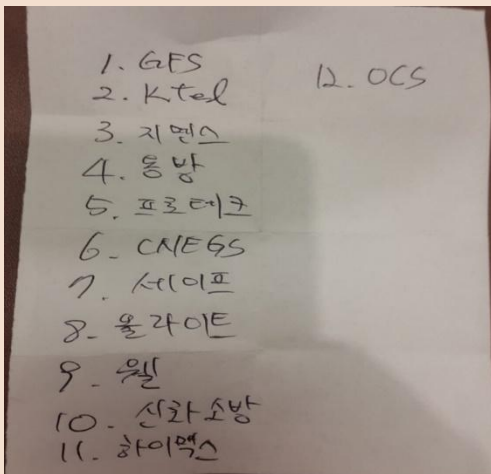
### 23개사의 자동화재탐지설비 등 소방 전기공사 입찰 담합 사건('21.10. 4.)

• 법 위반 사항: **舊 공정거래법 제19조 제1항 제8호 '입찰 담합'**

- ✓ 지멘스(주) 등 23개 소방·전기공사 업체\*는 지에스건설(주) 등 13개 건설사\*\*가 6년간 실시한 총 304건의 소방 전기공사 사업자 선정 입찰에서 낙찰 예정자와 들러리 사업자를 합의하고 이를 실행
- ✓ 23개 담합업체들은 위 304건의 입찰에 대해 사전에 낙찰 예정자 순번을 제비 뽑기, 사다리 타기 방식 등을 통하여 각 입찰별 낙찰 예정자/들러리 사업자를 결정

\* 롯데건설 사례(광명 아울렛 등 16건)  
: 제비뽑기 방식을 통해 낙찰 순번 결정

\* 한라 사례(송도 현대아울렛 등 4건)  
: 사다리 타기를 통해 낙찰 순번 결정



**(제재) 23개사 모두 시정명령(향후 금지명령) 부과, 회생절차를 거친 (주)우창하이텍을 제외한 22개사에게 과징금 총 103억 8,100만원 부과**



## 1. 공정거래법 해설

### 1.2. 부당한 공동행위(담합)

#### 1.2.5. 부당 공동행위 사례

#### 휴대폰 소액결제 '연체료 폭탄' 담합 사건('21.11.17.)

- 법 위반 행위: **舊 공정거래법 제19조 제1항 제1호 '가격담합 금지' 위반**

✓ KG모빌리언스, 다날, SK플래닛, 갤럭시아 등 4개 소액결제사는 수익성 개선 위해 '10. 3. ~ '19. 6. 사이에 휴대폰 소액결제 연체료를 공동 도입하고, 연체료 금액 수준을 공동으로 과도하게 결정하기로 합의한 후 이를 실행.

\*\* 담합 내용 상세

1. ('10년 담합) 연체료 공동 도입 및 연체료 수준 합의, 실행  
- 연체료율: 연체 대금의 2%

2. ('12년 담합) 연체료율 공동으로 5% 인상 합의, 실행

3. ('13년 담합 및 이후) 정부/언론의 인하 압력 공동 대응, 기존 담합 내용 최대한 유지, 인하 시는 연체료율 최소한으로 변경하는 내용을 합의, 실행

**(제재) 시정명령 및 과징금 총 169.3억원 부과, KG모빌리언스/SK플래닛 검찰 고발**

※ 고발 대상은 공정위 조사 성실 협조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

#### <사업자별 과징금 부과 내역>

연번	사업자명	과징금액(단위: 백만원)
1	KG모빌리언스	8,752
2	다날	5,387
3	SK플래닛	855
4	갤럭시아	1,941
	합계	16,935



## 1. 공정거래법 해설

### 1.2. 부당한 공동행위(담합)

#### 1.2.6. 부당 공동행위 FAQ

##### Q1

- 업체 관계자들끼리 가격에 대한 회의를 하는 것이 아니라, 가끔 가격 수준에 대한 의사교환을 하는 경우에도 가격에 관한 합의를 한 것인지?

##### A1

- ✓ 부당한 공동행위를 인정하기 위한 합의는 계약·협정·동의서 등의 명시적인 합의 뿐만 아니라 사업자 간의 암묵적 양해와 같은 묵시적 합의까지 포함
- ✓ 예로, 렌터카 업체들이 공식 위원회에 참석하여 논의한 적이 없다고 하더라도 수차례의 회의를 통해 수 개의 회사가 모두 본인 의견을 개진하였고, 이를 통해 조합의 대여요금 참고안이 결정되었으며, 렌터카 업체들이 이에 따라 대여 요금을 신고한 사안에서, 업체들이 순차적 의사 연락에 따라 일정 지역의 차종별 자동차 대여요금의 가격을 공동으로 결정한다는 암묵적인 요해가 있다고 본 사례가 있음(서울고법 2016.10.7. 선고2014누70442 판결)
- ✓ 위 사례와 같이 법원은 암묵적으로 양해가 있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부당한 공동행위의 '합의'가 존재한다고 보고 있으므로, 해당 가격 의사 교환 행위 자체가 암묵적 가격 합의 등으로 비취질 소지 존재(공식 회의 여부는 불문)

##### Q2

- 합리적 제품구매를 위하여 다른 회사들과 구매가격을 합의하려는 경우와 같이, 실제 수요자들임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경우 담합이 성립하는 것인지?

##### A2

- ✓ 舊 공정거래법 제19조 제1항 제1호의 입법취지는 부당 공동행위를 규제하여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촉진함에 있음
- ✓ 따라서, 공급자들이 아닌 수요자들이 물품 구매 가격을 합의하였다고 하여도 그로 인해 당해 제품 분야 경쟁이 실질적으로 제한된다면 공정거래법상 부당 공동행위(담합)에 해당한다 할 것임



## 1. 공정거래법 해설

### 1.2. 부당한 공동행위(담합)

#### 1.2.6. 부당 공동행위 FAQ

##### Q3

- 과다 경쟁으로 인하여 기술향상 및 원가절감에 한계가 있어 다 같이 모여 서로 의견을 나눈 후 사업운영에 관한 방침을 정하고자 합니다. 이러한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에 해당될 것 같은데 예외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 A3

✓ 공정거래법은 부당 공동행위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아래 경우에만 공정위의 인가를 받아 이를 허용하고 있음.

- ① 산업합리화 : 공동행위에 의한 기술향상·품질개선·원가절감 및 능률증진 등의 효과가 명백한 경우 등(공정거래법 시행령 제24조의2)
- ② 연구·기술개발 : 당해 연구·기술개발이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긴요하며 경제적 파급효과가 크거나 소요 투자금액이 과다하여 한 사업자가 조달하기 어려운 경우 등 (공정거래법 시행령 제24조의3)
- ③ 불황극복 : 특정 상품 또는 용역 수요가 상당기간 계속 감소하고 수요에 비하여 공급이 초과하는 상태가 계속되며 이후 그 상태가 계속될 것이 명백한 경우 등 (공정거래법 시행령 제25조)
- ④ 산업구조의 조정 : 국내외 경제여건의 변화로 특정산업의 공급 능력이 현저하게 과잉상태에 있거나, 생산시설 및 생산방법의 낙후로 생산효율 및 국제경쟁력 등이 현저하게 저하되어 있는 경우 등(공정거래법 시행령 제26조)
- ⑤ 거래조건의 합리화 : 거래조건의 합리화로 생산 능력의 향상, 거래의 원활화 및 소비자의 편익증진에 명백하게 기여하는 경우 등(공정거래법 시행령 제27조)
- ⑥ 중소기업의 경쟁력 향상 : 공동행위에 의한 중소기업의 품질·기술향상 등 생산성 향상이나 거래조건에 관한 교섭력 강화효과가 명백한 경우 등(공정거래법 시행령 제28조) **舊** 공정거래법에 제1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동행위의 인가(또는 변경)를 받고자 하시는 경우 동법 시행령 제30조(공동행위의 인가절차 등)에 의거 신청서를 제출 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인가증을 교부받으면 됨



## 1. 공정거래법 해설

### 1.3. 일반 불공정 거래행위

#### 1.3.1. 일반 불공정 거래행위 개요

▪ 의의

- 불공정 거래행위란 공정거래법 제45조 제1항 각호에 열거된 행위로서 '공정한 거래를 해칠 우려'가 있는 행위를 의미함

▶ **공정거래법 제45조 제1항**

① 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공정한 거래를 해칠 우려가 있는 행위(이하 "불공정거래행위"라 한다)를 하거나, 계열회사 또는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부당하게 거래를 거절하는 행위
2. 부당하게 거래의 상대방을 차별하여 취급하는 행위
3. 부당하게 경쟁자를 배제하는 행위
4. 부당하게 경쟁자의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하는 행위
5. 부당하게 경쟁자의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강제하는 행위
6. 자기의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상대방과 거래하는 행위
7. 거래의 상대방의 사업활동을 부당하게 구속하는 조건으로 거래하는 행위
8. 부당하게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방해하는 행위
9. 부당하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통하여 특수관계인 또는 다른 회사를 지원하는 행위
  - 가. 특수관계인 또는 다른 회사에 지급금·대여금·인력·부동산·유가증권·상품·용역·무체재산권 등을 제공하거나 상당히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하는 행위
  - 나. 다른 사업자와 직접 상품·용역을 거래하면 상당히 유리함에도 불구하고 거래상 실질적인 역할이 없는 특수관계인이나 다른 회사를 매개로 거래하는 행위
10. 그 밖의 행위로서 공정한 거래를 해칠 우려가 있는 행위

- 제9호의 불공정거래 행위는 이른바 '부당지원 행위(일감몰아주기·통행세)'로, 일반적으로 다른 불공정 행위(일반 불공정거래 행위)와는 구분하여 판단
-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의 의미
  - 공정위 불공정거래행위 심사지침은 "공정한거래를 해칠 우려"를 "부당하게"와 같은 의미로 해석
  - 구체적으로는 해당 행위로 인해 시장경쟁 정도 또는 경쟁사업자 수가 유의미한 정도로 줄어들거나 줄어들 우려가 있거나(경쟁제한성), 경쟁수단 또는 거래내용이 정당하지 아니함(불공정성)을 포함



## 1. 공정거래법 해설

### 1.3. 일반 불공정 거래행위

#### 1.3.1. 일반 불공정 거래행위 개요

- 불공정거래행위의 위법성 판단
  - '공정거래 저해성'(법 제45조 제1항 본문)·'부당성'(법 제45 제1항 각호)이 위법성 판단 기준
  - 공정위 심사지침은 공정거래 저해성을 경쟁제한성과 불공정성을 포함하는 개념으로 보고 있음

#### 경쟁 제한성

- 당해 행위로 인해 시장 경쟁의 정도 또는 경쟁사업자(잠재적 경쟁 사업자 포함) 수가 유의미한 수준으로 줄어들거나
- 또는 경쟁사업자 수가 줄어들 우려가 있음을 의미

#### 불공정성

- 경쟁수단 또는 거래내용이 정당하지 않음을 의미
- 경쟁수단의 불공정성은 상품, 용역의 가격과 질 이외에 바람직하지 않은 경쟁 수단의 사용으로 정당한 경쟁을 저해하거나 저해할 우려가 있음 의미
- 거래내용의 불공정성은 거래상대방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저해하거나 불이익을 강요하여 공정거래의 기반이 침해되거나 침해될 우려가 있음을 의미



## 1. 공정거래법 해설

### 1.3. 일반 불공정 거래행위

#### 1.3.2. 유형별 불공정 거래행위(거래거절)

##### ■ 거래 거절

##### 공동의 거래거절

- 정당한 이유 없이 경쟁 관계에 있는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특정사업자에게 거래의 개시를 거절 하거나, 거래를 중단하거나 거래하는 상품의 수량이나 내용을 현저히 제한하는 행위

##### 단독 거래거절

- 사업자가 단독으로 부당하게 특정사업자에게 거래 개시를 거절하거나 계속적 거래관계에 있는 사업자와 거래를 중단하거나 거래 상품·용역 수량, 내용을 현저하게 제한하는 행위

##### - 위법성 판단

- ① 거래거절을 당한 특정사업자가 대체거래선을 용이하게 찾을 수 있는지
- ② 거래거절로 인해 특정사업자가 사업활동이 곤란하게 되고 그 결과 당해 시장에서 경쟁이 실질적으로 감소하였는지
- ③ 거래거절이 공정거래법에 금지된 행위(재판매가격유지, 부당한 공동행위 등)를 강요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 되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

※ 거래 거절한 사업자 시장점유율이 10%미만인 경우에는 당해 시장에서의 경쟁제한 효과가 미미하다고 보아 원칙적으로 심사면제 대상으로 정하고 있음

##### ■ 위반 유형

- 공급·구입거절, 현저히 불리한 조건을 제시하는 사실상 거절, 거래수량이나 내용의 현저한 제한 등
- 부품 제조업자가 완성품제조업자에게 부품공급을 중단하는 경우
- 자기가 지정하는 거래처의 물품을 구입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거래를 거절하는 경우

##### ■ 다음의 경우는 공정거래 저해성이 없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로 판단

- 재고부족이나 거래상대방의 채무불이행이 예상되어 거래거절이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경우
- 거래거절에도 대체거래선을 용이하게 찾을 수 있는 경우
- 사전에 사업영위에 합리적이라 인정되는 거래자격 기준을 정하여 그 기준에 미달하는 사업자와의 거래개시를 거절하는 경우



## 1. 공정거래법 해설

### 1.3. 일반 불공정 거래행위

#### 1.3.3. 유형별 불공정 거래행위(차별적 취급)

- 차별적 취급
  - 부당하게 거래상대방에 따라 현저하게 유리하거나 불리하게 가격·수량·품질 등의 거래조건이나 거래내용으로 거래하여 정상적인 경쟁을 저해하는 것

#### 가격·거래조건 차별의 예시

- 대부분의 사업자에게 구입량에 따라 할인율을 적용하는 반면, 특정 거래상대방에 대하여는 더 높은 할인율을 획일적으로 적용하는 경우
- 유력한 사업자가 합리적인 이유없이 특정사업자를 가격 면에서 현저히 우대하는 경우
- 경쟁사업자에 대한 제품 공급 비중에 따라 지급기간이나 현금 지급 비율 등을 현저히 다르게 적용하는 경우

#### 계열회사를 위한 차별의 예시

- 정당한 이유 없이 계열회사의 제품을 타 회사에 견적단가보다 현저히 비싸게 구입하는 경우
- 정당한 이유 없이 비계열사의 결제조건(현금비율, 어음만기일 등)을 현저히 불리하게 하는 경우
- 계열회사가 경쟁입찰에서 유리한 지위에 설 수 있도록 계열사의 경쟁사업자에게 불리한 가격이나 거래조건으로 물품 등을 공급하는 경우



## 1. 공정거래법 해설

### 1.3. 일반 불공정 거래행위

#### 1.3.4. 유형별 불공정 거래행위(경쟁사업자 배제)

- 경쟁사업자 배제
  - 경쟁사업자를 시장에서 배제시키기 위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품 등을 현저히 낮은 가격으로 공급하거나, 경쟁사업자가 필요로 하는 원자재 등의 상당량을 고가로 매입하는 것을 의미

#### 부당염매

- 신규진입이 용이하지 않은 시장에서 경쟁사업자를 퇴출시키기 위하여 제조원가에 미치지 못하는 가격으로 상품 등을 공급하는 경우
- 합리적인 이유 없이 공공기관 구매 입찰에서 공급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응찰하여 낙찰되어 다년간 해당 물품을 공급하는 행위

#### 부당한 고가 매입

- 합리적 이유 없이 제품 생산 등에 필수적인 원자재를 통상거래가격에 비하여 높은 대가로 매수 하여 경쟁사업자가 시장에서 배제될 정도로 사업활동을 곤란하게 하는 경우

- 위법성 판단 기준
  - '경쟁사업자를 배제시킬 우려'는 추상적 위험성이 인정되는 정도로 족하며, 당해 염매행위의 의도, 목적, 염가의 정도, 행위자의 사업규모 및 시장에서의 지위 염매의 영향을 받는 사업자의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 개별적으로 판단(대법원 2001. 6. 12. 선고 99두 4686판결).
  - '계속거래상의 부당염매'는 사업자가 채산성이 없는 낮은 가격으로 상품 또는 용역을 계속하여 공급하는 것을 가리키므로 그 행위의 외형상 그에 해당하는 행위가 있으면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크다고 보아야 함
  - 기타 거래상의 부당염매는 그 행위 태양이 단순히 상품 또는 용역을 낮은 가격으로 공급하는 것 이어서 그 자체로 공정 거래 저해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만큼 그것이 '부당하게' 행하여진 경우에 공정 거래 저해 우려가 있다고 보아야함(대법원 2001. 6. 12. 선고 99두4686 판결).



## 1. 공정거래법 해설

### 1.3. 일반 불공정 거래행위

#### 1.3.5. 유형별 불공정 거래행위(부당한 고객 유인, 거래 강제)

- 경쟁사업자 배제
  - 사업자가 부당한 이익제공이나 위계, 거래방해 등의 방법으로 경쟁사업자의 고객을 유인하는 것

##### 위법 행위 유형

- 자신의 상품을 구입하도록 거래 상대방인 고객에게 리베이트를 제공하거나 과다접대 하는 행위
- 자신과 경쟁사업자의 영업현황, 제품기능, 기술력 등에 대해 사실과 다른 허위 비교 분석 자료를 작성하여 발주자에게 제출함으로써 당해 사업을 수주 하는 행위
- 영업사원들이 경쟁사업자의 제품을 근거없이 비방하면서 고객을 유인하는 행위
- 경쟁사업자와 고객간의 거래를 방해하기 위한 목적으로 경쟁사업자와 고객 간 계약의 성립을 저지하거나 계약해지를 유도하는 행위

- 거래 강제
  - 경쟁사업자와 고객간의 거래를 방해하기 위한 목적으로 경쟁사업자와 고객간 계약의 성립을 저지하거나 계약해지를 유도하는 행위

##### 금지 행위 유형

- 고가 기계나 장비 판매 시 합리적 이유 없이 인과관계가 떨어지는 유지보수 서비스 (유료)를 자기로부터 제공받도록 강제함으로써 관련 시장에서 경쟁 감소를 초래하는 행위(끼워팔기)
- 특허권 등 지식재산권자가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하면서 다른 상품이나 용역의 구입을 강제함으로써 관련 시장에서 경쟁의 감소를 초래하는 행위(끼워팔기)
- 비영업직 임직원에게 자기 또는 계열회사의 상품 또는 용역의 판매에 관한 판매목표를 설정하고, 미달성시 인사상의 불이익을 가하는 행위(사원판매)
- 정상적 거래 관행에 비추어 부당한 조건 등 불이익을 거래상대방에게 제시하여 자기 또는 자기가 지정하는 사업자와 거래하도록 강제하는 행위
- 사업자가 자신의 계열회사의 협력업체에 대해 자기가 공급하는 상품 또는 용역의 판매목표량을 제시하고 이를 미달성할 경우 계열회사와의 거래물량 축소, 협력업체 탈락 등 불이익을 가하겠다고 하여 판매목표량 달성을 강제하는 행위



## 1. 공정거래법 해설

### 1.3. 일반 불공정 거래행위

#### 1.3.6. 유형별 불공정 거래행위(거래상 지위 남용)

- 거래상 지위 남용
  - 사업자가 거래상 우월적 지위에 있음을 이용하여 불이익을 주는 경우가 이에 해당
  - 거래상 우월적 지위 여부는 일방 사업자의 타방 사업자에 대한 거래의존도가 상당한 경우를 의미
    - ✓ 통상 전체 매출액에서 타방 사업자에 대한 매출이 차지하는 비중을 중심으로 검토하며, 이와 더불어 당해거래처에 대한 거래의존도, 당해거래처의 시장에서의 지위, 거래처 변경가능성, 사업규모의 격차, 상품의 수급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
    - ✓ 통상 본사와 협력업체 또는 대리점은 거래상 지위가 인정될 가능성이 있음
  - 거래상 우월적 지위에 대한 '남용'은 정상적인 상관행에 비추어 부당한 행위를 의미함
- 거래상 지위남용 행위 유형

#### 구입강제

- 구입의사가 없는 상품 또는 용역을 구입하도록 요구하는 행위
- 요청을 거부하는 경우 불이익을 입었거나, 주위의 사정으로 보아 객관적으로 요청에 따르지 않을 수 없는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구입강제가 있는 것으로 봄
- 계속적 거래관계에 있는 사업자에게 합리적 이유없이 자기가 지정하는 사업자의 물품·용역을 구입할 것을 강요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

#### 이익제공 강요

- 거래상대방에게 금전·물품 등의 경제상 이익을 제공하도록 강요하는 행위
- 경제상 이익은 금전, 유가증권, 물품, 용역을 비롯 경제적 가치 있는 모든 것이 포함
- 계열사의 거래상 지위를 이용하여 이익제공을 강요하는 행위도 포함하며, 자신이 부담하여야 할 비용을 상대방에게 전가하여 소극적으로 경제적 이익을 누리는 행위도 포함
- 수요측면에서 지배력을 갖는 사업자가 합리적 이유 없이 자신이 구입하는 물량의 일정 비율 만큼을 무상으로 제공하도록 요구하거나, 거래와 무관한 기부금 또는 협찬금이나 기타 금품·향응 등을 요구하는 행위가 이에 해당



## 1. 공정거래법 해설

### 1.3. 일반 불공정 거래행위

#### 1.3.6. 유형별 불공정 거래행위(거래상 지위 남용)

- 거래상 지위남용 행위 유형

##### 불이익한 거래조건 설정·변경

- 거래상대방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거래조건을 당초 설정하였거나 기존 거래조건을 불리하게 변경하는 것을 의미
- 거래조건에는 각종의 구속사항, 저가매입 또는 고가판매, 가격(수수료 등 포함) 조건, 대금지급방법 및 시기, 반품, 제품검사방법, 계약해지조건 등 모든 조건이 포함
- 업체와 계약을 체결하면서 상대방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조항을 설정한 경우
- 협력사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대금 지급조건 등 거래조건을 설정·변경하는 경우
- 거래대금을 지연지급하면서 이에 대한 지연이자나 어음할인료를 미지급하는 행위
- 계약서상의 하자보증기간이 종료된 후에도 하자보수를 강제하는 행위
- 수급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검수지연, 해당물품에 대한 검사기간 등을 납품기간에 포함시켜 거래상대방에게 지체상금을 부과하는 행위
- 납품지시 후 생산이 완료된 물량을 아무런 하자가 없음에도 이를 취소하는 행위
- 협력사에 대한 제재를 목적으로 한 공급물량을 감축하는 행위

##### 경영 간섭

- 임직원 선임·해임시 자기의 지시 또는 승인을 얻게 하거나, 거래상대방의 생산품목·시설규모·생산량·거래내용을 제한함으로써 경영활동에 간섭하는 행위
- 협력사의 임직원 선임 등의 경우에 지시 또는 승인을 얻게 하는 행위
- 협력사의 생산품목, 생산량 등을 제한하는 행위



## 1. 공정거래법 해설

### 1.3. 일반 불공정 거래행위

#### 1.3.7. 유형별 불공정 거래행위(구속 조건부 거래, 사업활동 방해)

- 구속 조건부 거래
  - 사업자가 거래상대방에 대해 자기 또는 계열회사의 경쟁사업자와 거래하지 못하도록 하거나, 거래지역 또는 거래상대방을 제한하는 행위
  - 경쟁사업자는 잠재적 사업자를 포함하며, 독점 공급계약과 독점 판매계약을 모두 포함
  - 경쟁자가 대체거래선을 찾기 곤란한 상태에서 수요측면에서 영향력 가진 사업자가 경쟁사업자에게 공급하지 않는 조건으로 상품이나 용역을 구입하는 경우, 다수 거래상대방과 업무제휴 시 경쟁사와 중복제휴를 하지 않는 조건을 부과하는 경우 등
- 사업활동 방해
  -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심히 곤란하게 하는 행위를 말하며, 기술의 부당이용, 인력 부당유인·채용, 거래처 이전방해, 그 밖의 사업방해 활동 네가지 유형이 존재

#### 사업활동 방해 유형

- 기술의 부당 이용
  - 타 사업자의 기술의 부당 이용으로 타 사업자 사업활동을 심히 곤란하게 방해하는 행위
    - \* 타 사업자는 경쟁사업자로 국한되지 않고, 기술이란 특허법 등 법령에 의해 보호되거나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생산·판매방법, 영업 관련 사항을 의미
    - \* 한편, '사업활동이 심히 곤란'하게 되었는지는 매출액의 상당한 감소, 거래상대방 감소 등으로 인해 현재 또는 미래의 사업활동이 상당히 곤란하게 되는 경우를 의미
- 인력의 부당유인·채용
  - 다른 사업자의 인력을 부당하게 유인 또는 채용하여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심히 곤란하게 할 정도로 방해하는 행위를 의미
    - \* 이 때 타 사업자는 경쟁사업자에 국한되지 않고, 부당성은 유인 및 채용 의도, 해당 인력의 사업활동 차지 비중, 인력 유인·채용에 사용된 수단, 업계 관행 등이 고려
  - 한편, 사업활동이 심히 곤란하게 되었는지는 매출액의 상당한 감소, 거래상대방의 감소 등으로 인해 현재 또는 미래의 사업활동이 상당히 곤란하게 되는 경우를 의미
    - \* 다른 사업자의 핵심인력 상당수에 대하여 과도한 이익을 제공하여 스카우트함으로써 당해사업자의 사업활동이 현저히 곤란하게 되는 경우가 이에 해당



## 1. 공정거래법 해설

### 1.3. 일반 불공정 거래행위

#### 1.3.7. 유형별 불공정 거래행위(구속 조건부 거래, 사업활동 방해)

- 사업활동 방해

#### 사업활동 방해 유형

- 거래처 이전 방해
  - 상대방 거래처이전을 부당하게 방해하여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심히 곤란하게 할 정도로 방해하는 행위를 의미
  - 거래처 이전 의사를 밝힌 사업자에 대해 기존 구입 물량을 일방적으로 반품 처리하거나 담보해제를 해주지 않는 행위가 이에 해당할 수 있음
    - \* 여기서 사업활동이 심히 방해되는지는 단순한 매출액 감소만으로는 부족하며, 부도 발생 우려, 매출액의 상당 감소, 거래상대방 감소 등으로 사업활동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를 말함
- 그 밖의 사업활동 방해
  - 위 행위 외, 자기 능력·효율성과 무관하게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방해하는 모든 행위를 포함
  - 사업영위에 필요한 특정시설을 다른 사업자가 이용할 수 없도록 방해하거나, 사업자에 대한 근거 없는 비방전달을 살포하는 행위 등이 이에 속함



## 1. 공정거래법 해설

### 1.3. 일반 불공정 거래행위

#### 1.3.8. 불공정 거래 행위에 대한 제재

##### 시정조치

-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하여 공정위는 당해행위의 중지, 계약조항의 삭제, 시정명령 받은 사실의 공표, 기타 시정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음

##### 과징금

-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해 공정위는 위반기간 동안의 관련 매출액 4% 한도에서 과징금 부과 가능
- 매출액이 없거나 산정 곤란 시는 10억원 이내에서 과징금을 부과(부당지원은 별도 기준 적용).

##### 형사처벌

- 불공정거래행위를 한 경우 공정위 시정조치 등에 응하지 않는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5천만원 이하 벌금
- 단, 거래거절, 차별적 취급, 경쟁사업자 배제, 구속조건부 거래 등의 불공정 거래행위는 형사처벌 대상에서 제외
- 법인의 경우 대표자, 대리인, 사용인, 종업원과 함께 처벌되는 양벌규정이 적용
- 원칙적으로 공정거래위원회의 고발이 있어야만 형사처벌을 위한 공소 제기 가능

##### 손해배상책임

-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는 이 법을 위반함으로써 피해를 입은 자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피해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의 책임을 부담
- 단,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가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한 경우에는 제외
- 불공정거래행위를 한 사업자가 그와 관련하여 보복조치를 하는 경우 사업자가 자신의 고의 또는 과실이 없었음을 입증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피해자 손해의 3배 미만의 손해배상 책임 부담
- 또한,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행위로 손해가 발생한 것은 인정되나, 손해액의 입증이 성질상 극히 곤란한 경우 법원은 변론전체의 취지와 증거조사 결과로 상당한 손해액을 인정할 수 있음



## 1. 공정거래법 해설

### 1.3. 일반 불공정 거래행위

#### 1.3.9. 불공정 거래 행위 사례

### 2개사의 심장사상충 예방제 거래거절 사건('17. 1.25.)

• 법 위반 사항: 舊 공정거래법 제23조 제1항 제1호 '기타의 거래 거절'

- ✓ 한국조에티스(주), (주)벨벳은 현행 제도상 동물약국에서도 아무런 제한 없이 판매가 가능한 신 심장사상충 예방제를 동물약국에 공급하는 것을 거부함과 동시에, 동물약국으로 유출 되는 물량도 철저히 적발·차단함
- ✓ 이러한 약품 공급의 차단은 해당 약품이 싸게 판매되는 것을 막기 위함이었음
  - 이 때문에 소비자들은 심장사상충 예방제를 보다 저렴하게 살 수 있는 기회가 차단되고
  - 동물병원은 동물약국과의 경쟁 압력에서 벗어나 가격을 높게 책정할 수 있었음

**(제재) 위 2개사 시정명령(행위금지명령)**

### DVM 회원 수의사들의 구속 조건부 거래 사건('17. 1.25.)

• 법 위반 사항: 舊 공정거래법 제23조 제1항 제5호 '구속 조건부 거래'

- ✓ 위 거래거절 사건 관련, 수의사 인터넷 카페(DVM) 회원 수의사들은 주요 제약사, 판매업체 상대로 심장사상충 예방제를 동물병원에만 공급하고 동물약국으로 공급하지 말 것을 강제
  - 약품 공동구매, 불매운동 추진 등을 빌미로 제약사 등을 압박
  - 이에 제약사 등은 더욱 동물병원에서의 공급 거절 정책을 철저히 시행할 수 밖에 없었음

**(제재) 해당 수의사들에게 시정명령(행위금지명령, 공표명령)**



## 1. 공정거래법 해설

### 1.3. 일반 불공정 거래행위

#### 1.3.9. 불공정 거래 행위 사례

#### 울산 향운노조의 경쟁 노조 사업활동 방해 사건('21. 3.18)

• 법 위반 사항: **舊 공정거래법 제23조 제1항 제8호 '기타의 거래 거절'**

✓ 울산 향운노조는 울산지역 항만 하역 인력 공급사업을 사실상 독점하던 중, '15.8. 온산 향운 노조가 추가로 공급사업 허가 받자, 경쟁자를 배제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 전개

- 농성용 텐트·차량·조합원 등 동원하여 부두 진입 통행로를 봉쇄하는 등으로 경쟁자 작업장 진입을 방해 → 온산 노조는 부두 진입 불가로 관련 하역 작업 중단 및 고객과 계약 해지

**(제재) 울산향운노조에 시정명령 및 과징금 1,000 만원 부과**

#### 현대건설기계의 거래상 지위 남용 사건('21. 6.23.)

• 법 위반 사항: **舊 공정거래법 제23조 제1항 제4호 '거래상 지위의 남용'**

✓ 현대건설기계는 '09. 6.~ '16. 2.동안 판매위탁 대리점을 통해 건설장비 구매자에게 판매한 건설장비 대금이 구매자의 귀책사유로 납부되지 않은 경우 이를 대리점에 지급할 판매수수료 등과 상계(공제)한 후 나머지 수수료만 대리점에 지급

✓ 위법성 판단

(거래상지위) 대리점들은 계약에 따라 현대건설기계의 업무상 지시·감독을 받으며, 모두 현대건설기계의 제품만 취급하는 전속대리점이고 현대건설기계의 경쟁업체들도 각 지역마다 전속대리점을 두고 있어 현대건설기계 이외의 대체 거래선을 확보하는 것이 사실상 어려워 현대건설기계는 대리점들에 거래상 지위를 가짐

(부당성) 현대건설기계의 행위는 자신이 부담하여야 할 구매자에 대한 매매대금 회수 책임을 상계의 방법으로 대리점에 전가시킨 것으로 부당함

**(제재) 현대건설기계에 시정명령 및 과징금 0.55억원 부과**



## 1. 공정거래법 해설

### 1.3. 일반 불공정 거래행위

#### 1.3.10. 불공정 거래행위 FAQ

##### Q1

- 공정거래법상 거래거절이란 무엇을 의미하는지?

##### A1

- ✓ 거래거절이라 함은 어떤 사업자에 대하여 상품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제한하는 행위를 말함
- ✓ 그리고 경쟁자에 의한 염매를 방지하고 가격유지를 도모하기 위해 사업자가 공동으로 행하는 경우 등과 같은 공동의 거래거절과 기타의 거래거절로 구분
- ✓ 공동 거래거절 : 공동으로 행해졌기 때문에 특정의 사업자가 거래의 기회를 빼앗겨 시장으로부터 배제될 우려가 많고 거래거절에 참여하는 사업자에게도 상호 거래처 선택의 자유를 제한하는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에 정당한 이유가 없으면 위법이 됨
- ✓ 기타 거래거절 : 사업자는 원칙적으로 거래처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기 때문에 어떤 사업자가 특정 사업자에 대해 거래를 거절하더라도 위법하다고 볼 수 없으며, 시장 유력 지위에 있는 사업자가 거래거절을 함으로써 거래거절 당한 상대방이 다른 거래처를 찾기가 쉽지 않고 시장 배제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위법성 인정

##### Q2

- 협력업체 평가를 통해 대금결제금액에 차등을 둘 수 있는지?

##### A2

- ✓ 공정거래법은 "부당하게 거래 상대방을 차별하여 취급하는 행위 또는 자기의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상대방과 거래하는 행위로서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음
- ✓ 따라서, 협력업체 평가결과를 등급별로 구분하여 대금지급 시 부당하게 차별하거나 거래상 지위를 남용하여서는 아니되므로 협력업체에 대금 결제 금액을 기준으로 증액(인센티브 성격) 하는 합리적 차별은 가능하나 대금결제 금액을 감액하여 지급하는 차별 행위는 부당 차별취급 또는 거래상 지위 남용에 해당할 가능성 높음



## 1. 공정거래법 해설

### 1.3. 일반 불공정 거래행위

#### 1.3.10. 불공정 거래행위 FAQ

##### Q3

- "갑"이 "을" 이외의 거래처를 가지고 있는 상황이며, "을"이 "갑"과 거래시 영업비밀 누출 등의 우려가 있는 경우 "을"이 "갑"의 거래요구를 거절하는 것이 공정거래법 위반인지?

##### A3

- ✓ 사업자는 거래처 및 거래내용을 자유로이 선택할 권리가 있으므로 거래처의 가격, 품질, 서비스 등의 요인을 고려하여 독자적인 판단에 따라 어떤 특정 사업자와 거래하거나, 거래를 거절하는 것 자체는 문제가 되지 않음
- ✓ 다만, 부당히 특정사업자와의 거래 개시를 거절하거나 지속적인 거래관계에 있는 특정사업자와의 거래를 중단하거나, 거래하는 상품 또는 용역 수량이나 내용을 현저히 제한하는 행위(부당한 거래거절)는 공정 거래 저해 우려 행위로 공정거래법에 의해 금지됨
- ✓ 여기서 '부당한 거래거절' 해당여부는, 경쟁제한성이 있는지 여부(거래거절 대상이 되는 물품이나 용역의 필수성, 대체거래선 존재여부, 거래거절로 인해 특정사업자의 사업 활동이 곤란하게 되고 그 결과 당해 시장에서 경쟁의 정도를 실질적으로 감소시키게 되는지 여부, 거래거절로 인해 경쟁사업자의 시장진입의 곤란성 등), 거래거절의 사유 등 합리성 유무, 사업자의 시장점유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고 있음.
- ✓ 따라서, "갑"이 "을" 이외의 거래처를 가지고 있어 "을"의 거래거절로 인하여 "갑"의 사업수행이 현저히 곤란하게 된다고 보기 어렵고, "을"이 "갑"과 거래시 영업비밀 누출 우려등 정당한 사유로 거래를 거절하였다면 부당 거래거절로 보기 어려울 것으로 생각됨

##### Q4

- 회사 업무를 타 회사 승인을 받아 처리하는 것이 경영간섭에 해당되는지?

##### A4

- ✓ 경영간섭행위의 위법성 판단은 사업자가 거래상대방에 대해 거래상 지위를 가지는지 여부, 경영간섭 부당성 여부, 기타 합리적 사유 존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함
- ✓ 따라서, 질문과 같은 경영간섭의 내용이 당사자간 충분한 합의하에 이루어진다면 이를 법 위반으로 보기는 어려우나, 사업자가 거래상 지위를 이용하여 강제로 거래상대방의 경영활동 해당 업무를 승인을 받게 하고 있다면 위 규정에 저촉될 소지가 있을 수 있음



## 1. 공정거래법 해설

### 1.3. 일반 불공정 거래행위

#### 1.3.10. 불공정 거래행위 FAQ

##### Q5

- A회사는 경쟁 사업자 위치에 있는 B사를 배제하기 위해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낮은 가격으로 입찰에 참가하고 있음. 이러한 경우 공정거래법 위반에 해당 되지 않는지?

##### A5

- ✓ 공정거래법은 부당하게 경쟁사업자를 배제하는 행위를 불공정 거래 행위의 유형 중 하나로 두어 금지하고 있음
- ✓ 이는 사업자가 경쟁사업자를 배제 하기 위하여 정상적인 경쟁수단을 사용하지 않고 상품 또는 용역을 정당한 이유 없이 공급원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격으로 판매하거나 통상 거래되는 가격에 비하여 부당하게 높은 가격으로 구입하는 행위를 의미함
- ✓ 예로, 치약제조사가 경쟁사를 시장에서 배제하기 위해 치약을 개당 1원으로 응찰하여 낙찰받은 후 330만개를 공급하는 행위 등이 이에 해당할 수 있으며, 판례는 '경쟁사업자를 배제시킬 우려'는 추상적 위험성이 인정되는 정도로 족하고, 당해 매매행위의 의도, 목적, 여가의 정도, 행위자의 사업규모 및 시장에서의 지위 매매의 영향을 받는 사업자의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 개별적으로 판단(대법원 2001. 6. 12. 선고 99두 4686판결)하고 있음
- ✓ '계속거래상의 부당매매'의 경우 사업자가 채산성이 없는 낮은 가격으로 상품 또는 용역을 계속하여 공급하는 것을 가리키므로 그 행위의 외형상 그에 해당하는 행위가 있으면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크다고 보아야 할 것이나,
- ✓ 기타 거래상의 부당매매의 경우 그 행위태양이 단순히 상품 또는 용역을 낮은 가격으로 공급하는 것이어서 그 자체로 이를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만큼 그것이 '부당하게' 행하여진 경우에 공정 거래 저해 우려가 있다고 보아야 함(대법원 2001. 6. 12. 선고 99두4686 판결).
- ✓ 따라서 A회사가 부당매매를 한다고 하여 바로 공정거래법 위반이라 확정하기는 어려울 것이나 만일 경쟁사업자를 배제시킬 우려와 함께 부당하게 이루어진 경우 공정거래법 위반의 소지가 있다 할 것임



## 1. 공정거래법 해설

### 1.4. 대기업집단의 규제

#### 1.4.1. 기업집단의 의의

- 의미: 기업집단이란 동일인(사람 또는 회사)이 사실상 그 사업내용을 지배하는 회사의 집단을 말함
- 기업집단의 범위
  - 동일인 단독으로 또는 동일인관련자와 합하여 당해 회사의 발행주식(의결권 없는 주식 제외) 총수의 30% 이상을 소유하는 경우로서 최다출자자인 경우
  - 동일인이 다른 주주와의 계약 또는 합의에 의하여 대표이사를 임면하거나 임원의 50% 이상을 선임하거나 선임할 수 있는 회사
  - 동일인이 직접 또는 동일인관련자를 통하여 당해 회사의 조직변경 또는 신규 사업에의 투자 등 주요 의사결정이나 업무집행에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회사
  - 동일인이 지배하는 회사와 당해 회사 간에 임원겸임 등 인사교류가 있는 경우
  - 통상적인 범위를 초과하여 동일인 또는 동일인관련자와 자금·자산·상품·용역 등의 거래를 하고 있거나 채무보증을 하거나 채무보증을 받고 있는 회사
  - 기타 당해 회사가 동일인의 기업집단의 계열회사로 인정될 수 있는 영업상의 표시행위를 하는 등 사회통념상 경제적 동일체로 인정되는 회사
- 기업집단 규제 개관

#### 기업집단에 대한 규제

- (주식소유현황 등 공정거래위원회 신고) 매년 4월 말까지 해당회사의 국내회사 주식소유현황, 계열회사 및 특수관계인이 소유하고 있는 당해 회사의 주식수 등에 대하여 신고
- (공인회계사의 회계 감사)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국내회사는 공인회계사 회계감사를 받아야 하며, 공정위는 공인 회계사의 감사의견에 따라 수정한 대차 대조표를 사용
- (대규모 내부거래 이사회 의결/공시) 공시대상 기업집단 소속 국내회사는 특수 관계인을 상대방으로 하거나 특수관계인을 위한 자금/유가증권, 자산거래, 상품/용역/거래 금액이 자본총계 또는 자본금 중 큰 금액 의 5% 이상이거나 50억 원 이상인 거래를 하는 경우 미리 이사회의 의결을 거친 후 공시

####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 (계열회사간 상호출자 금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국내 회사는 자기의 주식을 취득 또는 소유하고 있는 국내 계열회사의 주식을 취득 또는 소유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회사의 합병 또는 영업전부의 양수, 담보권의 실행 또는 대물변제의 수령에 해당하는 경우 예외



## 1. 공정거래법 해설

### 1.4. 대기업집단의 규제

#### 1.4.1. 기업집단의 의의

- 기업집단 규제 개관

#####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 **(계열회사간 채무보증 금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국내 회사(금융업 또는 보험업을 영위하는 회사는 제외한다)는 채무보증을 하여서는 안됨
- 다만,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합리화기준에 따라 인수되는 회사의 채무 관련 채무보증이나, 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 위해 필요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대한 채무보증에 해당하는 채무보증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 기업집단 지정 요건

#### 공시대상기업집단

직전년도 대차대조표상의 자산총액(비 금융·보험회사)  
+ 자본총액과 자본금 중 큰 금액(금융·보험회사) ⇒ 5조원 이상

####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정된 공시대상기업집단 중 자산총액이  
국내총생산액의 1천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 이상인 기업집단



## 1. 공정거래법 해설

### 1.4. 대기업집단의 규제

#### 1.4.2. 대규모 내부거래의 공시(공시의 주체)

- 대규모 내부거래 공시주체
  - 공시주체는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
  - 공시대상기업집단은 매년 5월 공정거래위원회(기업집단정책과)에서 지정
  - 공시주체는 회사가 되므로 회사가 아닌 법인 또는 단체, 개인은 공시의무 없으며, 회사에는 상장사와 비상장사 모두 포함
  - 연도 중에 공시대상기업집단의 소속회사로 신규 편입된 회사는 편입 통지일 부터 적용

#### ▶ 내부거래 공시 주체 관련 공정거래법 규정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 제26조(대규모내부거래의 이사회 의결 및 공시)

- ① 제31조 제1항의 전단에 따라 지정된 공시대상 기업집단(이하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

##### 제31조(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등의 지정 등)

-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한 자산총액이 5조원 이상 기업 집단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시대상 기업집단으로 지정

##### 시행령

##### 제38조(공시대상기업집단 및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지정 등)

- ① 공시대상기업집단은 해당 기업 집단에 속하는 국내 회사들의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 직전사업연도의 대차대조표상의 자산 총액(금융업 또는 보험업 영위하는 회사의 경우자본총액 또는 자본금 중 큰 금액으로 하며, 새로 설립된 회사로서 직전사업연도 대차대조표가 없는 경우에는 지정일 현재의 납입자본금으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합계액이 5조원 이상인 기업집단으로 한다.

##### 고시

##### 제2조(용어의 정의)

- ① "내부거래 공시 대상 회사"라 함은 법 제3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규정된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를 말한다.



## 1. 공정거래법 해설

### 1.4. 대기업집단의 규제

#### 1.4.3. 대규모 내부거래 공시(거래 유형)

##### ▪ 적용 대상 거래 유형

- 이사회 의결 및 공시가 필요한 내부거래의 유형은 자금, 유가증권, 자산, 상품·용역을 제공 또는 거래하는 행위가 있음

##### (1) 자금거래

가지급금 또는 대여금 등의 자금을 직접 제공 또는 거래하거나, 특수관계인이 아닌 제3자를 통하여 간접적으로 자금을 제공·거래하는 행위

##### (2) 유가증권 거래

주식 또는 회사채 등 유가증권을 직접 제공 또는 거래하거나, 특수관계인이 아닌 제3자의 중개 등을 통하여 간접적으로 유가증권을 제공 또는 거래하는 행위를 말하며, 유가증권을 담보로 제공하거나 제공받는 행위를 포함함

##### (3) 자산거래

부동산 또는 무체재산권 등의 자산을 제공 또는 거래하는 행위. 여기에서 자산은 위 내용에 포함되지 않는 유동자산 및 고정자산(투자자산, 유형자산, 무형자산)을 말하며, 담보를 제공하거나 제공받는 행위와 부동산의 임대차거래를 포함함

##### (4) 상품 또는 용역 거래

회사의 영업활동과 관계된 경상적 거래로 거래당사자 일방에게 상품·용역거래인 경우 양 당사자 모두 상품·용역거래로 공시

\* 생산된 제품을 직접 제공 또는 거래하거나, 용역을 직접 제공 또는 거래하는 행위(계열회사 용도의 사무실·공장 등을 건축, 계열회사 제품의 운송 등 물류업무, 계열회사의 전산시스템 구축, 계열사의 상품·기업 브랜드 광고를 의뢰 받아 제작 및 집행하는 업무 등)



## 1. 공정거래법 해설

### 1.4. 대기업집단의 규제

#### 1.4.4. 대규모 내부거래의 공시(적용 대상 거래 상대방 등)

- 공시대상이 되는 거래상대방 - 자금/유가증권/자산거래시
  - 자금·유가증권·자산을 특수관계인을 상대방으로 거래하거나 특수관계인을 위하여 거래하고자 할 때 미리 이사회 의결을 거치고 공시해야 함
  - 특수관계인의 범위
    - ✓ 동일인(당해 회사를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자 즉 그룹 총수)
    - ✓ 동일인관련자
      - 동일인 배우자, 6촌 이내 혈족 및 4촌 이내의 인척(동일인 법인인 경우 해당 없음)
      - 동일인 및 동일인관련자가 합하여 최다 출연자이거나 그 중 1인이 설립자인 비영리법인, 단체
      - 동일인 및 동일인관련자가 임원구성·사업운용 등에 지배적 영향력을 행사하는 비영리법인, 단체
      - 동일인이 사실상 사업내용을 지배하는 회사(=계열회사\*)
        - \* 공정거래법 제2조 제12호에서는 둘 이상의 회사가 동일한 기업집단에 속하는 경우에 이들 회사는 서로 상대방 계열사로 규정하고 있음(국외계열사와 거래는 이사회 의결공시의무 유예)
    - ✓ 동일인 또는 동일인이 지배하는 비영리법인, 단체, 계열회사의 사용인
      - 법인의 경우 임원, 개인인 경우 상용 사용인 및 고용계약에 의한 피용인
    - ✓ 특수관계인을 위한 거래
      - 계열회사가 발행한 주식 또는 채권을 비계열사를 통하여 매입하는 경우 등
- 공시대상이 되는 거래상대방 - 상품/용역거래시
  - 상품·용역을 동일인 및 동일인 친족 출자 계열회사를 상대방으로 거래하거나 동일인 및 동일인 친족 출자 계열회사를 위하여 거래하고자 할 때 미리 이사회 의결을 거치고 공시해야 함
  - 동일인 및 동일인 친족 출자회사 계열회사의 범위
    - 동일인이 단독으로 또는 동일인의 친족과 합하여 발행주식 총수의100분의 2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계열회사(이하 "A")
    - A가 발행주식의 50%를 초과하여 소유한 상법상 자회사(이하 "B")
      - A와 B간 상품용역거래 시 A는 이사회 의결 및 공시의무 없음 (단, B가 동일인 및 동일인 친족지분 20% 미만인 계열사일 경우)
      - 국외계열사와의 거래는 이사회 의결 및 공시의무 유예)



## 1. 공정거래법 해설

### 1.4. 대기업집단의 규제

#### 1.4.5. 대규모 내부거래의 공시(적용 대상 거래의 기준, 공시 시기 및 내용, 위반시 제재)

- 적용대상 거래
  - 적용대상거래는 특수관계인을 상대방으로 하거나 특수관계인을 위하여 자금, 유가증권, 자산을 제공 또는 거래하는 행위로서 거래금액이 당해 회사의 자본총계 또는 자본금 중 큰 금액이 100분의 5 이상이거나 50억원 이상인 대규모내부거래 행위를 말함  
(상품 또는 용역을 제공 또는 거래하는 행위의 경우 분기에 이루어질 거래금액의 합계액을 의미).
  - 자본총계는 주주총회에서 승인된 최근 사업연도 말 재무제표에 표시된 자본 총계를 기준으로 하며, 자본금은 이사회 의결일 전일의 자본금을 기준으로 함
  - 적용대상거래는 특수관계인을 직접적인 거래상대방으로 한 경우뿐만 아니라 특수관계인을 위한 거래도 포함
- 대규모 내부거래로 보지 않는 경우
  - 공시대상 거래에 대한 권리의 행사 또는 의무의 이행에 따라 발생하는 부수적인 거래로서 새로운 거래관계가 성립하지 않는 행위
    - 채권·CP매입 또는 장단기 차입 후 이를 만기 상환하는 경우
    - 상품·용역 및 금융거래에 수반하여 부수적으로 이루어지는 할부 금융이나 카드결제
  - 거래당사자가 거래금액, 거래단가, 이자율 등 거래조건을 결정할 수 없는 행위
    - 주식을 계열증권사를 통해 장내시장에서 거래하는 경우(다만, 장 종료 후 시간외거래는 공시대상)
- 공시시기 및 내용
  - 공시시기: 이사회 의결 후 상장법인은 1일 이내, 비상장 법인은 7일 이내
  - 공시내용: 거래의 목적 및 대상, 거래의 상대방, 경쟁입찰·수의계약 등 계약체결방식(상품·용역 거래에 限), 거래금액 및 조건, 거래상대방과 동일거래유형의 총거래잔액 등 주요내용
- 위반 시 제재
  - 시정조치: 공시의무의 이행 또는 공시내용의 정정 등의 시정조치 가능
  - 과태료: 공시의무 미이행이나 주요내용의 누락 또는 허위 작성 및 공시 시 과태료를 부과 가능



## 1. 공정거래법 해설

### 1.4. 대기업집단의 규제

#### 1.4.6. 계열사간 상호출자 금지

##### ▪ 의의

-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계열회사간에는 서로 주식을 보유하는 상호출자가 상호보유주식의 규모나 지분율의 과다와 관계없이 전면 금지됨
- 비계열회사와의 상호출자는 금지되지 않으며, 이는 상호간의 출자가 별개의 의사결정 주체에 의해 결정된 점을 고려한 것임

##### ▪ 계열사간 상호출자 금지의 예외

- 회사의 합병 또는 영업전부의 양수, 담보권의 실행 또는 대물변제 수령으로 인하여 상호출자가 발생하는 경우는 상호출자 인정
- 이 경우에도 6개월에 한해 예외가 인정되므로 6월 이내에 두 회사 중 하나의 회사는 상대 회사 주식을 처분해야 함(공정거래법 제21조 제2항).

##### ▪ 위반 시 제재

- 해당 행위의 중지, 주식의 처분,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 등 필요한 조치
- 주식처분명령을 받은 날부터 당해 주식에 대하여는 의결권 행사 불가
- 위반한 금액의 20% 이내의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



## 1. 공정거래법 해설

### 1.4. 대기업집단의 규제

#### 1.4.7. 계열사간 신규 순환출자 금지

##### ▪ 의의

-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소속 계열회사는 순환출자를 형성하는 계열 출자 금지
- 신규 순환출자고리의 형성 외에, 기존의 순환출자고리를 강화하는 추가적인 출자 역시 금지

##### ▪ 계열사간 출자 금지의 예외: 유예 기간 내 해당 주식 처분 필요

- 회사의 합병·분할, 주식의 포괄적 교환·이전 또는 영업전부의 양수(주식 취득·소유일로부터 6개월)
- 담보권의 실행 또는 대물변제의 수령(주식 취득·소유일로부터 6개월)
- 계열출자회사가 신주배정등에 따라 취득 또는 소유한 주식 중에서 다른 주주의 실권(失權) 등에 따라 신주배정등이 있기 전 자신의 지분을 범위를 초과하여 취득 또는 소유한 계열출자대상회사의 주식이 있는 경우(주식 취득·소유일로부터 1년)
-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제8조제1항에 따라 부실징후기업의 관리절차를 개시한 회사에 대하여 같은 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금융채권자협의회가 의결하여 동일인(친족을 포함한다)의 재산출연 또는 부실징후기업의 주주인 계열출자회사의 유상증자 참여(채권의 출자전환을 포함한다)를 결정한 경우(주식 취득·소유일로부터 3년)
-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제2조제2호의 금융채권자가 같은 조 제7호에 따른 부실징후기업과 기업개선계획의 이행을 위한 약정을 체결하고 금융채권자협의회 의결로 동일인(친족을 포함한다)의 재산출연 또는 부실징후기업의 주주인 계열출자회사의 유상증자 참여(채권의 출자전환을 포함한다)를 결정한 경우(주식 취득·소유일로부터 3년)

##### ▪ 위반 시 제재

- 해당 행위의 중지, 주식의 처분,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 등 필요한 조치
- 위반 금액의 10%이내 과징금 부과
- 형사처벌: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
- 신규순환출자 금지규정을 위반한 주식에 대해 의결권 행사 제한



## 1. 공정거래법 해설

### 1.4. 대기업집단의 규제

#### 1.4.8. 계열사간 채무보증 금지

##### ▪ 의의

-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가 국내 금융기관으로부터 여신(대출과 지급 보증)을 받을 때 동일 기업집단 소속 국내계열회사가 행하는 보증은 금지
- 단, 국내금융기관의 여신과 관련되지 않은 기업과 기업간에 직접 행하는 보증은 금지되는 채무보증에 해당되지 않음

##### ▪ 채무보증 금지의 예외

-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한 합리화 기준에 따라 인수되는 회사의 채무와 관련하여 행하는 보증
  - ✓ 주식양도, 합병 등의 방법으로 인수되는 회사의 인수 시점의 채무나 양도하기로 예정된 채무에 대하여 인수하는 회사 또는 그 계열회사가 행하는 보증
  - ✓ 인수되는 회사의 채무를 분할 인수함에 따라 인수하는 채무에 대하여 인수하는 회사의 계열사가 행하는 보증
- 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한 보증
  - ✓ 한국수출입은행법 제18조(업무)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자본재 기타 제품의 생산 또는 기술의 제공과정에서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기 위하여 한국수출입은행이 행하는 대출 또는 이와 연계하여 다른 국내금융기관이 행하는 대출에 대한 보증
  - ✓ 해외에서의 건설 및 산업설비공사의 수행, 수출선박 건조, 용역수출 기타 공정위가 인정하는 물품 수출과 관련하여 국내금융기관이 행하는 입찰 보증, 계약이행보증, 선수금 환급보증, 유보금 환급보증, 하자보수보증, 또는 납세보증에 대한 보증
  - ✓ 국내의 신기술 또는 도입된 기술의 기업화와 기술개발을 위한 시설 및 기자재의 구입 등 기술개발사업을 위하여 국내 금융기관으로부터 지원받은 자금에 대한 보증
  - ✓ 인수인도조건수출, 지급인도조건수출 어음의 국내 금융기관 매입 및 내국 신용장 개설에 대한 보증
  - ✓ 다음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과 관련하여 국내금융기관의 해외지점에 행하는 여신에 대한 보증
    - ☞ 외국환거래법의 규정에 의한 해외직접투자
    - ☞ 해외 건설 및 용역사업자가 행하는 외국에서의 건설 및 용역사업
    - ☞ 기타 공정위가 인정하는 외국에서의 사업
  - ✓ 채무자 회생법에 의한 회생절차 개시를 법원에 신청한 회사의 제3자 인수와 직접 관련된 보증
  - ✓ 사회기반 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4조 제1호 또는 제4호 규정에 의한 방식으로 민간투자사업을 영위하는 계열사에 출자를 한 경우로 국내금융기관이 당해 계열사에 행하는 여신에 대한 보증
  - ✓ 공기업의 구조개편에 따른 분할로 인해 신설되는 자회사가 모회사인 공기업의 보증을 인수하는 경우로서 모회사가 자회사에 대해 재보증하는 경우



## 1. 공정거래법 해설

### 1.4. 대기업집단의 규제

#### 1.4.8. 계열사간 채무보증 금지

##### ▪ 탈법적 채무보증

- 국내 금융기관에 대한 자기 계열회사의 기존의 채무를 면하게 함이 없이 동일한 내용의 채무를 부담하는 행위(병존적 채무인수) 또는
- 다른 회사로 하여금 자기의 계열회사에 대하여 채무보증을 하게 하는 대신 그 다른 회사 또는 그 계열회사에 대하여 채무보증을 하는 행위(교차 채무보증)는 탈법적인 채무보증에 해당

##### ▪ 위반 시 제재

- 해당 행위의 중지 및 관련채무보증의 취소,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 등의 시정조치
- 법 위반 채무보증액의 20%이내의 범위에서 과징금 부과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
- 탈법행위에 대해서도 형벌(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 부과 가능



## 1. 공정거래법 해설

### 1.4. 대기업집단의 규제

#### 1.4.9.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관련 사례

### 기업집단 KT·포스코의 대규모 내부거래 공시 위반 사건('17.10.17.)

• **법 위반행위: 舊 공정거래법 제11조의2 '대규모 내부거래의 이사회 의결'**

- ✓ 공정위의 3개 기업집단(KT, 포스코, 케이티앤지) 소속 86개 계열사 대상 '대규모 내부거래 이사회 의결 및 공시' 이행 여부 점검 결과, 2개 기업집단(KT, 포스코) 소속 9개사가 14건의 공시 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확인됨

#### < 공시 점검 개요 >

- 대상 기업집단: KT, 포스코, 케이티앤지
- 점검 대상 기간: 2013년 4월 1일 ~ 2017년 4월 30일
- 점검 방법·일시: 서면·현장점검 / 2017년 7월 ~ 2017년 9월
- 주요 점검 사항: 공정거래법 제11조의 2 대규모내부거래 이사회 의결 및 공시

의무 이행 여부

- ✓ 공시 위반 사항(KT: 12건/포스코: 2건)
  - 계열사간 자금, 유가증권, 자산 거래 시 이사회 미의결·미공시
    - 예1) 계열사간 자금, 유가증권 거래 시 이사회 미의결·미공시, 또는 이사회 의결 후 미공시
    - 예2) 계열사 차입금 담보를 위해 보유 주식을 담보로 제공하면서 이사회 미의결·미공시

- **제재: 2개 기업집단에 과태료 총 4.99억원 부과(KT 총 3.59억원, 포스코 1.4억원)**



## 1. 공정거래법 해설

### 1.4. 대기업집단의 규제

#### 1.4.10. 계열사간 상호·순환 출자 및 채무보증 금지 관련 사례

#### 현대자동차 기업집단의 순환출자 금지규정 위반 사건('16. 5.19.)

- 법 위반 사항: **舊 공정거래법 제9조의2 '순환출자의 금지'**
    - ✓ 현대제철(존속)·현대하이스코(소멸)간 합병에 따라 각 합병 당시 회사 주주 현대자동차, 기아자동차는 신(新)현대제철의 합병 신주를 취득하여 순환출자 강화가 발생
      - \* (현대자동차) 합병 전 보유하고 있던 현대하이스코 주식 6,698,537주에 대한 대가로 배정받은 신(新)현대제철 합병신주 5,745,741주(4.31%)
      - \* (기아자동차) 합병 전 보유하고 있던 현대하이스코 주식 3,570,405주에 대한 대가로 배정받은 신(新)현대제철 합병신주 3,062,553주(2.29%)
      - \* 10개 관련 시장 중 디지털유료방송, 8VSB방송 2개 시장에서 결합으로 경쟁 제한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
        - ※ 판단 사유: 결합으로 인한 시장 점유율 상승, 요금인상 경쟁 압력 약화 등
  - **(제재) 아래 사유 종합 고려 시 법 위반 정도가 경미하고 위반 행위를 스스로 시정하여**
    - 시정조치의 실익이 없다는 점 등이 인정되어 경고 조치를 결정**
- \*\* 고려 사유
- 1) 이 사건 추가적인 계열 출자는 지배력 강화·유지 보다는 침체된 철강 시장에서 합병을 통한 경영 효율성 증대 등 목적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 2) 순환출자 금지 제도 시행 이후 첫 사례로 공정위 유권 해석(2015년 12월 24일) 전까지 해소 대상인지 여부가 확정되기 곤란한 측면이 있었던 점
  - 3) 피심인들이 합병 전후로 별도 법률 자문을 거치는 등 법 위반 예방을 위해 상당한 주의를 기울인 점
  - 4) 피심인들이 추가적인 계열 출자에 해당하는 현대제철 주식을 전부 처분하여 사건 심사 과정에서 조속히 위반 행위를 스스로 시정한 점 등



## 1. 공정거래법 해설

### 1.4. 대기업집단의 규제

#### 1.4.10. 계열사간 상호 출자 및 채무보증 금지 관련 사례

##### 대한시스템즈(주)의 채무보증 금지규정 위반 사건('14. 9.25)

- 법 위반 사항: **舊 공정거래법 제10조의2 제1항 '채무보증 금지 규정'**
  - ✓ 대기업 집단 대한전선 소속 대한시스템즈(주)는 국내 계열회사인 (주)티이씨앤 알이 4개 저축은행(한국·진흥·경기·영남상호저축은행)에서 받은 대출에 '08. 6. ~ '12. 4.간 최대 280억 원 한도의 채무 보증을 제공
  - ✓ 이러한 대한시스템즈(주)의 행위는 공정거래법상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소속회사의 채무 보증 금지 규정을 위반한 행위에 해당
- **(제재) 대한시스템즈(주)에 과징금 4.76억원 부과**



## 1. 공정거래법 해설

### 1.4. 대기업집단의 규제

#### 1.4.11.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관련 FAQ

##### Q1

- 동일인 관련자와 특수관계인이 동일한 개념인지?

##### A1

- ✓ 동일인 관련자와 특수관계인은 유사한 개념으로 쓰이긴 하나 공정거래법상 정의규정에 따르면 차이가 있음
- ✓ 공정거래법 시행령 제14조 제1항에 따르면, 특수관계인이란 ① 해당 회사를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자, ② 동일인 관련자, ③ 경영을 지배하려는 공동의 목적을 가지고 기업 결합에 참여하는 자로 규정하고 있음

##### Q2

- 계열회사에서 "회사"는 상법상 회사를 의미하는 것인지?

##### A2

- ✓ 원칙적으로 상법에 규정되어 있는 회사를 의미함
- ✓ 다만, 그 실질상 영리행위를 하는 법인인 경우 회사에 해당될 수도 있음(영리성, 사단성, 법인성이 핵심 개념)
  - \* 상법 제169조(회사의 의의)
 

이 법에서"회사"란 상행위나 그 밖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여 설립한 법인을 말한다.
  - \* 상법 제170조(회사의 종류)
 

회사는 합명회사, 합자회사, 유한책임회사, 주식회사와 유한회사의 5종으로 한다.
  - \* 민법 제39조(영리법인)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단은 상사회사 설립의 조건에 좇아 이를 법인으로 할 수 있다



## 1. 공정거래법 해설

### 1.4. 대기업집단의 규제

#### 1.4.11.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관련 FAQ

##### Q3

- 현재 A라는 회사에 대해 지분율 요건을 충족하고 있지 않고, 다만 소속회사 임원 B가 A사 임원을 겸임하고 있을 뿐 임(자금대차, 채무보증, 거래 등 없음) 이 경우, A사는 계열사에 해당하는지?

##### A3

- ✓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원 겸임 사실만으로 바로 계열 관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님
- ✓ 다만, 임원겸임으로 인해 실질적으로 A사에 대한 지배력이 인정된다면 계열사 관계가 성립할 수도 있음  
예): 임원 B가 10% 지분을 보유(나머지 90%는 B의 배우자) 하고 있고, A사 대표로 재직 중인 경우

##### Q4

- '21.12. 전면 개정·시행된 공정거래법에 따라 신설·변경된 거래 현황 관련 공시사항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 A4

- ✓ 모든 계열사와의 물류 또는 IT 서비스 상품 용역 거래 현황 공시(매년 5/31까지. 신설)
- ✓ 동일인의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공익법인과의 거래 현황 공시(매년 5/31까지. 신설)
- ✓ 직전 사업연도까지 국내 계열사에 판매한 상품·용역 거래금액 공시 시, 분기별 거래 금액도 함께 명시(변경. 국외 계열사 매출액은 기존과 동일하게 연간 거래금액 공시)



## 1. 공정거래법 해설

### 1.4. 대기업집단의 규제

#### 1.4.12. 상호·순환 출자 및 채무보증 금지 FAQ

##### Q1

- A사, B사, C사가 동일 기업집단 계열사로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인 경우 A사가 C사 지분 약20%를 가지고 있고, B사는 A사·C사가 지분을 공동 출자하여 설립한 합작회사라면, 이 경우에도 상호출자에 해당하게 되는지?

##### A1

- ✓ 공정거래법상 금지하고 있는 상호출자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가 자신의 주식을 취득 또는 소유하고 있는 계열사의 주식을 취득 또는 소유하는 것을 말함
- ✓ 따라서, 본건 질의의 경우 공정거래법상 금지하고 있는 상호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됨

##### Q2

- 계열사를 위해 담보를 제공하는 경우(물권담보,예금담보 등)도 채무보증에 해당되는지?

##### A2

- ✓ 공정거래법상 채무보증은 인적보증을 의미하므로, 물적보증(물권 담보, 예금 담보 등)은 해당되지 않음
- ✓ 따라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회사가 계열사 금융기관 여신에 대하여 물적담보를 제공하여도 공정거래법상 채무보증금지 규정에 저촉되지 않음
- ✓ 다만, 백지어음 제공의 경우 사실상 인적담보로서의 성격을 가지고 있으므로 공정거래법상 채무보증에 해당



## 1. 공정거래법 해설

### 1.4. 대기업집단의 규제

#### 1.4.12. 상호·순환 출자 및 채무보증 금지 FAQ

##### Q3

-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국내 모회사가 국내 자회사의 해외 발행 채권에 보증을 제공하고 동 채권을 발행시장 또는 발행 완료된 후 유통시장에서 국내 금융기관의 해외지점이 취득하는 경우는 공정거래법상 채무보증 금지규정 위반인지?

##### A3

- ✓ 공정거래법상 금지되는 채무보증은 국내 금융기관 여신과 관련하여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가 국내 계열사에 대해 행하는 보증을 말함
- ✓ 여기서 말하는 국내 금융기관에는 국내 금융기관의 해외지점도 포함하므로, 본건 질의와 같이 계열회사가 보증한 사채를 국내 금융기관의 해외지점이 인수한 경우도 공정거래법상 금지되는 채무보증에 해당한다 할 수 있음



## 1. 공정거래법 해설

### 1.5. 부당지원행위 규제

#### 1.5.1. 부당한 지원 행위의 금지

- 의의
  - 부당하게 특수관계인 또는 다른 회사에 ① 가지급금, 대여금, 인력, 부동산, 유가증권, 상품, 용역, 무체재산권 등을 제공하거나 상당히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하는 행위 또는 ② 다른 사업자와 직접 상품·용역을 거래하면 상당히 유리함에도 불구하고 거래상 실질적인 역할이 없는 특수관계인 또는 다른 회사를 지원하는 행위를 말함
- 구체적 행위 유형

#### 부당한 자금 지원

- 부당하게 특수관계인 또는 다른 회사에 가지급금이나 대여금 등의 자금을 상당히 낮거나 높은 대가로 제공 또는 거래하거나
- 상당한 규모로 제공 또는 거래하는 행위를 통하여 과도한 경제상 이익을 제공하여 특수관계인 또는 다른 회사를 지원하는 행위

#### 부당한 상품, 자산 등 지원

- 부당하게 특수관계인 또는 타 회사에 부동산, 유가증권, 무체재산권 등 자산 또는 용역·상품을 상당히 높거나 낮은 가격으로 거래하거나
- 상당한 규모로 제공 또는 거래하는 행위 통해 과도한 경제상 이익을 제공하여 특수관계인 또는 다른 회사를 지원하는 행위

#### 부당한 인력 지원

- 부당하게 특수관계인 또는 타 회사에 인력을 상당히 높거나 낮은 가격으로 제공하거나 상당한 규모로 제공하여 통해 과도한 경제상 이익을 제공하여 특수관계인 또는 다른 회사를 지원하는 행위

#### 부당한 거래단계의 추가 등

- 다른 사업자와 직접 상품·용역을 거래하면 상당히 유리함에도 불구하고 거래상 역할이 없거나 미미한 특수관계인 또는 다른 회사를 거래단계에 추가하거나 거쳐서 거래하는 행위 또는
- 타 사업자와 직접 상품·용역을 거래하면 상당히 유리함에도 특수관계인이나 타 회사를 거래 단계에 추가 또는 거쳐서 거래하면서 그 특수관계인이나 다른 회사에 거래상 역할 대비 과도한 대가를 지급하여 과도한 경제상 이익을 제공함으로써 특수관계인·타 회사를 지원하는 행위



## 1. 공정거래법 해설

### 1.5. 부당지원행위 규제

#### 1.5.1. 부당한 지원 행위의 금지

■ 지원 행위의 구체적 기준 및 지원금액 산정 원칙

- 자금거래의 경우

- 지원주체가 지원객체와 가지급금·대여금 등 자금을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는 대가보다 상당히 낮거나 높은 대가로 제공 또는 거래하는 행위를 통하여 과도한 경제상 이익을 제공하는 것과 지원주체가 지원객체와 가지급금·대여금 등 자금을 상당한 규모로 제공 또는 거래하는 행위를 통하여 과도한 경제상 이익을 제공하는 것은 지원 행위에 해당

\* 지원주체가 지원객체의 금융상 편의를 위하여 직접 또는 간접으로 현금 기타 자금을 이용할 수 있도록 경제상 이익을 제공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함

- 이러한 지원 행위는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는 대가보다 상당히 낮거나 높은 대가로 제공 또는 거래하는 행위는 실제 적용된 금리(이하 "실제적용금리"라 한다)가 해당 자금거래와 시기, 종류, 규모, 기간, 신용상태 등의 면에서 동일 또는 유사한 상황에서 특수관계가 없는 독립된 자 사이에 자금거래가 이루어졌다면 적용될 금리(이하 "개별정상금리"라 한다)보다 상당히 낮거나 높은 경우에 성립

- 구체적 예시

- ❖ 지원주체가 지원객체의 금융회사로부터의 차입금리보다 저금리로 자금 대여
- ❖ 계열금융회사에게 콜자금을 시중 콜금리보다 저금리로 대여
- ❖ 계열투자신탁회사가 고객의 신탁재산으로 지원객체에게 저금리의 콜자금 등을 제공
- ❖ 상품·용역거래와 무관하게 「선급금 명목으로」 지원객체에게 무이자 또는 저금리로 자금을 제공
- ❖ 계열금융회사가 특수관계가 없는 독립된 자의 예탁금에 적용하는 금리보다 낮은 금리로 계열금융회사에 자금을 예치
- ❖ 단체퇴직보험을 금융사에 예치하고 이를 담보로 지원객체에 저금리로 대출
- ❖ 계열금융회사가 지원객체에게 대여한 대여금의 약정 연체이자율을 적용하지 않고 일반 대출이자율을 적용하여 연체이자를 수령
- ❖ 주식매입 양으면서 증권예탁금 명목으로 계열증권사에 자금을 저금리로 예탁
- ❖ 보유하고 있는 지원객체 발행주식에 대한 배당금을 정당한 사유없이 수령하지 않거나 수령을 게을리 하는 경우
- ❖ 지원객체 소유 부동산에 대해 장기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및 중도금을 지급한 뒤 잔금지급전 계약을 파기하여 계약금 및 중도금 상당액을 변칙 지원
- ❖ 지원주체가 제3자인 은행에 정기예금을 예치한 다음 이를 다시 지원객체에 대한 대출금의 담보로 제공함으로써 지원객체로 하여금 은행으로부터 낮은 이자율로 대출



## 1. 공정거래법 해설

### 1.5. 부당지원행위 규제

#### 1.5.1. 부당한 지원 행위의 금지

- 지원 행위의 구체적 기준 및 지원금액 산정 원칙
  - 유가증권, 부동산 등의 자산을 거래한 경우

- 지원주체가 지원객체에게 유가증권·부동산·무체재산권이나 기타 자산(이하 "자산"이라 한다)을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는 대가보다 상당히 낮거나 높은 대가로 제공 또는 거래하는 행위를 통하여 과다한 경제상 이익을 제공하는 것은 지원 행위에 해당함. 또한 지원주체가 지원객체에게 자산을 상당한 규모로 제공 또는 거래하는 행위를 통하여 과다한 경제상 이익을 제공하는 것도 지원 행위에 해당
- 지원주체와 지원객체 간의 자산 거래에 의한 지원 행위 중 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는 대가보다 상당히 낮거나 높은 대가로 제공 또는 거래하는 행위를 통하여 과다한 경제상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는 실제 거래가격이 해당 자산 거래와 시기, 종류, 규모, 기간 등이 동일 또는 유사한 상황에서 특수관계가 없는 독립된 자 사이에 이루어졌다면 형성되었을 거래가격에 비하여 상당히 낮거나 높은 경우에 성립

#### - 구체적 예시(1)

- ❖ 지원객체가 발행한 기업어음을 비계열사가 매입한 할인율보다 낮은 할인율로 매입하는 경우 [기업어음 고가매입]
- ❖ 지원객체의 신용등급에 적용되는 할인율보다 낮은 할인율을 적용하여 발행한 기업어음을 매입하는 경우 [기업어음 고가매입]
- ❖ 지원주체가 제3자 발행의 기업어음을 매입하고 그 제3자로 하여금 그 매출금액의 범위 내에서 지원객체 발행의 기업어음을 지원객체에게 유리한 조건으로 매입하도록 하는 경우 [기업어음 고가매입]
- ❖ 역외펀드를 이용하여 지원객체가 발행한 주식을 고가로 매입하거나 기업어음 등을 저금리로 매입하는 경우 [주식 또는 기업어음 고가매입]
- ❖ 계열투자신탁운용회사가 고객의 신탁재산으로 지원객체의 기업어음이나 회사채를 저금리로 매입하는 경우 [기업어음 또는 회사채 고가매입]
- ❖ 금융회사의 특정금전신탁에 가입하고 동 금융회사는 동 자금을 이용하여 위탁자의 특수관계인 등이 발행한 기업어음 또는 사모사채를 저금리로 인수하는 경우 [기업어음 또는 사모사채 고가매입]
- ❖ 특수관계가 없는 독립된 자가 인수하지 않을 정도의 낮은 금리수준으로 발행된 후순위사채를 지원주체가 인수하는 경우 [후순위사채 고가매입]
- ❖ 제3자 배정 또는 실권주(失權株) 인수 등의 방식을 통해 유상증자에 참여하면서 특수관계가 없는 독립된 자가 인수하지 않을 정도의 고가로 발행한 주식을 지분을 전혀 보유하고 있지 않던 지원주체가 인수하는 경우 [주식 고가매입]



## 1. 공정거래법 해설

### 1.5. 부당지원행위 규제

#### 1.5.1. 부당한 지원 행위의 금지

- 지원 행위의 구체적 기준 및 지원금액 산정 원칙
  - 구체적 예시(2)

- ❖ 제3자 배정 또는 실권주 인수 등의 방식을 통해 유상증자에 참여하면서 특수관계가 없는 독립된 자가 인수하지 않을 정도의 고가로 발행한 주식을 기존 주주인 지원주체가 인수하여 증자 후의 지분율이 증자 전의 지분율의 50/100 이상 증가하는 경우(다만, 증자 전 제1대 주주이거나 증자 후 제1대 주주가 되는 주주가 유상증자에 참여한 경우는 제외하며, 의결권이 제한되는 계열 금융사 등은 제1대 주주로 보지 아니함) [주식 고가매입]
- ❖ 금융관련 법규위반을 회피하기 위해 금융회사를 통하여 실권주를 높은 가격으로 우회 인수하거나 기타 탈법적인 방법으로 지원주체가 인수하는 경우 [주식 우회인수]
- ❖ 전환권행사가 불가능할 정도로 전환가격이 높고, 낮은 이자율로 발행된 전환사채를 지원주체가 직접 또는 제3자를 이용하여 우회 인수하는 경우 [전환사채 고가매입]
- ❖ 지원객체가 발행한 전환사채에 관하여 지원주체가 제3자인 대주단(貸主團)에 지원주체 소유의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고 위 전환사채에 관하여 대주단과 총수익스왑프(TRS, Total Return Swap) 계약을 체결하여 대주단으로 하여금 위 전환사채를 인수하도록 하는 경우 [전환사채 고가매입]
- ❖ 경영권 방어목적 등 특별한 사유없이 전환권행사로 인해 포기되는 누적이자가 전환될 주식의 시세총액과 총 전환가액의 차액보다도 크에도 불구하고 지원주체가 전환권을 행사하는 경우 [전환사채 저가주식 전환]
- ❖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여 지원객체에 매각하는 경우 [신주인수권부사채 저가매각]
- ❖ 비계열금융회사에 후순위대출을 해주고, 동 금융회사는 지원객체가 발행한 저금리의 회사채를 인수하는 경우 [회사채 고가매입]
- ❖ 계열금융회사가 지원객체가 보유한 부도난 회사채 및 기업어음 등 유가증권을 고가에 매입하는 경우 [부도 유가증권 고가매입]
- ❖ 부동산을 시가에 비하여 저가로 지원객체에 매도하거나, 고가로 지원객체로부터 매수하는 경우 [부동산 저가매도 또는 부동산 고가매수]
- ❖ 계열회사가 단독으로 또는 지원객체와 공동으로 연구개발한 결과를 지원객체에 무상양도하여 지원객체가 특허출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 [무체재산권 무상양도]



## 1. 공정거래법 해설

### 1.5. 부당지원행위 규제

#### 1.5.1. 부당한 지원 행위의 금지

- 지원 행위의 구체적 기준 및 지원금액 산정 원칙
  - 부동산 임대차의 경우

· 지원주체가 지원객체에게 부동산을 무상으로 사용하도록 제공하거나, 정상임대료보다 상당히 낮은 임대료로 임대하거나 정상임차료보다 상당히 높은 임차료로 임차하는 행위를 통하여 과도한 경제상 이익을 제공하는 것은 지원 행위에 해당. 또한 지원주체가 지원객체에게 부동산을 상당한 규모로 임대차하는 행위를 통하여 과도한 경제상 이익을 제공하는 것은 지원 행위에 해당

· 정상임대료는 해당 부동산의 종류, 규모, 위치, 임대시기, 기간 등을 참작하여 유사한 부동산에 대하여 특수관계가 없는 독립된 자 사이에 형성되었을 임대료로 하되, 이를 합리적으로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다음 계산식에 의함. 산식을 적용함에 있어 정기에금이자율은 임대인이 정한 이자율이 없거나 정상이자율로 인정하기 어려운 때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47조에 의한 정기에금이자율을 기준으로 함

\* 산식: (부동산 정상가격의 50/100)×임대일수×정기에금이자율/365 = 해당기간 정상 임대료

- 구체적 예시

- ❖ 지원객체에게 공장·매장·사무실을 무상 또는 낮은 임대료로 임대하는 경우 [부동산 저가임대]
- ❖ 임대료를 약정납부기한보다 지연하여 수령하면서 지연이자를 받지 않거나 적게 받는 경우 [부동산 저가임대]
- ❖ 지원객체로부터 부동산을 임차하면서 고가의 임차료를 지급하는 경우 [부동산 고가임차]
- ❖ 지원주체가 지원객체 소유 건물·시설을 이용하면서 특수관계가 없는 독립된 자와 동일하게 이용료를 지불함에도 불구하고 임차보증금 또는 임차료를 추가적으로 지급하는 경우 [부동산 고가임차]



## 1. 공정거래법 해설

### 1.5. 부당지원행위 규제

#### 1.5.1. 부당한 지원 행위의 금지

- 지원 행위의 구체적 기준 및 지원금액 산정원칙

- 상품 용역을 거래한 경우: 거래대가 차이로 인한 지원 행위

- 지원주체가 지원객체와 상품·용역을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는 대가보다 상당히 낮거나 높은 대가로 제공 또는 거래하는 행위를 통하여 과도한 경제상 이익을 제공하는 것은 지원 행위에 해당한다.

- 상품·용역 거래에 의한 지원 행위 중 거래대가 차이로 인한 지원 행위는 실제 거래가격이 해당 상품·용역 거래와 시기, 종류, 규모, 기간 등이 동일 또는 유사한 상황에서 특수관계가 없는 독립된 자 사이에 이루어졌다면 형성되었을 거래가격에 비하여 상당히 낮거나 높은 경우에 성립한다.

- 구체적 예시

- ❖ 지원객체에 대한 매출채권회수를 지연하거나 상각하여 회수불가능 채권으로 처리하는 경우
- ❖ 외상매출금, 용역대금을 약정기한 내에 회수하지 아니하거나 지연하여 회수하면서 이에 대한 지연이자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
- ❖ 지원객체가 생산·판매하는 상품을 구매하는 임직원에게 구매대금을 대여하거나 융자금을 알선해 주고 이자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임직원소속 계열회사의 자금으로 부담하는 경우
- ❖ 지원객체가 운영하는 광고매체에 정상광고단가보다 높은 단가로 광고를 게재하는 방법으로 광고비를 과다 지급하는 경우
- ❖ 주택관리업무를 지원객체에게 위탁하면서 해당 월의 위탁수수료 지급일보다 지원객체로부터 받는 해당 월의 임대료 등 정산금의 입금일을 유예해주는 방법으로 지원객체로 하여금 유예된 기간만큼 정산금 운용에 따른 이자 상당의 수익을 얻게 하는 경우
- ❖ 지원객체가 지원주체와의 상품·용역 거래를 통하여 지원객체와 비계열회사 간 거래 또는 다른 경쟁사업자들의 거래와 비교하여 상품·용역의 내용·품질 등 거래조건이 유사함에도 높은 매출 총이익률을 나타내는 경우



## 1. 공정거래법 해설

### 1.5. 부당지원행위 규제

#### 1.5.1. 부당한 지원 행위의 금지

- 지원 행위의 구체적 기준 및 지원금액 산정원칙
  - 상품 용역을 거래한 경우 - 상당한 규모에 의한 거래행위
    - 지원주체가 지원객체와 상품·용역을 상당한 규모로 제공 또는 거래하는 행위를 통하여 과도한 경제상 이익을 제공하는 것은 지원 행위에 해당
    - 상당한 규모의 거래로 인하여 과도한 경제상 이익을 제공한 것인지 여부는 지원성 거래규모 및 급부와 반대급부의 차이, 지원 행위로 인한 경제상 이익, 지원기간, 지원횟수, 지원시기, 지원 행위 당시 지원객체가 처한 경제적 상황, 지원객체가 속한 시장의 구조와 특성, 여타 경쟁사업자의 경쟁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체적·개별적으로 판단
  - 부당한 상품, 용역 거래 구체적 예시

❖ 지원주체가 지원객체에게 각종 물류업무를 비경쟁적인 사업양수도 또는 수의계약의 방식을 통하여 유리한 조건으로 대부분 몰아주는 경우

- 인력을 제공한 경우
  - 지원주체가 지원객체와 인력을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는 대가보다 상당히 낮거나 높은 대가로 제공 또는 거래하는 행위를 통하여 과도한 경제상 이익을 제공하는 것은 지원 행위에 해당. 또한 지원주체가 지원객체와 인력을 상당한 규모로 제공 또는 거래하는 행위를 통하여 과도한 경제상 이익을 제공하는 것은 지원 행위에 해당.
  - 인력 지원 행위 중 전자의 경우에는 지원객체가 지원주체 또는 해당 인력에 대하여 지급하는 일체의 급여·수당 등이 해당 인력이 근로제공의 대가로서 지원주체와 지원객체로부터 지급받는 일체의 급여·수당 등보다 상당히 적은 때에 성립

#### - 부당한 인력 제공 구체적 예시

- ❖ 업무지원을 위해 인력을 제공한 후 인건비는 지원주체가 부담하는 경우
- ❖ 인력파견계약을 체결하고 인력을 제공하면서 지원주체가 퇴직충당금 등 인건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미회수하는 경우
- ❖ 지원객체의 업무를 전적으로 수행하는 인력을 지원주체 회사의 고문 등으로 위촉하여 지원주체가 수당이나 급여를 지급하는 경우
- ❖ 지원주체가 자신의 인력을 지원객체에 전적·파견시키고 급여의 일부를 대신 부담하는 경우



## 1. 공정거래법 해설

### 1.5. 부당지원행위 규제

#### 1.5.1. 부당한 지원 행위의 금지

- 지원 행위의 구체적 기준 및 지원금액 산정원칙

- 거래단계를 추가하거나 거쳐서 거래한 경우

- 지원주체가 다른 사업자와 상품이나 용역을 거래하면 상당히 유리함에도 불구하고 거래상 역할이 없거나 미미한 지원객체를 거래단계에 추가하거나 거쳐서 거래하는 행위를 통하여 과도한 경제상 이익을 제공하는 것은 지원 행위에 해당

- 또한 거래상 지원객체의 역할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역할에 비하여 과도한 대가를 지원객체에게 지급하는 행위를 통하여 과도한 경제상 이익을 제공하는 것도 지원 행위에 해당

- 구체적 예시

- ❖ 통상적인 직거래관행 및 기존의 거래형태와 달리, 지원객체를 통해 제품을 간접적으로 구매하면서 실제 거래에 있어 지원객체의 역할을 지원주체가 수행하거나 지원주체와 지원객체의 역할이 중복되는 등 지원객체가 거래에 있어 실질적인 역할을 하지 않는 경우

- ❖ 지원주체가 직접 공급사로부터 제품을 구매하는 것이 상당히 유리함에도 불구하고 거래상 실질적인 역할이 없는 지원객체를 중간 유통단계로 하여 간접 구매하는 경우

- ❖ 지원주체가 자신에게 제품을 납품하는 회사로 하여금 제품생산에 필요한 중간재를 거래상 실질적인 역할이 없는 지원객체를 거쳐 구매하도록 하는 경우



## 1. 공정거래법 해설

### 1.5. 부당지원행위 규제

#### 1.5.2. 부당한 지원 행위의 판단

##### ■ 부당성의 판단기준

##### - 부당성 판단의 기본 원칙

- 지원 행위에 대한 부당성은 원칙적으로 지원주체와 지원객체의 관계, 지원 행위의 목적과 의도, 지원객체가 속한 시장의 구조와 특성, 지원성 거래규모와 지원 행위로 인한 경제상 이익, 지원기간, 지원횟수, 지원시기, 지원 행위 당시 지원객체의 경제적 상황, 중소기업 및 여타 경쟁사업자의 경쟁능력과 경쟁여건의 변화정도, 지원 행위 전후의 지원객체의 시장점유율 추이 및 신용등급의 변화정도, 시장개방의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해당 지원 행위로 인하여 지원객체가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속한 시장에서 경쟁이 저해되거나 경제력 집중이 야기되는 등으로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
- 이러한 지원 행위의 부당성은 공정한 거래질서라는 관점에서 판단되어야 하며, 지원 행위에 단순한 사업경영상의 필요 또는 거래상의 합리성 내지 필요성이 있다는 사유만으로는 부당성이 부정되지 않음
- 사업자가 아닌 특수관계인에 대한 지원 행위의 부당성은 특수관계인이 해당 지원 행위로 얻은 경제상 급부를 계열회사 등에 투자하는 등으로 인하여 지원객체가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속한 시장에서 경쟁이 저해되거나 경제력 집중이 야기되는 등으로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
-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는 공정한 거래를 저해하는 효과가 실제로 구체적인 형태로 나타나는 경우 뿐만 아니라 나타날 가능성이 큰 경우를 의미하며, 현재는 그 효과가 없거나 미미하더라도 미래에 발생할 가능성이 큰 경우를 포함

#### 부당한 지원 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 지원객체가 해당 지원 행위로 인하여 일정한 거래분야에 있어서 유력한 사업자의 지위를 형성·유지 또는 강화할 우려가 있는 경우
- ✓ 중소기업들이 합하여 1/2 이상의 시장점유율을 갖는 시장에 참여하는 계열회사에 대해 동일 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들이 정당한 이유없이 자금·자산·상품·용역·인력 지원 행위를 하여 해당 계열회사가 시장점유율 5% 이상이 되거나 시장점유율 기준 3위 이내 사업자에 들어가게 되는 경우



## 1. 공정거래법 해설

### 1.5. 부당지원행위 규제

#### 1.5.2. 부당한 지원 행위의 판단

##### 부당한 지원 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 지원객체가 속하는 일정한 거래분야에 있어서 해당 지원 행위로 인하여 경쟁사업자가 배제될 우려가 있는 경우
  - ✓ 지원객체가 지원받은 경제상 이익으로 해당 상품 또는 용역의 가격을 경쟁사업자보다 상당 기간 낮게 설정하여 경쟁사업자가 해당 시장에서 탈락할 우려가 있는 경우
  - ✓ 기업집단 내 계열사 간 거래가 이루어지는 분야에서 기업집단 외부의 경쟁사업자(잠재적 경쟁사업자 포함)가 진입하기 힘들어 지원주체의 지원 행위로 지원객체가 자신의 경쟁력과 무관 하게 별다른 위험부담 없이 안정적인 사업활동을 영위함으로써 사업기반이 공고하게 되는 반면, 해당 기업집단 외부의 다른 경쟁사업자들은 지원주체와 같은 대형 거래처와 거래 기회가 봉쇄되는 경우
  
- 지원객체가 해당 지원 행위로 인해 경쟁자에 비하여 경쟁조건이 상당히 유리하게 되는 경우
  - ✓ 지원객체가 해당 지원 행위로 인하여 자금력, 기술력, 판매력, 제품이미지 개선 등 사업능력이 증대되어 사업활동을 영위함에 있어서 경쟁사업자에 비하여 유리하게 되는 경우
  - ✓ 지원주체의 지원 행위를 통해 지원객체가 사업기반을 강화 시킴과 동시에 재무상태를 안정적으로 유지·강화하게 되는 경우
  
- 지원객체가 속하는 일정한 거래분야에 있어서 해당 지원 행위로 인하여 지원객체의 퇴출이나 타 사업자의 신규진입이 저해되는 경우
  - ✓ 대규모기업집단 소속회사가 자기의 계열회사에 대하여 지원 행위를 함으로써 해당 계열회사가 속하는 일정한 거래분야에 있어서 신규진입이나 퇴출이 어려워지게 되는 경우
  
- 불공정한 방법, 경쟁수단, 절차 통해 지원 행위가 이루어지고, 해당 지원 행위로 인하여 공정한 거래가 저해될 우려가 있는 경우
  - ✓ 증권회사가 「유가증권인수업무규정」상 계열증권사의 회사채인수 금지규정을 면탈하기 위해 다른 증권사를 주간사회사로 내세우고 자신은 하인수회사가 되어 수수료를 받는 방법으로 경제상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다른 증권회사와의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저해한 경우



## 1. 공정거래법 해설

### 1.5. 부당지원행위 규제

#### 1.5.3. 부당한 지원 행위 제재

##### 시정명령

- 공정위는 해당 사업자들에게 부당지원행위의 중지, 시정명령 받은 사실 공표, 기타 시정을 위한 필요한 조치를 부과할 수 있음

##### 과징금

- 당해 사업자의 직전 3개 사업연도의 평균매출액의 100분의 5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과징금 부과 가능
- 매출액이 없는 경우 등에는 20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과징금을 부과

##### 형사처벌

- 공정위의 고발에 의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음
- 시정조치 등에 응하지 않은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5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고,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해서도 처벌 가능(양벌규정)



## 1. 공정거래법 해설

### 1.5. 부당지원행위 규제

#### 1.5.4. 부당한 지원 행위 사례

#### 와인 판매 자회사에 대한 롯데칠성(주)의 부당지원 사건('21. 4. 8.)

- 법 위반 사항: **舊 공정거래법 제23조 제1항 제7호·제2항 '부당지원 제공 및 수령 행위 금지'**
  - ✓ 롯데칠성(주)는 자신이 수입한 와인을 자회사 MJA를 통해 백화점에서 판매하고 있었음
  - ✓ 자회사 MJA가 자본잠식상태에 빠지자, 롯데칠성은 MJA 손익 개선 및 백화점 판매 채널의 지속적인 유지를 위해 다음과 같이 MJA에 총 35억원의 경제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공·지원

#### 롯데칠성의 부당지원 행위 상세

지원 행위	내용
와인 저가 공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MJA에 대한 와인 공급가 할인율을 타 거래처보다 높게 책정</li> </ul>
판촉사원 비용 부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MJA의 와인 판촉사원 비용(용역업체 용역비)을 롯데칠성이 부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롯데칠성이 직접 용역업체와 용역계약 체결하는 방식으로 지원</li> <li>※ 롯데 내부감사에서도 자회사 부당지원으로 지적된 사항</li> </ul> </li> </ul>
모회사 인력 제공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롯데칠성 직원들이 MJA의 핵심 업무(소매 관련 기획·영업 등)를 담당</li> <li>• MJA는 위 인력 제공에 대한 대가를 롯데칠성에 지급하지 않음</li> </ul>

※ 위 부당지원 행위의 결과로, MJA는 자본잠식상태에서 벗어나 시장에서 자신의 경쟁상 지위를 부당하게 형성·유지

- (제재) ① 시정명령: 향후 금지명령(3개 지원 행위), 행위 중지 명령(인력제공 限)**  
**② 과징금 총 11.85억원(롯데칠성 7.07억/MJA 4.78억) 부과**  
**③ 법인 고발: 롯데칠성(주)**



## 1. 공정거래법 해설

### 1.5. 부당지원행위 규제

#### 1.5.4. 부당한 지원 행위 사례

#### SK텔레콤의 구(舊) 로엔엔터테인먼트 부당지원 사건('21. 7.14.)

- 법 위반 사항: 舊 공정거래법 제23조 제1항 제7호 '타 사업자에 대한 부당한 지원 행위 금지'
- ✓ SK텔레콤(이하 'SK')은 '09. 1. 자사 음원 사업부문인 '멜론'을 당시 영업상 어려움을 겪고 있던 자회사 로엔엔터테인먼트(이하 '로엔')에 양도.
- ✓ '멜론' 운영주체가 SK에서 분리됨에 따라, 로엔은 타 음원사업자와 같이 이통사인 휴대폰 결제 청구 수납대행 계약을 체결.
- ✓ SK는 로엔의 '09년 청구수납대행 수수료율을 타 음원사업자와 유사한 5.5%로 적용했으나, '10~'11년에 이를 합리적 이유 없이 1.1%로 인하하여 로엔으로부터 지급 받아야 할 금액 52억원 가량을 미수취. 이후, 로엔의 1위 사업자 지위가 공고화 되자, SK는 수수료율을 '09년과 같은 5.5%로 재인상하여 지원 행위를 종료
- ❖ 한편, SK는 이러한 행위가 부당지원 행위 해당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내 부적으로 인식하고 있었음

#### 【SK 내부자료 발췌】

“SKT가 전략적으로 로엔의 경쟁력 강화 차원으로 지원”, “공정거래법상 계열사 부당지원 Risk에 노출”, “SKT 경영감사 지적 사항에 따른 공정거래 리스크 제거”, “공정위의 발견 가능성 및 법적 Risk가 대단히 높음” 등

**(제재) SK에 시정명령(향후 금지 명령)**



## 1. 공정거래법 해설

### 1.5. 부당지원행위 규제

#### 1.5.4. 부당한 지원 행위 사례

#### 하림그룹의 계열사 부당지원 사건('21.10.27.)

- 법 위반 사항: 舊 공정거래법 제23조 제1항 제7호 '부당지원 행위 및 통행세 거래', 제23조의2 '총수 일가에 대한 부당한 이익 제공(사익편취) 금지'

- ✓ 하림그룹 총수, 경영권 승계 위해 계열사 "올품"\* 지분 100%를 2세에 증여. 이후, 하림 계열사들은 총수와 그룹본부 개입 하에 물품 고가매입, 통행세 거래, 주식 저가 매각 행위를 통해 올품에 과다한 경제적 이익을 제공

1) 舊 한국섬벤판매(주)('13년에 舊 올품 흡수합병 후 올품으로 사명 변경). 하림그룹 지배구조 정점에 위치.

#### ❖ 지원 내용

##### \* 고가 매입 행위

- ✓ 국내 최대 양돈용 동물 약품 수요자인 계열 양돈농장들의 동물 약품 구매방식을 종전 계열농장 각자 구매에서 올품을 통해서만 통합구매하는 것으로 변경  
→ 계열사들은 약 4년간 동물 약품을 높은 가격으로 구매

##### \* 통행세 거래

- ✓ 계열 사료 회사들의 기능성 사료첨가제 구매방식을 종전의 각 사별 구매에서 올품을 통해 통합 구매하는 것으로 변경  
→ 5년간 거래상 역할이 사실상 없는 올품이 구매 대금의 약 3%를 중간마진으로 수취

##### \* 주식 저가 매각

- ✓ 하림지주(舊 제일홀딩스(주))는 '13년에 본인 보유 舊 올품 주식 100%를 한국섬벤판매(現 올품)에 낮은 가격으로 매각  
→ 舊 올품 주식 저가 매각으로 인해 올품에 약 27억원 부당지원

**(제재) (주)올품 및 8개 계열사 과징금 총 48.88억원 부과**



## 1. 공정거래법 해설

### 1.5. 부당지원행위 규제

#### 1.5.3. 부당한 지원 행위 사례

#### (주)SYS리테일[舊 (주)전자랜드]에 대한 부당지원 사건('21.12. 1.)

- 법 위반행위: 舊 공정거래법 제23조 제1항 제7호 가목, 제23조 제2항 '부당지원 행위'

✓ 기업집단 '고려제강' 소속 (주)SYS홀딩스는 계열사 (주)SYS리테일이 장기간 저리로 대규모 자금을 차입할 수 있도록 지원함

- 1) (주)SYS리테일은 담보 부족으로 인하여 은행으로부터 대출거래가 어려워지자, 계열사 (주)SYS홀딩스에 자금차입을 위한 부동산 담보제공을 요청
- 2) 이에 (주)SYS홀딩스는 (주)SYS리테일이 은행으로부터 500억원의 운영자금을 차입할 수 있도록 자신이 보유한 부동산 자산 30건('20년 기준 담보물 평가액 약 3,616억원)을 아무런 대가를 지급받지 않고 은행에 담보로 제공
- 3) 그 결과, (주)SYS리테일은 은행으로부터 약 6,595억원의 대규모 자금을 11년 이상 총 195회에 걸쳐 저리(1%~6.15%)로 차입하여 상품 매입 및 회사운영에 사용

#### <부당지원 행위 상세>

거래명	지원 기간	적용 법조	비고
전체 대출	'09.12.~'21.11.	舊 공정거래법 제23조 ①항 7호	지원 주체
신한은행 500억원 대출(650억 담보)	'14.5.~'18.9.	舊 공정거래법 제23조 ②항	지원 객체
신한은행 200억원 대출(260억 담보)	'14.12.~'18.9.		
신한은행 700억원 대출(910억 담보)	'18.9.~'21.11.		
그 외 대출	'15.2.~'21.11.		

- 제재

1) (시정명령) 행위중지명령, 재발방지명령, 교육이수명령

2) (과징금) 총 23.68억원(잠정): (주)SYS홀딩스(7.45억원), (주)SYS리테일(16.2억원)



## 1. 공정거래법 해설

### 1.5. 부당지원행위 규제

#### 1.5.5. 부당지원 행위 FAQ

##### Q1

- 부당지원 행위는 계열사 간의 거래에만 성립하는지?

##### A1

- ✓ 공정거래법의 부당지원 행위 금지 규정은 '사업자는 부당하게 **특수관계인 또는 다른 회사를 지원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음
- ✓ 따라서, 공정거래법의 부당지원 행위 금지 규정은 계열사간 거래 뿐만 아니라 계열사 외 제3자와 거래 시 해당 제3자와 당사와의 관계에서도 적용  
예) 당사 계열사가 아닌 역할 없는 제3자를 거래 단계에 추가하여 거래  
→ '역할 없는 통행세 거래'로 공정거래법 위반에 해당

##### Q2

- 모회사와 완전자회사간에도 부당지원 행위가 성립하는지?

##### A2

- ✓ A회사가 B회사 주식 100%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즉 모회사와 완전 자회사 간 거래라 하더라도 양자는 법률적으로 별개인 독립한 거래주체이므로 모회사가 현저히 유리한 조건 등 거래를 통해 자회사에게 경제상 이익을 제공하고 그로 인해 자회사가 속한 관련 시장에서 공정 거래 저해 우려가 있는 경우 부당지원 행위에 해당함
- ✓ 대법원은 2004.11.12. 선고2001두2034 판결에서 모회사와 완전 자회사 사이의 지원 행위도 부당지원 행위 규율대상이 된다고 판시한 바 있음



## 1. 공정거래법 해설

### 1.5. 부당지원행위 규제

#### 1.5.5. 부당지원 행위 FAQ

##### Q3

- 용역 대가를 변제기 이후에 회수하지 않는 경우에도 부당지원 행위에 해당 되는지?

##### A3

- ✓ 부당지원 행위란 반드시 어떠한 지원이 직접적, 적극적으로 제공하는 방식 (작위)으로 이루어져야 하는 것은 아님
- ✓ 사업자가 어떠한 행위를 하여야 하나, 이를 하지 않거나 방임(부작위)함으로써 계열사 등의 상대방 사업자에 부당한 이익이 제공되는 결과가 초래되었다면, 그러한 부작위 행위도 공정거래법상 금지되는 부당지원 행위라 할 수 있음
- ✓ 예로, 자금지원 의도로 자산/용역 등 거래로 인한 대가인 자금을 변제기 이후에도 회수하지 않아 지원 객체가 그 자금을 운용토록 함으로써 상대방이 그 이자 상당액의 금융상 이익을 얻게 하는 것과 같은 부작위 행위도 충분히 부당 자금지원 행위 해당 가능

##### Q4

- 계열사 거래 시 수의계약 방식으로 거래하면 부당지원 행위가 되는지?

##### A4

- ✓ 수의계약방식으로 계열사에게 발주한 사실만으로 부당지원 행위가 성립되는 것은 아님
- ✓ 수의계약에 의한 거래가 부당지원으로 성립하려면 다음과 같은 요건이 충족되어야 함
  - 1) 지원 객체에게 경제상이익이 제공된 부분이 있어야 함
    - 수의계약에 따른 급부와 반대급부와의 차이가 있어야 함
    - 예) 경쟁입찰에 의한 낙찰율과 수의계약에 의한 낙찰율 차이가 현저한 경우
  - 2) 당해 지원 행위가 공정한 거래를 저해하거나 저해할 우려가 있어야 함(부당성)
    - 공익 목적의 수의계약인 경우는 부당성이 없다고 보고 있음
    - 부당성 판단은 지원 주체·객체간 관계, 지원 행위의 목적과 의도, 지원 객체가 속한 시장의 구조와 특성, 지원성 거래규모와 지원 행위로 인한 경제상 이익 및 지원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함



## 1. 공정거래법 해설

### 1.6.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금지

#### 1.6.1.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의 금지 개요

##### ▪ 요건

##### - 제공주체 및 객체

- 이익제공당시에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가 그 회사의 특수관계인 또는 특수관계인 회사에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에 적용
- 특수관계인인 회사는 동일인이 단독으로 또는 동일인의 친족(친족이 수인인 경우 수인의 친족의 지분을 모두 합산)과 합하여 지분을 20% 이상 보유한 국내 계열회사와, 해당 계열회사가 단독으로 지분을 50% 초과 보유한 국내 계열회사를 포함
- 지분보유비율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주식의 종류 및 의결권 제한 여부를 불문하고 계열회사가 발행한 모든 주식을 기준으로 계산. 단, 여기서의 지분이란 직접 보유한 지분만을 의미하되, 지분의 보유 여부는 법 제10조에 따라 소유 명의와 관계없이 실질적인 소유관계가 기준

##### - 이익제공행위

- 제공행위는 제공주체와 제공객체 사이의 행위를 통하여 이루어짐
- 제공행위는 제공주체와 제공객체 사이에서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이루어질 수 있음. 따라서 제공주체와 제공객체 사이의 직접적이고 현실적인 상품거래나 자금거래행위라는 형식을 회피하기 위한 방편으로 제3자를 매개로 하여 상품거래나 자금거래행위가 이루어지고 그로 인하여 특수관계인에게 실질적으로 경제상 이익이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귀속되는 경우 제3자를 매개로 한 간접거래도 이익제공행위의 범위에 포함

· 다음의 경우에 이익제공행위로 볼 수 있음

- ❖ 제공주체가 제3자 발행의 기업어음을 매입하고 그 제3자로 하여금 제공주체의 매입행위와 동일 또는 유사한 시점에 그 매출금액의 범위 내에서 제공객체 발행의 기업어음을 제공객체에게 상당히 유리한 조건으로 매입하도록 함으로써 제3자를 매개로 하여 우회적으로 제공객체에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
- ❖ 제공주체가 제3자인 은행에 정기예금을 예치한 다음 이를 다시 제공객체에 대한 대출금의 담보로 제공함으로써 제공객체로 하여금 은행으로부터 낮은 이자율로 금원을 대출받도록 경제상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
- ❖ 제공객체가 발행한 전환사채에 관하여 제공주체가 제3자인 대주단에 제공주체 소유의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고 위 전환사채에 관하여 대주단과 총 수익스왑(TRS, Total Return Swap) 계약을 체결하여 대주단으로 하여금 금위 전환사채를 인수하도록 함으로써 우회적으로 경제상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



## 1. 공정거래법 해설

### 1.6.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금지

#### 1.6.2.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의 판단

##### ■ 유형별 구체적 판단 기준

##### - 상당히 유리한 조건의 거래

- (의의) 정상 거래에서 적용되는 대가보다 사회통념이나 거래관념상 일반인의 인식의 범위를 넘어서는 유리한 조건의 거래. 현저히 유리한 정도에 미치지 못하여도 상당히 유리한 조건에는 해당할 수 있음
- (판단기준) 제공주체가 직접 제공객체와 상당히 유리한 조건의 거래를 하는 경우는 물론이고, 제공주체가 제3자를 매개하여 제공객체와 상당히 유리한 조건의 거래를 하고 그로 인하여 특수관계인에게 부당한 이익이 귀속되는 경우에도 부당한 이익제공행위에 해당

상당히 유리한 조건인지 여부는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의 차이는 물론 거래규모와 이익제공행위로 인한 경제상 이익, 제공기간, 제공횟수, 제공시기, 제공행위 당시 제공객체가 처한 경제적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체적·개별적으로 판단함

##### - 상당히 유리한 조건의 자금 거래

- (의의) 상당히 유리한 조건의 자금 거래는 제공주체가 제공객체와 가지급금 또는 대여금 등 자금을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는 대가보다 상당히 낮거나 높은 대가로 제공하거나 거래하는 행위를 말함
- (부당한 이익 제공행위로서의 자금거래의 종류) 상당히 유리한 조건의 자금 거래는 제공주체가 제공객체의 금융상 편의를 위하여 직접 또는 간접으로 자금을 이용할 수 있도록 경제상 이익을 제공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하며, 다음의 행위가 부당 이익 제공행위에 해당할 수 있음

- ❖ 제공주체가 제공객체의 금융회사로부터의 차입금리보다 저금리로 자금 대여
- ❖ 계열금융회사에게 콜자금을 시중 콜금리보다 저금리로 대여한 경우
- ❖ 계열투자신탁사가 고객 신탁재산으로 제공객체에게 저금리의 콜자금 등 제공
- ❖ 상품·용역거래와 무관하게 선급 명목으로 제공객체에 무이자·저금리로 자금 제공
- ❖ 계열금융회사가 특수관계가 없는 독립된 자의 예탁금에 적용하는 금리보다 낮은 금리로 계열금융회사에 자금을 예치
- ❖ 단체 퇴직보험을 금융회사에 예치하고 이를 담보로 제공객체에 저금리로 대출
- ❖ 계열금융회사가 제공객체에게 대여한 대여금의 약정 연체이자율을 적용하지 않고 일반 대출이자율을 적용하여 연체이자를 수령한 경우
- ❖ 보유 중인 제공객체 발행주식 배당금을 정당 사유없이 미수령 또는 수령을 게을리한 경우
- ❖ 제공객체 소유 부동산에 대해 장기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및 중도금을 지급한 뒤 잔금지급전 계약을 파기하여 계약금 및 중도금 상당액을 변칙 제공한 경우



## 1. 공정거래법 해설

### 1.6.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금지

#### 1.6.2.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의 판단

- 유형별 구체적 판단 기준

- 상당히 유리한 조건의 자금 거래

- (개별 정상금리 계산) 상당히 유리한 조건의 자금 거래는 실제 적용된 금리가 해당 자금 거래와 시기, 종류, 규모, 기간, 신용상태 등의 면에서 유사한 상황에서 해당 제공객체와 그와 특수관계 없는 독립된 금융기관간에 제공주체의 이익제공 없이 자금 거래가 이루어졌다면 적용될 금리 보다 낮거나 높은 경우에 성립

- (개별 정상금리 판단 기준) 개별정상금리는 원칙적으로 아래의 방법으로 산출한 금리 중 순차적으로 우선 산출가능한 금리를 말함

- ❖ 제공객체가 제공받은 방법과 동일한 수단을 통해 동일한 시점에 독립적인 방법으로 차입한 금리
- ❖ 제공객체가 제공을 받은 방법과 동일한 수단을 통해 유사한 시점에 독립적인 방법으로 차입한 금리. 여기서 유사한 시점이란 사안별로 이익제공 규모, 제공시점의 금리변동의 속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되, 해당일 직전·직후 또는 전후의 3개월 이내의 기간을 말한다. 다만, 유사한 시점에 독립적인 방법으로 차입한 금리는 없으나 그 이전에 변동금리 조건으로 차입한 자금이 있는 경우에는 제공받은 시점에 제공객체에게 적용되고 있는 그 변동금리를 유사한 시점에 차입한 금리로 본다.
- ❖ 신용평가기관에 의한 신용등급 등에 비추어 신용상태가 제공객체와 유사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회사가 해당방법과 동일한 수단을 이용하여 동일한 시점에 독립적인 방법으로 차입한 금리
- ❖ 제공객체가 제공받은 방법과 유사한 수단을 통해 동일 또는 유사한 시점에 독립적인 방법으로 차입한 금리. 여기서 유사한 수단이란 사안별로 차입기간, 금액, 장단기 금리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유사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수단을 말한다.
- ❖ 제공객체가 동일 또는 유사한 시점에 다른 수단으로 차입한 경우에는 그 금리



## 1. 공정거래법 해설

### 1.6.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금지

#### 1.6.2.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의 판단

▪ 유형별 구체적 판단 기준

– 상당히 유리한 조건의 자산·상품·용역 거래

- (의의) 상당히 유리한 조건의 자산·상품·용역 거래는 제공주체가 제공객체와 부동산·유가증권·무체재산권 등 자산 또는 상품·용역을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는 대가보다 상당히 낮거나 높은 대가로 제공하거나 거래하는 행위
- (예시) 상당히 유리한 조건의 자산·상품·용역 거래의 예시는 다음과 같음

- ❖ 제공객체에 공장·매장·사무실을 무상 또는 낮은 임대료로 임대한 경우[부동산 저가임대]
- ❖ 제공객체로부터 부동산을 임차하면서 고가의 임차료를 지급한 경우[부동산 고가임차]
- ❖ 부동산을 시가에 비하여 저가로 제공객체에 매도하거나, 고가로 제공객체로부터 매수한 경우[부동산 저가매도 또는 부동산 고가매수]
- ❖ 제공객체 발행 어음을 비계열사 매입 할인율보다 낮은 할인율로 매입[기업어음 고가매입]
- ❖ 제공객체의 신용등급에 적용되는 할인율보다 낮은 할인율을 적용하여 발행한 기업어음을 매입한 경우[기업어음 고가매입]
- ❖ 역외펀드를 이용하여 제공객체가 발행한 주식을 고가로 매입하거나 기업어음 등을 저금리로 매입한 경우[기업어음 또는 주식 고가매입]
- ❖ 계열투자신탁운용회사가 고객의 신탁재산으로 제공객체의 기업어음이나 회사채를 저금리로 매입한 경우[기업어음 또는 회사채 고가매입]
- ❖ 금융회사의 특정금전신탁에 가입하고 동 금융회사는 동 자금을 이용하여 제공객체가 발행한 기업어음 또는 사모사채를 저금리로 인수한 경우[기업어음 또는 사모사채 고가매입]
- ❖ 특수관계가 없는 독립된 자가 인수하지 않을 정도의 낮은 금리수준으로 발행된 후순위사채를 제공주체가 인수한 경우[후순위사채 고가매입]
- ❖ 제3자 배정 또는 실권주(失權株) 인수 등의 방식을 통해 유상증자에 참여하면서 특수관계가 없는 독립된 자가 인수하지 않을 정도의 고가로 발행한 주식을 지분을 전혀 보유하고 있지 않던 제공주체가 인수한 경우[주식 고가매입]
- ❖ 통상적인 직거래관행이나 기존의 거래형태와 달리 제공객체를 통해 상품을 간접적으로 구매하면서 실제 거래에 있어 제공객체의 역할을 제공주체가 수행하거나 제공주체와 역할이 중복되는 등 제공객체가 거래에 있어 실질적인 역할을 하지 않는 경우 [통행세 거래]
- ❖ 전환권행사가 불가능할 정도로 전환가격이 높고 상당히 낮은 이자율로 발행된 전환사채를 제공주체가 직접 또는 제3자를 이용하여 우회 인수한 경우[전환사채의 고가매입]
- ❖ 계열회사가 단독으로 또는 제공객체와 공동으로 연구개발한 결과를 제공객체에 무상양도하여 제공객체가 특허출원을 할 수 있도록 한 경우[무체재산권 무상양도]



## 1. 공정거래법 해설

### 1.6.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금지

#### 1.6.2.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의 판단

- 유형별 구체적 판단 기준

- 상당히 유리한 조건의 자산·상품·용역 거래

- (판단기준) 상당히 유리한 조건의 자산·상품·용역 거래는 실제 거래가격이 해당 자산·상품·용역 거래와 시기, 종류, 규모, 기간 등이 동일 또는 유사한 상황에서 특수관계가 없는 독립된 자 간에 이루어졌다면 형성되었을 거래가격에 비하여 낮거나 높은 경우에 성립

- (정상가격 산출방법) 해당 거래와 시기, 종류, 규모, 기간 등이 동일한 상황에서 특수관계가 없는 독립된 자 간에 실제 거래한 사례가 있는 경우 그 거래가격을 정상가격으로 한다.

\* 해당 거래와 동일한 실제사례를 찾을 수 없는 경우

- ① 먼저 해당 거래와 비교하기에 적합한 유사한 사례를 선정하고

- ② 그 사례와 해당 이익제공행위 사이에 가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거래조건 등의 차이가 존재하는지를 살펴,

- ③ 그 차이가 있다면 이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과정을 거쳐 정상가격을 추단

\* 해당 거래와 비교하기에 적합한 유사한 사례도 찾을 수 없는 경우

부득이 통상의 거래 당사자가 거래 당시의 일반적인 경제 및 경영상황 등을 고려하여 보편적으로 선택하였으리라고 보이는 현실적인 가격을 규명함으로써 정상가격을 추단

이 경우 자산·상품·용역의 종류, 규모, 거래상황 등을 참작하여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조(정상가격의 산출방법) 및 동법 시행령 제2장(국외특수관계인과의 거래에 대한 과세조정) 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장(재산의 평가) 및 동법 시행령 제4장(재산의 평가)에서 정하는 방법을 준용가능

다만, 사업자가 자산·상품·용역거래 과정에서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가격을 산정하였다고 하여 그러한 사정만으로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는 것은 아님



## 1. 공정거래법 해설

### 1.6.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금지

#### 1.6.2.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의 판단

- 유형별 구체적 판단 기준

- 상당히 유리한 조건의 인력 거래

- (의의) 상당히 유리한 조건의 인력 거래는 제공주체가 제공객체와 인력을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는 대가보다 상당히 낮거나 높은 대가로 제공하거나 거래하는 행위를 말함

상당히 유리한 조건의 인력 거래는 제공객체가 제공주체 또는 해당 인력에 대하여 지급하는 일체의 급여·수당등이 해당 인력이 근로제공의 대가로서 제공주체와 제공객체로부터 지급받는 일체의 급여·수당 등보다 적은 때에 성립

- (예시) 다음과 같은 경우 상당히 유리한 조건의 인력거래로 볼 수 있음

- \* 업무지원을 위해 인력을 제공한 후 인건비는 제공주체가 부담한 경우

- \* 인력파견계약을 체결하고 인력을 제공하면서 제공주체가 퇴직충당금 등 인건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미회수한 경우

- \* 제공객체의 업무를 전적으로 수행하는 인력을 제공주체 회사의 고문 등으로 위촉하여 제공주체가 수당이나 급여를 지급한 경우

- (적용 예외) 다음과 같은 경우는 상당히 유리한 조건의 인력거래의 예외로 할 수 있음

- \* 시기, 종류, 규모, 기간, 신용상태 등이 유사한 상황에서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와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조건과의 차이가 100분의 7 미만이고, 거래당사자간 해당 연도 거래총액이 50억원(상품·용역의 경우에는 200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상당히 유리한 조건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봄

- \* 적용제외 범위에 해당하려면 거래조건 차이와 거래총액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즉, ① 거래총액은 적으나 정상적인 거래조건과의 차이가 많은 경우 또는 ② 정상적인 거래조건과의 차이는 작으나 거래총액이 많은 경우에는 적용제외 범위에 해당하지 않음

- \* 해당 연도 거래총액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제공주체와 제공객체 간에 이루어진 모든 거래규모를 포함하여 계산하며, 여기서 거래총액이란 제공객체의 매출액 및 매입액을 합산한 금액을 의미함



## 1. 공정거래법 해설

### 1.6.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금지

#### 1.6.2.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의 판단

##### ■ 유형별 구체적 판단 기준

##### - 사업 기회의 제공

· (의의) 사업기회의 제공은 회사가 직접 또는 자신이 지배하고 있는 회사를 통하여 수행할 경우 회사에 상당한 이익이 될 사업기회로서 회사가 수행하고 있거나 수행할 사업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사업기회를 제공하는 행위를 의미

· (판단기준)

\* '상당한 이익이 될 사업기회'

☞ 구체적으로 회사에 '현재 또는 가까운 장래에 상당한 이익이 될 수 있는 사업기회'를 의미

☞ 이때, 현재 또는 가까운 장래에 상당한 이익이 발생할 수 있는지 여부는 원칙적으로 사업기회 제공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

☞ 상당한 이익이 될 사업기회인지 여부는 제공주체인 회사 자신 또는 자신이 지배하는 회사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제공객체에게 보다 더 이익이 될 수 있는지 여부, 제공객체가 해당 사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전문성과 능력을 더 잘 갖추고 있다는 등의 사정은 원칙적으로 상당한 이익의 판단과 직접 관련되는 요소가 아님

☞ 또한 사후적으로 많은 영업이익을 낼 것이라는 합리적 예측이 가능한 경우에는 상당한 이익이 될 사업기회에 해당할 수 있음

\* '현재 수행하고 있는 사업기회'

☞ 사업기회 제공 당시 실제 회사가 수행하여 수익을 일으키고 있는 사업뿐만 아니라, 회사가 사업 개시를 결정하고 이를 위해 설비 투자 등 준비행위를 하고 있는 사업이 포함

☞ '수행할 사업'이라 함은 사업수행 여부에 대해 외부적 행위를 하지 않았더라도 내부적 검토 내지는 내부적 의사결정이 이루어진 사업을 포함

\* '회사가 수행하고 있거나 수행할 사업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사업기회'

☞ 제공주체 자신 또는 자신이 지배하는 회사의 본래 사업과의 유사성, 본래 사업 수행과정에서 필연적으로 수반되는 업무인지 여부, 본래 사업과 전·후방으로 연관관계에 있는 사업인지 여부, 회사재산의 공동사용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

☞ 이 때 사업기회를 제공받은 회사의 사업과의 관련성은 원칙적으로 그 기준이 되지 아니하며 또한, 회사가 이미 수행하고 있는 사업도 "회사가 수행하고 있거나 수행할 사업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사업기회"에 해당

· (적용제외) 회사가 해당 사업기회를 수행할 능력이 없는 경우, 회사가 사업기회 제공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지급받은 경우, 그 밖에 회사가 합리적인 사유로 사업기회를 거부한 경우 등



## 1. 공정거래법 해설

### 1.6.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금지

#### 1.6.2.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의 판단

##### ■ 유형별 구체적 판단 기준

##### - 합리적 고려나 비교 없는 상당한 규모의 거래

· (의의) 거래상대방 선정 및 계약체결 과정에서 사업능력, 재무상태, 신용도, 기술력, 품질, 가격, 거래규모, 거래시기 또는 거래조건 등 해당 거래의 의사결정에 필요한 정보를 충분히 수집·조사하고, 이를 객관적·합리적으로 검토하거나 다른 사업자와 비교·평가하는 등 해당 거래의 특성상 통상적으로 이루어지거나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되는 거래상대방의 적합한 선정과정 없이 상당한 규모로 거래하는 행위

· (판단기준)

\* 원칙적으로 시장조사 등을 통해 시장참여자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고, 주요 시장참여자로부터 제안서를 제출받는 등 거래조건을 비교하여, 합리적 사유에 따라 거래상대방을 선정하는 과정을 거친 경우에는 합리적 고려나 비교가 있었던 것으로 봄

\* 경쟁입찰 거친 경우는 원칙적으로 합리적 고려·비교가 있는 것으로 봄. 그러나 형식적으로는 입찰절차를 거쳤지만 애초에 특정 계열회사만 충족할 수 있는 조건을 제시한 경우, 시장참여자들에게 입찰과 관련된 정보를 제대로 알리지 않은 경우, 낙찰자 선정사유가 불합리한 경우 등 실질적으로 경쟁입찰로 볼 수 없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 함

\* 수의계약을 체결한 경우라도 사전에 시장참여자에 대한 조사를 거쳐 다수의 사업자로 부터 실질적인 내용이 담긴 제안서를 제출받고(복수의 계열회사로부터만 제안서를 제출받은 경우는 제외) 그에 대한 검토보고서 등을 작성한 뒤 통상적인 결재절차를 거쳐서 합리적 사유에 따라 수의계약 당사자가 선정되었다는 점 등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경우는 합리적 고려·비교가 있는 것으로 봄

· (거래총액 및 거래비중에 따른 적용제외)

\* 당사자간 상품·용역의 해당 연도 거래총액(2 이상 회사가 동일한 거래상대방과 거래하는 경우는 각 회사 거래금액 합계액)이 200억원 미만이고(거래총액 요건), 거래상대방 평균매출액 100분의 12 미만인 경우(거래비중 요건)는 상당한 규모 미해당 간주

☞ 위 적용제외 범위에 해당하려면 거래총액 요건과 거래비중 요건 모두 충족 필요

☞ 거래 총액 요건은 해당 연도 거래총액 계산 시 상호간 전체 상품·용역의 거래 규모를 포함하여 계산. 거래총액이란 제공객체의 매출액 및 매입액을 합산한 금액을 의미

☞ 거래비중 요건은 평균매출액은 매년 직전 3년을 기준으로 산정. 다만, 해당 사업연도 초일 현재 사업을 개시한 지 3년이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개시 후 직전 사업연도 말일까지의 매출액을 연평균 매출액으로 환산한 금액을, 해당 사업연도에 사업을 개시한 경우에는 사업개시일부부터 위반행위일까지의 매출액을 연매출액으로 환산한 금액을 평균매출액으로 봄



## 1. 공정거래법 해설

### 1.6.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금지

#### 1.6.3.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의 금지 적용 제외

- 효율성·보안성·긴급성에 따른 적용제외
  - 합리적 고려나 비교 없는 상당한 규모의 거래에 해당하더라도 효율성 증대, 보안성, 긴급성 등 거래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에는 법 적용이 제외됨
  - 법 적용제외 사유는 거래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에만 인정
  - 또한, 공정거래법 시행령 [별표 4]에서는 효율성 증대, 보안성 또는 긴급성에 따른 법 적용제외 사유에 해당될 수 있는 구체적인 거래의 유형을 열거하고 있는바, 적용제외가 인정되려면 시행령 [별표 4]에서 열거하고 있는 거래의 유형에 해당하여야 함
- 효율성 증대 효과가 있는 거래

#### 거래 예시

- 상품의 규격·품질 등 기술적 특성상 전후방 연관관계에 있는 계열회사 간의 거래로서 해당 상품의 생산에 필요한 부품·소재 등을 공급 또는 구매하는 거래
- 제조 공정에서 상품의 특성상 계열회사의 부품·소재 등을 반드시 사용하여야 하거나, 계열회사로부터 부품·소재 등을 조달 받아야 효율성을 기대할 수 있는 경우
- 회사의 기획·생산·판매 과정에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서비스를 산업연관성이 높은 계열회사로부터 공급받는 거래
- 해당 회사가 판매하는 상품 또는 서비스의 기획, 설계, 구현, 운영 등 단계에서 계열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 또는 용역이 필수적으로 필요한 경우
- 주 사업영역에 대한 역량 집중, 구조조정 등을 위하여 회사의 일부 사업을 전문화된 계열 회사가 전담하는 경우 그 일부 사업과 관련하여 그 계열회사와 하는 거래
- 회사의 상품·서비스 생산 공정을 분할하여 일부 공정에 대해 전문화된 계열사를 신설하고 전문화된 계열회사를 통해 부품·소재 또는 서비스를 공급받는 경우
- 긴밀하고 유기적인 거래관계가 오랜 기간 지속되어 노하우 축적, 업무 이해도 및 숙련도 향상 등 인적·물적으로 협업체계가 이미 구축되어 있는 거래
- 회사의 상품·서비스 생산 공정과 관련하여 계열회사와의 지속적인 거래를 통해 계회사가 일정 역할을 분담하고 있는 경우
- 거래목적상 거래에 필요한 전문 지식 및 인력 보유 현황, 대규모·연속적 사업의 일부로서의 밀접한 연관성 또는 계약이행에 대한 신뢰성 등을 고려하여 계열회사와 하는 거래
- 상품·서비스 생산 공정을 구축 또는 개발한 계열사와 관련 상품·서비스 생산 공정에 관해 지속적으로 거래하는 경우



## 1. 공정거래법 해설

### 1.6.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금지

#### 1.6.3.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의 금지 적용 제외

- 효율성 증대 효과가 있는 거래
  - 이와 동시에 효율성 증대효과에 따른 법 적용제외 사유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다른 자와의 거래로는 달성하기 어려운 비용절감, 판매량 증가, 품질개선 또는 기술개발 등의 효율성 증대효과'가 있음이 명백하게 인정되는 거래여야 함. 이 때 효율성 증대효과는 해당 이익제공행위가 없었더라도 달성할 수 있었을 효율성 증대부분은 미포함
  - '다른 자와의 거래로는 달성하기 어려운 효율성 증대효과가 명백'하다는 것은 경쟁입찰을 하거나 여러 사업자로부터 제안서를 제출받는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않더라도 해당 회사와의 거래에 따른 효율성 증대효과가 다른 자와의 거래로는 달성하기 어렵다는 것이 객관적으로 명백하여 그와 같은 절차를 거치는 것 자체가 비효율을 유발하는 경우를 의미
- 보안성이 요구되는 거래

#### 거래 예시

- 전사적(全社的) 자원관리시스템, 공장, 연구개발시설 또는 통신기반시설 등 필수시설의 구축·운영, 핵심기술의 연구·개발·보유 등과 관련된 경우
  - 새롭게 개발되어 아직 관련 보안기술이 시장에 보급되지 아니한 필수시설·핵심기술의 관리·보관이 필요한 경우
  - 방위산업체로서 군수지원시스템 등을 운영함에 따라 국가안보 관련 비밀정보 취급이 필수적인 상황에서, 비계열회사인 시스템통합업체와 거래할 경우 비밀취급인가 받는 것이 현저히 곤란하거나 비밀정보가 외국 등 외부로 유출될 우려가 있는 경우
  - 거래 과정에서 영업·판매·구매 등과 관련된 기밀 또는 고객의 개인정보 등 핵심적인 경영 정보에 접근 가능한 경우
  - 신상품 개발 및 출시와 관련하여 비계열사를 통한 운송 시 해당 상품의 기술 또는 디자인 등 공개되기 전까지 극비에 붙여야 할 중요 정보가 외부로 유출될 우려가 있는 경우
- 이와 동시에 '다른 자와 거래할 경우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 또는 정보 등이 유출되어 경제적으로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를 초래하거나 초래할 우려'가 있어야 함
  - '경제적으로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금전으로 보상할 수 없는 유무형의 손해로서 금전보상이 불가능하거나 금전보상으로는 충족되기 어려운 현저한 손해를 의미한다.



## 1. 공정거래법 해설

### 1.6.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금지

#### 1.6.3.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의 금지 적용 제외

- 긴급한 사업상의 필요
  - 거래상대방 선정 과정에 합리적 고려·타 사업자와의 비교를 위한 시간적 여유가 없는 상황을 의미
  - 이러한 필요는 통념상 대체 거래선 수배에 소요될 것으로 인정되는 기간 동안 지속되는 것으로 봄

#### 거래 예시

- 단기간에 장애를 복구하여야 하는 경우
- 상품의 성격이나 시장상황에 비추어볼 때 거래 상대방을 선정하는데 상당한 시일이 소요되어 생산, 판매, 기술개발 등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는데 차질이 발생하는 경우 등

#### 1.6.4. 위반 시 제재

#### 시정조치

-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하여 공정위는 당해행위의 중지, 계약조항의 삭제, 시정명령 받은 사실 공표, 기타 시정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음

#### 과징금

- 해당 특수관계인 또는 회사에 대하여 해당 사업자의 직전 3개 사업연도의 평균 매출액 10% 이내, 매출액이 없는 경우 40억원 이내에서 과징금 부과 가능

#### 형사처벌

- 부당지원 행위 또는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 이익제공행위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
- 다른 불공정행위와 마찬가지로 공정거래위원회의 고발이 있어야만 공소 제기 가능



## 1. 공정거래법 해설

### 1.6.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금지

#### 1.6.5.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금지 사례

#### SK(주)의 특수관계인에 대한 사업기회 제공 사건('21.12.22.)

- 법 위반 행위: **舊 공정거래법제23조의2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이익 제공 금지' 위반**

✓ 경과

- ① SK(주), (주)LG가 보유하던 舊 LG 실트론[現, SK실트론]주식 70.6% 매입
- ② 동일인 최태원, SK(주) 월간 회의에서 LG 실트론 잔여 지분29.4% 매각 입찰에 대한 '본인의 직접 입찰 참여' 관련 검토를 지시
- ③ SK(주), LG 실트론 잔여 지분 미인수 방침 발표. 이후 동일인 최태원이 해당 잔여 지분 입찰 참가 후 취득

✓ 공정위 판단

- LG 실트론 잔여 주식 29.4% 취득 기회는 공정거래법상 '사업기회'에 해당
- SK(주)는 합리적인 의사 결정을 거치지 않고 동일인 최태원의 위 잔여 지분 인수 행위를 묵인하고, 합리적인 의사 결정 과정 없이 포기하는 방식으로 '사업기회'를 '특수관계인(동일인)에 제공' 하였음
  - ※ SK(주)는 최태원 개인의 거래임에도 잔여 지분 인수 전 과정에서 본인의 비서실, 재무, 법무 담당 임직원이 해당 거래를 지원토록 하였음
- 따라서, SK(주)/동일인 최태원의 본건 행위는 공정거래법상 금지된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 이익 제공 금지(사익편취)규정 위반에 해당

- **(제재) SK(주), 동일인 최태원에 각각 시정명령 및 과징금 8억원 부과**



## 1. 공정거래법 해설

### 1.6.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금지

#### 1.6.6.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금지 FAQ

##### Q1

- 신제품 광고업무를 신제품 출시 시기에 맞춰 신속히 진행할 필요가 있어 이미 검증된 계열 광고사에 신제품 광고제작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효율성 증대효과에 따른 예외사유로 인정될 수 있는지?

##### A1

- ✓ 반드시 계열사가 아니더라도 업무능력 검증된 외부 회사와 거래하여 필요한 절차를 신속히 진행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면 예외사유로 인정 어려움

##### Q2

- 신제품 출시 이전에는 관련 정보 보안이 중요하기 때문에 신제품 판촉물의 제작 업무를 계열사에 위탁한 경우 보안성에 따른 예외사유로 인정가능한지?

##### A2

- ✓ 외부 업체와 거래하더라도 비밀유지서약서 체결 등의 방법으로 관련 정보의 보안유지가 가능하다면 예외 사유로 인정되기 어려움

##### Q3

- 납품기일이 촉박하여 긴급히 업무절차를 진행할 필요가 있어 계열사에 해당 업무를 위탁한 경우, 긴급성에 따른 예외사유로 인정될 수 있는지?

##### A3

- ✓ 납품기일은 회사 외적인 요인에 의한 긴급한 사업상 필요에는 미해당하므로, 일감몰아주기 예외 사유로 인정되기 어려움



## 1. 공정거래법 해설

### 1.7. 기업결합

#### 1.7.1. 기업결합 제도 개요

##### ■ 의의

- 기업결합이란 2이상의 기업들이 인적, 물적 결합을 통하여 단일한 지배체제가 되는 것을 의미
- 기업결합은 통상적인 기업활동의 일환으로, 기업활동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다는 긍정적인 측면도 있으나, 반면에 기업의 시장지배력 확대를 위한 수단으로 사용될 수 있고, 시장구조의 변동을 초래하여 시장을 경쟁제한적으로 변모시킬 우려도 있음
- 이에 공정거래법은 일정 규모 이상의 기업결합이 있는 경우 공정위에 의무적으로 신고하도록 하고, 공정위가 그 기업결합의 경쟁제한성을 심사하여 그 허용여부를 판단하도록 하고 있음

##### ■ 제한유형

- 다른 회사의 주식의 취득 또는 소유
- 임원 또는 종업원에 의한 다른 회사의 임원지위의 겸임
- 다른 회사와의 합병
- 다른 회사의 영업의 전부 또는 주요부분의 양수임·차 또는 경영의 수임이나 다른 회사의 영업용 고정 자산의 전부 또는 주요부분의 양수
- 새로운 회사설립에의 참여. 다만, 특수관계인 외의 자는 참여하지 아니하는 경우와 분할에 의한 회사설립에 참여는 제외

##### ■ 경쟁제한성 있는 기업결합으로 추정하는 경우

- 기업결합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일정 거래분야의 경쟁을 실질 제한하는 것으로 추정

(1) 시장점유율의 합계(계열회사 시장점유율 합산. 아래 세 요건 모두 충족 필요)

① 시장지배적사업자 추정요건(1개 사업자 50%이상, 3개이하 사업자 75%이상)에 해당할 것

② 해당 거래분야에서 1위일 것

③ 1위와 2위의 시장점유율과의 차이가 그 시장점유율의 합계의 25%이상일 것

(2) 대규모 회사(자산총액 또는 매출액의 규모가 2조원 이상인 회사. 아래 두 요건 모두 충족 필요)

①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의 시장점유율이 2/3이상인 거래분야에서의 기업결합일 것

② 해당 기업결합으로 인하여 5%이상의 시장점유율을 가지게 될 것



## 1. 공정거래법 해설

### 1.7. 기업결합

#### 1.7.2. 기업결합 제한의 예외

##### ▪ 내용

- 다음의 경우에는 기업결합 제한규정을 적용하지 않음(공정거래법 제9조 제2항)

(1) 당해 기업결합 외 방법으로 달성하기 어려운 효율성 증대효과가 경쟁 제한의 폐해보다 큰 경우

(2) 상당기간 대차대조표상 자본총계가 납입자본금보다 작은상태에 있는 등 회생이 불가능한 회사와의 기업결합으로서,

① 기업결합을 하지 않는 경우 생산설비등 자산이 당해 시장에서 활용되기 어려운 경우

② 당해 기업결합보다 경쟁제한성이 적은 다른 기업결합이 이루어지기 어려운 경우

#### 1.7.3. 기업결합의 신고

##### ▪ 신고대상인 회사

- 신고 의무 발생기준은 기업결합을 하는 회사들의 규모를 기반으로 하는 것과 거래금액을 기반으로 하는 것 두가지가 존재

- 회사 규모 기반 기준

자산총액 또는 매출액의 규모(계열회사 합산)가 3천억원 이상인 회사 또는 특수관계인이 자산총액 또는 매출액이 300억원 이상의 다른 회사에 대하여 기업결합을 하는 경우에 공정위에 신고 필요

신고회사와 그 상대방 중 어느 한 회사라도 그 규모 미충족 시 신고의무 부담하지 않음

- 거래금액 기반 기준

기업결합의 대가로 지급 또는 출자하는 가치의 총액이 6천억원 이상이면서, 직전 3년간 국내시장 에서 월간 100만명 이상에게 상품이나 용역을 판매 또는 제공한 적이 있거나,

직전 3년간 국내 연구 개발시설을 임차하거나 연구 인력을 활용하여 왔으며, 관련예산이 연간 300억원 이상인 적이 있는 경우 공정위에 신고 필요



## 1. 공정거래법 해설

### 1.7. 기업결합

#### 1.7.4. 심사기준에 따른 기업결합 신고의 종류

##### ■ 간이 심사대상 기업결합

- 기업결합 당사자가 서로 특수관계인인 경우
- 당해 기업결합으로 당사회사(취득회사 및 피취득회사)간에 지배관계가 형성되지 아니하는 경우
- 대규모회사가 아닌 자가 혼합형 회사결합을 하는 경우
- 경영목적이 아닌 단순투자활동임이 명백한 경우
  - 사모투자전문회사(기업인수증권투자회사 제외)의 설립에 참여하는 경우
  - 유동화 전문회사를 기업 결합한 경우
  - 기타 특정 사업의 추진만을 위한 목적으로 설립되어 당해 사업 종료와 함께 청산되는 특수목적 회사를 기업 결합한 경우

##### ■ 일반심사대상 기업결합 : 간이심사대상 기업결합 이외에 회사간 결합하는 경우

#### 1.7.5. 기업결합 신고 기한

##### ■ 내용

- 사후 신고 원칙: 원칙적으로 사후신고. 기업결합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 필요
- 예외적 사전 신고 의무
 

기업결합 당사자 중 1개 이상의 회사가 대규모회사인 경우와 거래금액을 기준으로 신고를 하는 경우, 신고자는 계약체결일등 시행령이 정하는 날로부터 기업 결합일 까지 미리 신고 필요
- 기업결합일: 아래의 일자를 의미
  - 주권교부일(주권교부시), 주식대금지급일(주권미발행시)
  - 주식대금 납입기일 익일(신중상 취득 시, 회사설립 참여시), 주총임원선임 결의일(임원 겸임시)
  - 영업양수대금 지급완료일(영업 양수시)
  - 영업양수 계약체결일로부터 90일이 경과한 날(계약체결일로부터 90일 경과하여 대금 지급시)
  - 합병등기일(합병 시)



## 1. 공정거래법 해설

### 1.7. 기업결합

#### 1.7.6. 임의적 사전 심사 요청

▪ 내용

- 신고기간 전이라도 기업결합이 실질적으로 경쟁제한행위에 해당하는지에 대해 공정위에 심사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심사결과를 30일 내(90일까지 연장 가능)에 통지

#### ❖ 기업결합 신고 관련 사항 요약표

구분	신고 의무자	기업결합 유형	신고시기
사후 신고	대규모 회사 외의 자	주식취득	주권교부일등으로부터 30일
		합병	합병등기일로부터 30일
		영업양수	대금지불 완료일로부터 30일
		회사신설참여	주금 납입일 다음날부터 30일
	대규모 회사	임원겸임	결합되는 회사의 주주총회에서 선임이 의결된 날로부터 30일
사전 신고	대규모 회사	주식취득, 합병, 영업양수	계약일 완료 후 이행 완료 전
		회사 신설 참여	주총 의결일 이후 이행 완료 전



## 1. 공정거래법 해설

### 1.7. 기업결합

#### 1.7.7. 위반 시 제재

##### 시정조치

- 당해 행위의 중지, 주식의 전부 또는 일부의 처분, 임원의 사임, 영업의 양도,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 경쟁제한의 폐해를 방지할 수 있는 영업방식 또는 영업범위의 제한, 기타 범위반상태의 시정을 위한 조치 명령
- 회사 합병, 설립조항 위반시 공정위는 합병 무효 또는 설립 무효의 소 제기 가능
- 주식처분명령을 받은 경우 그 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당해 주식에 대하여 의결권 행사 불가

##### 이행 강제금

- 시정조치를 받은 후,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않는 자에 대하여 시정조치에서 정한 기간의 다음날부터 이행시까지의 기간에 대해, 매1일당 아래 금액의 0.03%의 범위에서 이행강제금을 부과 가능 (단, 임원겸임 위반시에는 1일당 200만원이내에서 이행강제금을 부과)
  - ✓ 주식소유위반 : 소유주식의 장부가액과 인수하는 채무의 합계액
  - ✓ 합병위반 : 합병대가로 교부하는 주식의 장부가액과 인수하는 채무의 합계액
  - ✓ 영업양수 위반 : 영업양수 금액
- 이행강제금은 부과일로부터 30일 내에 납부 의무

##### 형사 처벌

- 해당 기업결합에 대한 공정위의 시정조치를 따르지 않는 경우 2년 이하 징역 또는 1억5천만원 이하의 벌금
- 양벌규정에 따라 법인도 그 대표자 등과 함께 처벌
- 원칙적으로 공정거래위원회이 고발이 있어야만 공소 제기 가능

##### 과태료

- 신고를 하지 않거나 허위로 신고한 경우, 이행 행위 금지의무를 위반한 경우 사업자에 대하여 1억원 이하, 임직원 기타 이해관계인에 대하여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가능



## 1. 공정거래법 해설

### 1.7. 기업결합

#### 1.7.8. 기업결합 사례

#### KT스카이라이프의 현대HCN 기업결합 조건부 승인 건('21. 8.24.)

- 개요
  - ✓ 공정위의 위성방송사업자인 케이티스카이라이프(KTSKY)의 현대에이치씨엔(HCN) 주식취득 건 등 심의 결과, 2개 시장에서 경쟁을 제한한다고 판단하여 이를 조건부 승인
- 경쟁 제한성 판단
  - ✓ 10개 관련 시장 중 디지털유료방송, 8VSB방송 2개 시장에서 결합으로 인해 경쟁제한성 있는 것으로 판단
  - \* 판단 사유: 결합으로 인한 시장 점유율 상승, 요금인상 경쟁 압력 약화 등
- **(제재) 서울 관악구·동작구, 부산 동래구·연제구 등 8개 방송구역 디지털 유료방송시장 및 8VSB 유료방송시장 경쟁제한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시정조치를 부과**  
**(이행기간: '24.12.31. 까지)**

#### < 주요 시정조치 내용 >

- ① 케이블TV 수신료의 물가상승률 초과 인상 금지,
- ② 단체가입 수신계약 체결거부해지 금지,
- ③ 전체 채널수 및 소비자 선호채널 임의감축 금지,
- ④ 신규가입전환가입시 불이익조건 부과행위 금지,
- ⑤ 수신계약 연장·전환 거부 금지,
- ⑥ 고가형 상품전환 강요 금지,
- ⑦ 채널구성내역과 수신료 홈페이지 게재·사전고지 의무 등



## 1. 공정거래법 해설

### 1.7. 기업결합

#### 1.7.9. 기업결합 FAQ

##### Q1

- 같은 기업집단의 계열사 A, B, C는 A사가 40%, B사가 30%, C사가 30%를 출자하여 신설회사를 설립하려 하고 있음. 이 경우 기업결합 신고대상회사는 누구인가?

##### A1

- ✓ 신설회사 설립의 경우 최다출자자가 되는 경우에 신고함
- ✓ 주식취득 또는 회사설립 참여의 경우 주식의 소유 또는 인수 비율 산정, 최다출자자가 되는지 여부는 당해 회사 특수관계인 소유 주식을 합산하여 판단
- ✓ 질문의 경우 B사와 C사가 계열사 관계에 있어 60% 지분을 가진 최다 출자자가 되고 두 회사가 모두 신고의무대상회사가 됨
- ✓ 다만, 기업집단 소속 회사 중 하나를 신고 대리인으로 지정해 신고할 수 있음

##### Q2

- 임원선임권이 발생하였으나, 임원겸임이 아닌 경우 신고의무가 발생하는가?  
(예) 전문경영인을 임원으로 선임시키는 경우)

##### A2

- ✓ 공정거래법은 '임원겸임'에 대해 임직원을 타 회사 등기임원으로 겸임시키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음
- ✓ 즉, 임원선임권의 행사로서 임원을 겸임 시키는 경우에만 신고대상이 되며 임원겸임이 아니면 신고의무가 발생하지 않음



## 1. 공정거래법 해설

### 1.7. 기업결합

#### 1.7.9. 기업결합 FAQ

##### Q3

- A사 직원이 A사의 경영전략과는 무관하게 다른 회사 B사의 이사와 감사로 등재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였는데, 이러한 경우도 기업결합 신고 필요한지?

##### A3

- ✓ 공정거래법은 자산총액 또는 매출액 2조원 이상인 회사에 소속된 임원이나 직원이 타 회사 임원을 겸임하는 경우 기업결합신고를 하도록 하고 있음
- ✓ 이 경우 지배관계를 떠나 임원겸임행위가 있으면 신고하여야 하며, 직원의 자의에 의한 것이든 회사의 결정에 의한 것이든 등기 임원으로 등기되는 경우는 신고의무가 발생
- ✓ 단, 직원의 개인적인 겸임 등으로 회사가 이를 몰랐다는 사정이 있는 등 기업결합심사 면탈의 고의가 없음이 인정되는 경우 과태료 부과 시 참작사유로서 고려는 가능



## 1. 공정거래법 해설

### 1.8. 시장지배적지위 남용 금지

#### 1.8.1. 시장지배적지위 남용의 의의 및 금지 유형

- 의의
  - 시장지배적사업자: 일정한 거래 분야에서 단독으로 또는 다른 사업자와 함께 상품이나 용역의 가격·수량·품질, 기타의 거래조건을 결정·유지 또는 변경할 수 있는 시장 지위를 가진 사업자
  - 1개 사업자의 시장점유율이 50% 이상이거나, 3개 이하 사업자의 시장점유율 합계가 75%이상인 경우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추정됨. 다만,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판단은 시장점유율 기준 이외에도 진입장벽의 존재 및 정도, 경쟁사업자의 상대적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함
  - 금지 유형: 공정거래법 제5조, 시행령 제9조에 규정

#### ▶ 공정거래법 제5조, 시행령 제9조

- ① **가격남용**: 정당한 이유없이 상품의 가격이나 용역의 대가를 수급의 변동이나 공급에 필요한 비용의 변동에 비하여 현저하게 상승시키거나 근소하게 하락시키는 행위
- ② **출고조절**: 정당한 이유없이 최근의 추세에 비추어 상품 또는 용역의 공급량을 현저히 감소시키거나, 유통단계에서 공급이 부족함에도 상품 또는 용역의 공급량을 감소시키는 행위
- ③ **사업활동방해**: 구매, 생산, 판매, 재무, 인사활동 등을 통하여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에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간섭하여 사업활동을 어렵게 하는 행위
  - 다른 사업자의 생산에 필요한 원재료 구매 방해, 정당한 이유 없이 다른 사업자의 상품 또는 용역의 생산·공급·판매에 필수적인 설비의 사용을 거절 또는 중단 등
- ④ **진입제한**: 신규 사업자나 기존 사업들의 시장에 대한 자유로운 진입과 퇴출을 방해하는 행위
  - 정당한 이유 없이 거래하는 유통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와 거래하지 못하도록 하는 배타적 거래계약 체결, 정당한 이유 없이 기존 사업자의 계속적인 사업 활동에 필요한 권리 등을 매입하는 행위 등
- ⑤ **경쟁사업자 배제 또는 소비자 이익의 저해**
  - 경쟁사업자 배제: 경쟁사업자를 시장에서 배제시킬 의도로 자신이 공급하는 상품이나 용역의 가격을 통상 거래가격에 비해 현저히 낮은 대가로 공급하거나 높은 대가로 구입하거나, 경쟁사업자와는 거래하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거래
  - 소비자이익 저해: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영업활동이 소비자의 재산 또는 신체상의 제반 이익을 현저히 침해



## 1. 공정거래법 해설

### 1.8. 시장지배적지위 남용 금지

#### 1.8.2. 경쟁제한 효과의 판단기준 및 고려사항

##### 경쟁제한 효과의 판단기준 및 고려사항

###### 가격 상승 또는 산출량 감소

- 일정한 거래분야에 속한 상품·용역 또는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인접시장에 속한 상품·용역의 가격이 상승하거나 산출량이 감소할 우려가 있는지

###### 상품·용역의 다양성 제한

- 시장지배적 사업자가 공급하는 제품과 경쟁관계(잠재적 경쟁관계를 포함한다) 또는 보완관계에 있는 저렴한 상품·용역을 구매할 기회가 제한되는 등 다양한 상품·용역을 구매할 기회가 제한 또는 축소되는지
- 행위로 인해 유력한 경쟁사업자의 수가 감소하는지

###### 경쟁사업자의 비용 상승 효과

- 행위로 인해 경쟁사업자(잠재적 경쟁사업자 포함)의 비용이 상승하거나 또는 상승할 우려가 있는지
- 행위로 인해 경쟁사업자에게 효율적인 유통·공급경로가 차단되거나, 생산·유통에 필요한 적정한 자원확보가 방해되거나 또는 인위적인 진입장벽이 형성되는 등의 사유로 인해 경쟁사업자가 이러한 장애를 극복하는데 상당한 비용과 기간이 소요되는지 여부를 주로 고려

###### 혁신 저해

- 소비자에게 유익한 기술·연구·개발·서비스·품질 등의 혁신 유인을 저해하는지

###### 봉쇄효과

- 경쟁사업자의 시장진입 내지 확대기회가 봉쇄되거나 또는 봉쇄될 우려가 있는지
- 봉쇄효과의 크기를 고려함에 있어서는, 당해 행위로 특정 시점에서 경쟁사업자의 접근이 차단 또는 곤란해진 정도와 함께, 당해 봉쇄효과가 경쟁사업자(잠재적 경쟁사업자를 포함한다)의 성장 및 신규진입에 미칠 중요성, 시장점유율 변화 추이, 다른 사업자와 거래시 평판에 미칠 영향 등 동태적 측면을 종합적으로 고려



## 1. 공정거래법 해설

### 1.8. 시장지배적지위 남용 금지

#### 1.8.3.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금지 규정 위반 시의 제재

##### 시정명령

- 공정위는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가 있는 경우 그 시장지배적사업자에게 가격의 인하, 해당 행위의 중지,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 또는 그 밖에 필요한 시정조치를 명할 수 있음

##### 과징금

- 공정위는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를 한 사업자에 대해 그 사업자가 위반기간 동안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판매한 관련상품이나 용역의 매출액 또는 이에 준하는 금액의 6%의 과징금을 부과
- 매출액이 없거나 매출액 산정이 곤란한 경우에는 20억원 이내에서 과징금 부과

##### 형사처벌

-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를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
- 공정위 시정조치등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5천만원 이하의 벌금



## 1. 공정거래법 해설

### 1.8. 시장지배적지위 남용 금지

#### 1.8.4. 시장지배적지위 남용 사례

#### 구글LLC 등의 시장지배적지위 남용 사건('21. 12. 30.)

✓ **문제된 행위:** 구글LLC 및 그 자회사들은 안드로이드 기기 제조사와 구글 모바일 서비스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하면서 아래 조건을 부과하여 안드로이드 OS 파편화 금지 의무 및 호환성 확보 의무를 부과하였음

- 안드로이드 OS 파편화를 초래할 수 있는 일체의 행위 금지
- 안드로이드 호환 가능 기기만 제조, 유통, 판매하도록 제한
- 안드로이드 기기 제조사가 개발, 배포, 판매하는 모든 안드로이드 기반 소프트웨어는 안드로이드 호환 가능 기기에서 작동하게 설계하도록 제한
- 제3자에 대한 안드로이드 기반 소프트웨어 개발 키트(SDK) 배포, 판매 및 제3자의 SDK 개발, 홍보에 대한 관여 제한
- 제3자에게 어떠한 응용프로그램 개발 인터페이스(API)도 배포, 판매하지 못하도록 제한
- 제조, 유통, 판매하는 기기에 제3자 애플리케이션이 작동하지 못하도록 할 의무 부과
- 앱마켓 등 안드로이드 기반 소프트웨어 애플리케이션에 대한 접근을 지원하는 배포점을 설치하지 못하도록 제한

✓ **적용 법조:** 구 공정거래법 제3조의2 제1항 제3호(사업활동 방해)

**(제재) 시정명령, 기기 제조사에 대한 시정명령 내용 통지의무 및 계약 수정의무, 과징금 2,250억 원 부과**



## 1. 공정거래법 해설

### 1.8. 시장지배적지위 남용 금지

#### 1.8.4. 시장지배적지위 남용 사례

##### 네이버(주)[쇼핑 부문]의 시장지배적지위 남용 사건('21. 1. 27.)

- ✓ **문제된 행위:** 네이버(주)는 네이버의 비교쇼핑서비스 검색결과에서 네이버의 오픈마켓서비스를 이용하는 사업자의 상품이 상위에 노출되기 유리하도록 검색 알고리즘을 설계하고 적용하였음
- ✓ **적용 법조:** 구 공정거래법 제3조의2 제1항 제3호(사업활동 방해)

**(제재) 시정명령, 과징금 266억 원 부과**

##### 네이버(주)[부동산 부문]의 시장지배적지위 남용 사건('21. 1. 20.)

- ✓ **문제된 행위:** 네이버(주)는 부동산정보업체가 네이버에 제공한 '확인매물정보' 및 '매물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못하도록 하는 조건으로 부동산정보업체와 거래하였음
- ✓ **적용 법조:** 구 공정거래법 제3조의2 제1항 제3호(사업활동 방해)

**(제재) 시정명령, 시정명령을 받았다는 사실의 거래상대방에 대한 통지, 과징금 10억 원 부과**

##### 가스트랑스포르(GTT)의 시장지배적지위 남용 사건('20. 12. 2.)

- ✓ **문제된 행위:**
  - GTT는 멤브레인형 LNG 화물창 건조를 위한 엔지니어링 서비스를 끼워팔기 하는 조건, 조선업체가 GTT 특허권의 유효성을 다툰 경우 라이선스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조건으로 조선업체에게 LNG 화물창 기술을 라이선스하였음
- ✓ **적용 법조:** 구 공정거래법 제3조의2 제1항 제3호(사업활동 방해), 공정거래법 제23조 제1항 제3호

**(제재) 시정명령, 조선업체가 원하는 경우 기존 계약을 시정명령에 부합하도록 수정해줄 의무 부과, 시정명령을 받았다는 사실의 거래상대방에 대한 통지, 과징금 126억 원 부과**



## 2. 하도급법 해설

### 2.1. 하도급법 개요

#### 2.1.1. 기본 사항

##### ■ 의의

##### - 하도급법상 하도급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제조, 수리, 건설, 용역 등을 위탁하거나 원사업자가 다른 사업자로부터 위탁받은 것을 수급사업자에게 다시 위탁한 경우, 그 위탁을 받은 수급사업자가 위탁받은 것을 제조·수리·시공하거나 용역수행하여 원사업자에게 납품·인도 또는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행위를 의미

- 하도급법은 그 명칭과는 달리 일반적으로 흔히 말하는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간의 하도급 관계뿐만 아니라 원도급 관계에서도 적용(대법원 2003. 5. 16. 선고 2001다27470판결).

##### ■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의 정의

##### - 원사업자

대기업 또는 중소기업자 중 수급업자보다 연간매출액 등이 더 많고, 하도급법 시행령 제2조 제4항의 연간매출액 이하가 아닌 기업을 의미

##### - 수급사업자

원사업자로부터 제조 등을 위탁 받은 중소기업자 등을 의미하며, 중소기업자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중소기업 및 「중소기업협동조합법」상 중소기업협동조합을 의미

중견기업도 수급사업자에 해당될 수 있으나, 이 경우 하도급대금의 지급·보복행위 금지 규정 등 하도급법의 일부 규정만 적용

##### ■ 하도급법상 위탁의 유형

##### - 제조위탁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에게 물품(그 반제품, 부품, 부속품, 원재료 및 이러한 제조에 사용되는 금형을 포함)의 규격, 품질, 성능, 형상, 디자인, 브랜드 등을 지정하여 제조(가공 포함)를 의뢰하는 경우를 말함. 단, 다음의 경우에는 제외

- 자가 소비용의 단순한 일반사무용품의 구매
- 물품의 생산을 위한 기계·설비등을 단순히 제조위탁하는 경우
- 위탁 받은 목적물을 제3자에게 제조위탁하지 않고 단순구매하여 납품하는 경우



## 2. 하도급법 해설

### 2.1. 하도급법 개요

#### ▪ 하도급법상 위탁의 유형

##### - 수리위탁

사업자가 주문을 받아 물품을 수리하는 것을 업으로 하거나 자기가 사용하는 물품을 수리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경우에 그 수리행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사업자에게 위탁하는 것

##### - 건설위탁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설업자가 그 업에 따른 건설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건설업자에게 위탁하는 것을 말함

1.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7호에 따른 건설사업자(경미한 공사 포함)
2. 「전기공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사업자(경미한 공사 포함)
3. 「정보통신공사업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업자
4. 「소방시설공사업법」 제4조제1항에 따라 소방시설공사업의 등록을 한 자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

\*\* 「주택법」 제4조에 따른 등록사업자,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5조에 따른 등록업자, 「하수도법」 제51조 및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따른 등록업자,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37조에 따른 등록업자, 「도시가스사업법」 제12조에 따른 시공사,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35조에 따른 시공사

##### - 용역위탁

정보성과물의 작성 또는 역무의 공급을 업으로 하는 사업자(용역업자)가 그 업에 따른 용역 수행 행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용역업자에게 위탁하는 것을 말함

##### 1) 지식·정보성과물 작성 위탁

정보성과물의 작성을 업으로서 도급을 받은 사업자가 이 정보성과물 작성 행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사업자에게 위탁하는 경우 및 자신이 사용할 정보성과물의 작성을 업으로 하고 있는 경우 이러한 성과물 작성 행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사업자에게 위탁하는 경우를 말함

##### 2) 사업자가 사용할 정보성과물의 작성을 업으로 하고 있는 경우

사업자가 자신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는 정보성과물(사내에서 사용하는 회계용 소프트웨어, 자사의 홈페이지 등)의 작성을 반복적·계속적으로 사회통념상 사업의 수행으로 볼 수 있을 정도로 행하고 있는 경우를 말함

##### 3) 소프트웨어사업을 업으로 하는 경우 수요자의 요구에 의하여 컨설팅, 요구분석, 시스템통합 시험 및 설치, 일정기간 시스템의 운영 및 유지, 보수 등을 다른 사업자에게 위탁하는 것을 말함



## 2. 하도급법 해설

### 2.2. 원사업자의 의무사항(계약 체결 관련)

#### 2.2.1. 서면발급 및 서류 보존 의무

##### ▪ 내용

##### - 서면발급의무

원사업자는 하도급법에서 정한 사항을 기재하고, 양당사자의 서명 또는 기명날인한 서면을 수급업자가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교부하여야 함. 이때 발급의 기준은 양사 기명날인 시점이 됨

##### - 서면의 기재사항

서면에는 위탁일과 수급사업자가 위탁 받은 것의 내용, 목적물 등을 원사업자에게 납품·인도 또는 제공하는 시기 및 장소, 목적물 등의 검사의 방법 및 시기, 하도급대금(선급금, 기성금 및 하도급대금을 조정한 경우에는 그 조정된 금액을 포함)과 그 지급방법 및 지급기일,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목적물 등의 제조·수리·시공 또는 용역수행행위에 필요한 원재료 등을 제공하려는 경우에는 그 원재료 등의 품명·수량·제공일·대가 및 대가의 지급방법과 지급기일, 하도급대금 조정의 요건, 방법 및 절차를 기재하여야 함

##### - 서면의 보존 의무

하도급거래가 완료된 경우, 원사업자는 급부 내용, 하도급대금 등 거래에 관한 기록을 서류로 작성하여 3년간 의무적으로 보존(단, 기술자료 관련 거래 자료는 7년).

보존해야 할 서면은 당해 서면이 발급, 품의 기타 용도에 따라 사용된 시점의 원본 상태로 보존되어야 한다(전자 문서도 동일)

##### - 하도급계약 추정 제도

구두로 발주한 내용에 대해 수급사업자가 확인을 요청하면 원사업자가 인정 여부를 회신하여야 하며 회신이 없는 경우 계약 성립을 추정하는 제도

구두로 작업을 지시 받은 수급사업자는 구두계약의 내용 등을 원사업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 확인을 요청하고 원사업자가 15일 이내에 이를 인정하거나 부인하는 회신을 하지 않는 경우, 당초 통지내용대로 계약이 성립한 것으로 추정(회신에는 반드시 원사업자의 서명 날인 필요)



## 2. 하도급법 해설

### 2.2. 원사업자의 의무사항(계약 체결 관련)

#### 2.2.1. 서면발급 및 서류 보존 의무

**Q 위탁 시점에 하도급계약서 법정기재 사항을 확정하기 곤란한 경우, 해당 내용을 공란으로 두고 계약서 작성해도 되는지?**

- 해당사항이 정하여 지지 아니한 이유와 그 사항을 정하게 되는 예정일을 서면에 기재하여야 함
- 예상수량, 가단가 등 법정 기재사항의 변동 가능성이 있는 경우, 그 사실을 서면에 반드시 명시하고 확정 시 지체없이 그 사항을 적은 새로운 서면을 발급하여야 함

**Q 거래 시작 시 서면계약서 작성 못한 채 구두 협의로 업무 진행 된 경우, 보완조치 방안은?**

- 하도급거래 업무 진행 사실을 알게 된 즉시(가능하다면 작업을 일시 중단하고)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하도급계약서 작성, 교부 하여야 함
- 구두로 위탁이 이루어진 경우에도 수급사업자가 위탁 받은 작업의 내용, 하도급 대금 등 필수 기재사항을 당사에 서면으로 통지하여 위탁 내용의 확인(승인)을 하면 상호 의사합치로 계약 유효하게 성립

→ 구두 협의만으로 업무진행 시에는 서면 미발급 또는 지연발급에 해당하여 경고, 시정 조치 등 처분 받음

#### - 계약 시 주의사항

- ✓ 법정기재사항이 일부, 전부 누락된 서면을 발행한 경우에는 불완전한 서면발행에 해당
- ✓ 제조에 착수한 후에 계약서면을 교부하는 경우에도 하도급법 위반에 해당(서면 지연 교부)
- ✓ 하도급거래 양 당사자의 서명, 기명날인이 없는 서면을 교부한 경우
- ✓ 실제의 하도급거래와 상이한 서면을 발급한 경우에는 허위서면발급에 해당



## 2. 하도급법 해설

### 2.2. 원사업자의 의무사항(계약 체결 관련)

#### 2.2.1. 서면발급 및 서류 보존 의무

- 보존 대상 서면 리스트

연번	보존 대상 서면	비고
1	• 하도급계약서(추가·변경계약서 포함)	하도급법 제3조
2	• 하도급계약 확인서면	하도급법 제3조 제6항
3	• 목적물 등 수령증명서	하도급법 제8조
4	• 검사결과 통지서	하도급법 제9조
5	• 감액 서면	하도급법 제11조
6	• 기술자료 제공 요구서	하도급법 제12조의3
7	• 계약변경 내역 통지서	하도급법 제16조
8	• 목적물 등의 검사결과, 검사 종료일 등이 기재된 서류	하도급법 시행령 제6조 제1항 제2호
9	• 하도급대금의 지급일, 지급금액 및 지급수단(어음 결제시 어 음의 교부일, 금액 및 만기일 포함)이 기재된 서류	하도급법 시행령 제6조 제1항 제3호
10	• 선급금 및 지연이자, 어음할인료, 어음대체결제수단 수수료 및 지연이자, 관세 등 환급액 및 지연이자를 지급한 경우 그 지급일과 지급금액이 기재된 서류	하도급법 시행령 제6조 제1항 제4호
11	•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목적물 등의 제조 등의 행위에 필요한 원재료 등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하도급 대금에서 공제한 경우에는 그 원재료 등의 내용과 공제일, 공제금액 및 사유를 기재한 서류	하도급법 시행령 제6조 제1항 제5호
12	• 설계변경 등에 따라 하도급대금을 조정한 경우 그 조정 금액 및 사유를 기재한 서류	하도급법 시행령 제6조 제1항 제6호
13	• 원재료 등의 가격변동 등에 따라 수급사업자가 하도급 대금 조정을 신청한 경우, 신청내용 및 협의 내용, 그 조정금액 및 조정사유를 기재한 서류	하도급법 시행령 제6조 제1항 제7호
14	• 입찰명세서, 낙찰자결정품의서, 견적서, 현장설명서, 설계 설명서 등 하도급대금 결정과 관련된 서류	하도급법 시행령 제6조 제 1항 제8호



## 2. 하도급법 해설

### 2.2. 원사업자의 의무사항(계약 체결 관련)

#### 2.2.2. 부당특약의 금지

##### ▪ 내용

##### - 부당특약

하도급 계약조건 중 "수급사업자"(협력업체)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제한하는 계약조건을 의미

"계약조건"은 "하도급 계약서"라고 명기된 서면에 기재된 문구 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님(서면의 명칭, 형태 불문)

- 부당특약은 이를 실행하지 않아도, 그러한 약정의 체결만으로도 처벌 가능하다는 점에 유의

#### ▶ 하도급법 제3조의4

- ①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거나 제한하는 계약조건(이하 "부당한 특약"이라 한다)을 설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약정은 부당한 특약으로 본다.
  1. 원사업자가 제3조제1항의 서면에 기재되지 아니한 사항을 요구함에 따라 발생된 비용을 수급사업자에게 부담시키는 약정
  2. 원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할 민원처리, 산업재해 등과 관련된 비용을 수급사업자에게 부담시키는 약정
  3. 원사업자가 입찰내역에 없는 사항을 요구함에 따라 발생된 비용을 수급사업자에게 부담시키는 약정
  4. 그 밖에 이 법에서 보호하는 수급사업자의 이익을 제한하거나 원사업자에게 부과된 의무를 수급사업자에게 전가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약정



## 2. 하도급법 해설

### 2.2. 원사업자의 의무사항(계약 체결 관련)

#### 2.2.2. 부당특약의 금지

- 서면 미기재 사항 관련 비용을 전가하는 부당특약
  - ✓ 계약 문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과 관련한 비용을 수급사업자에게 부담시키는 약정 금지
  - ✓ 계약서 외 기타 서류에 기재되어 있음을 이유로 해당 업무 비용을 업체에 부담시키는 것도 不可

#### ★ 기타서류 - 예시

현장설명서, 입찰 및 견적 일반조건·특수조건, 설계도면, 시방서, 물량내역서, 유의서, 입찰제안요청서, 계약 일반조건·특수조건, 계약 특약조건, 도급업무내역서, 환경에 관한 협약서, 하자보수에 관한 협약서, 안전관리 및 품질관리에 관한 협약서, 제조물 책임에 관한 협약서, 각서, 확약서, 합의서 등(명칭불문)

- 원사업자가 부담할 비용을 전가하는 부당특약
  - ✓ 원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할 민원처리, 산업재해 등과 관련된 비용을 수급사업자에게 부담시키는 약정 금지. 단, 정당하고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는 제외
    - 예)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근로복지공단 승인을 얻어 관련 보험의 사업주 지위 이전
  - ✓ 단, 정당하고 합리적인 사유가 있더라도, 그에 대한 합당한 비용이 별도로 지불되어야 함

#### ★ 원사업자가 부담할 비용을 전가하는 부당특약 - 예시

<b>민원처리 비용</b>	소음·분진·진동 등으로 인한 환경민원, 용지보상 분쟁 및 이와 유사한 각종 민원에 대한 민·형사상의 분쟁 등을 해결·처리하는데 소요되는 비용
<b>산업재해 관련 비용</b>	수급사업자 소속 근로자가 업무와 관계되는 작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사망, 부상, 질병 등의 재해를 입은 경우 이에 대한 치료비, 보상금, 합의금 등에 소요되는 비용
<b>원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할 비용</b>	법령·거래관행·목적물 특성 등을 고려할 때 원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민원처리, 산업재해 관련 비용 등



## 2. 하도급법 해설

### 2.2. 원사업자의 의무사항(계약 체결 관련)

#### 2.2.2. 부당특약의 금지

- 입찰내역과 무관한 비용을 전가하는 부당특약
  - ✓ 산출내역서: 원사업자가 제공한 자료를 기반으로 수급사업자가 입찰 시 작성, 제출하여 낙찰받은 내역서
  - ✓ 산출내역서 외 다른 서류에 반영한 사항이나 산출내역서에 포괄적으로만 반영한 사항에 대하여 수급사업자에게 업무수행을 요구하고, 이로 인한 비용을 수급사업자에게 부담시켜서는 아니됨.
    - ※ 단, 충분한 자료가 제공되었음에도 수급사업자의 견적누락(단가 미기재 등) 또는 견적 착오(규격·수량·단위 등 오기) 등으로 발생한 비용을 수급사업자에게 부담시킨 경우는 제외
- 하도급법에 규정된 수급사업자 이익을 제한하거나 원사업자에게 부과된 의무를 수급사업자에게 전가하는 부당특약 금지

#### ▶ 하도급법 시행령 제6조의2 제1호

아래의 비용이나 책임을 수급사업자에게 부담시키는 약정은 부당특약에 해당

- 가. 관련 법령에 따라 원사업자의 의무사항으로 되어 있는 인·허가, 환경관리, 품질관리 등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비용
- 나. 원사업자(발주자를 포함)가 설계나 작업내용을 변경함에 따라 발생하는 비용
- 다. 원사업자의 요청에 따른 재작업, 추가작업 또는 보수작업으로 인하여 발생한 비용 중 수급사업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발생한 비용
- 라. 관련 법령, 매출계약 등에 따라 원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할 하자담보책임 또는 손해배상책임
  - \* 예) 원사업자가 직접 수행한 부분의 하자담보 책임까지 수급사업자에게 부담하도록 하는 약정 등



## 2. 하도급법 해설

### 2.2. 원사업자의 의무사항(계약 체결 관련)

#### 2.2.3. 계약 체결에 관한 사항 사례

#### 경남기업(주) 및 태평로건설(주)의 서면지연 교부, 부당특약 설정 사건('22. 3.10.)

- 법위반 사항

- 1) **경남기업(주): 하도급법 제3조서면 발급 의무 및 제3조의 4 부당특약 설정 금지**
  - 공기가 연장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변경계약 서면을 해당 변경 공사의 착공 후 11일~ 47일이 지연된 시점에 발급
  - 부당하게 비용을 수급사업자에 부담시키는 10건의 부당특약을 설정  
 예1) "공사 민원은 업체에서 전적으로 책임진다"  
 예2) "을은 내역서에 없는 사항이라도 갑의 지시에 따라 공사비 증감 없이 시공한다" 등

- 1) **태평로 건설(주) '하도급법 제3조의 4 부당특약 설정 금지'**
  - 부당하게 비용을 수급사업자에 부담시키는 22건의 부당특약을 설정  
 예1) "원 도급사는 기성 지급을 유보할 수 있다"  
 예2) "사고 발생 시 민형사상 책임·제 경비는 수급사업자가 부담 처리한다"

- **(제재) 위 2개사에 재발방지 명령**

- 기타

- 본건 조치는 산재 비용 부담전가를 중심으로 실시한 '21년 건설업 직권조사에 따른 것.
  - ☞ 서면실태조사 결과 하도급법 위반 혐의 다수 업체·중대재해 다수 발생업체, 공공기관 제보 업체 등 25개사 대상 '21. 5. ~ '21. 9. 동안 공정위 직권 현장 조사 실시
- 부당특약 유형 및 건수 등 기준, 상대적으로 위반사항 경미한 17개 업체는 경고 조치



## 2. 하도급법 해설

### 2.2. 원사업자의 의무사항(계약 체결 관련)

#### 2.2.4. 계약 체결에 관한 사항 FAQ

##### Q1

- 수급사업자에게 업무를 지시할 경우, 당사의 도장만이 날인된 발주서를 우선 발급하여 업무를 지시하고 양 당사자 기명날인된 정식 계약 서면은 추후 발급하여도 무관한지?

##### A1

- ✓ 하도급법에 따라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 발급하여야 하는 계약 등 서면의 경우, 양 당사자 기명날인이 완료된 완전한 서면이어야 함
- ✓ 일방 당사자의 인장만이 날인된 발주서를 발급하여 업체에 업무 지시할 경우 하도급법상 사전 서면 교부의무 위반이 되므로 유의
- ✓ 한편, 그러한 "완전한 서면"은 반드시 수급사업자가 하도급 업무에 착수하기 이전에 발급 완료되어야 함

##### Q2

- 어떠한 계약 조건들이 하도급법상 부당특약이 될 수 있는지?

##### A2

- ✓ 하도급법상 부당특약이란, 정당한 사유 없이 부당하게 수급사업자 이익을 침해하거나 제한하는 계약 조건을 말함
- ✓ 이러한 부당특약은 실제로 실행되었는지 여부와는 무관하게 하도급 계약서에 기재되어 있거나 하도급법에 따라 처벌 대상이 됨(첨부 문서 등 포함)
- ✓ 부당특약으로 해석될 수 있는 부당한 계약조건의 예시는 다음과 같음
  - ☞ 계약기간 중 어떠한 사유로도 계약금액 증액 등 하도급대금의 조정 일체 요구불가
  - ☞ 인건비 상승 등 기타 어떠한 경우에도 계약금액 이외 공사비 증액 요구는 불가하고, 이를 이유로 공사지연 및 공사거부행위를 일절 할 수 없음
  - ☞ 발주자 요청에 의한 계약 내용 변경 관련 추가 비용은 수급사업자가 부담
  - ☞ 계약서에 없는 업무라도 전체 시공에 필요한 업무는 계약에 포함된 것으로 봄
  - ☞ 계약금액 5% 미만의 경미한 추가 비용 발생 시 이는 수급사업자가 부담



## 2. 하도급법 해설

### 2.3. 원사업자의 의무사항(대금 결정 등 관련)

#### 2.3.1. 부당한 하도급대금의 결정 금지

##### ▪ 내용

##### - 의의 및 판단기준

- ✓ 원사업자는 부당하게 목적물 등과 같거나 유사한 것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지급되는 대가보다 낮은 수준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 또는 하도급을 받도록 강요할 수 없음
- ✓ 부당한 방법 여부는 가격결정에 필요한 자료 등을 성실히 제공하고 충분히 협의하였는지 여부, 거래관행에 어긋나거나 사회통념상 옳바르지 못한 수단을 사용하였는지 여부, 거래상 지위로 인해 수급사업자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제약했는지 등을 고려하여 판단

#### 부당한 하도급대금의 결정 예시

- 정당한 사유 없이 일률적인 비율로 단가를 인하하여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 일방적으로 일정 금액을 할당한 후 그 금액을 빼고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 정당한 사유 없이 특정 수급사업자를 차별 취급하여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 수급사업자에게 발주량 등 거래조건에 대하여 착오를 일으키게 하거나 다른 사업자 견적 또는 거짓 견적을 제시하는 등 수급사업자를 속이고 이를 이용하여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 원사업자가 일방적으로 낮은 단가에 의하여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 수의계약으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할 때 정당한 사유 없이 법령에서 정하는 직접 공사비 항목의 값을 합한 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 경쟁입찰에 의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할 때 정당한 사유 없이 최저가로 입찰한 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 경쟁입찰에서 최저가로 입찰한 업체 또는 차순위업체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 후 추가협상을 통해 최저입찰가보다 낮게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경우
- 계속적 거래계약에서 원사업자의 경영적자, 판매가격 인하 등 수급사업자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사유로 수급사업자에게 불리하게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 2. 하도급법 해설

### 2.3. 원사업자의 의무사항(대금 결정 등 관련)

#### 2.3.1. 부당한 하도급대금의 결정 금지

**Q 부당한 대금감액 관련하여 CR(Cost Reduction), VE(Value Engineering)이 불가한 지?**

- CR/VE가 그 자체로 위법한 것은 아님
- 다만, 공정개선, 장기거래연장을 통한 비용감가상각 등 정당한 사유로 협력사와의 합의하에 이를 실시한다는 점에 대한 합의서, 협력사가 장기거래 등을 이유로 자발적으로 CR 등을 요청하였다는 점을 소명할 수 있는 이메일이나 공문 등을 구비 할 것

**Q 경쟁입찰 시, 입찰참여에 대한 사전검토를 위해 협력업체에 목표단가 제공가능한 지?**

- 경쟁입찰 공고 단계에서 협력사에 목표단가를 사전에 제공하는 것 자체가 하도급 대금 결정행위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하도급법 위반은 아님
- 다만, 최저 입찰가를 제시한 업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목표단가와 차이가 있다는 이유로 더 낮은 금액으로 최종대금을 결정하는 것은 하도급법 위반에 해당

→ 목표단가 제공 시 단순히 참고용으로 안내하는 것이며 최종 하도급대금은 관련법령 준수하는 범위 내에서 협의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명시하는 것이 좋음

**Q 경쟁입찰 시, 최저 입찰가가 원사업자의 예정가격 초과하는 경우, 1) 재입찰가능한 지, 2) 최저 입찰가 제시한 사업자와 수의계약 진행할 수 있음을 사전고지 후, 예정가격 이 상으로 협의하여 계약체결 가능한지?**

- 1) 사전에 내부적으로 예정가격을 책정하고 최저 입찰가가 예정가격을 초과한 경우, 입찰을 무효로 하거나 재입찰 실시 가능함. 다만, 예정가격 초과시 입찰이 무효로 되거나 재입찰을 실시할 수 있다는 점을 사전에 고지(입찰공고문 등에 기재)하여 입찰 참가자들이 예측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또한, 예정가격을 입찰 당시 밀봉하여 두거나 전자입찰 시 내부품의서를 남겨두는 방법을 통하여 사후적으로 입찰참가자들이 예정가격을 확인할 수 있는 절차 및 증빙자료 확보할 것

→ 예정가격의 정당성 입증을 위해 산정 근거자료 구비 필요

- 2) 사전에 최저 입찰가가 예정가격을 초과하는 경우에 수의계약 진행할 수 있음을 고지 하였다면, 예정가격 이상의 가격으로 협의하는 것은 금지되지 않을 것(예정가격에 대한 근거자료 철저히 구비 필요 있음). 다만, 공정위 부당결정 심사지침에 따르면, 최저가 입찰한 수급사업자에게 다시 대금인하 협상을 하여 최저가 입찰대금보다 낮은 가격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행위를 하도급대금 부당결정의 예시로 정하고 있음. 따라서, 최저 입찰가 제시한 사업자와 대금인하 협상하여 최저입찰가보다 낮은 가격에 계약체결 시탈법 행위로 평가 될 우려가 있음.



## 2. 하도급법 해설

### 2.3. 원사업자의 의무사항(대금 결정 등 관련)

#### 2.3.2. 부당 감액 금지

##### ▪ 내용

##### - 의의 및 판단기준

- ✓ 원사업자는 원칙적으로 하도급대금을 감액할 수 없으며, 예외적으로 정당한 사유를 입증한 때에만 감액할 수 있음
- ✓ 이때 감액의 정당한 사유는 당사자들간의 충분한 협의와 진정한 합의에 의한 것인지에 따라 판단
- ✓ 원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감액한 금액을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이 지난 후에 지급하는 경우, 초과기간에 대하여 공정위가 정하는 지연 이자(15.5%)를 지급하여야 함

#### 부당 감액 행위 예시

- 위탁할 때 하도급대금 감액 조건 등을 명시하지 아니하고 위탁 후 협조요청, 고객의 발주취소, 경제상황의 변동 등 불합리한 이유를 들어 하도급대금을 감액하는 행위
- 수급사업자와 단가 인하에 관한 합의가 성립된 경우 그 합의 성립 전에 위탁한 부분에 대하여도 합의 내용을 소급하여 적용하는 방법으로 하도급대금을 감액하는 행위
- 하도급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하거나 지급기일 전에 지급하는 것을 이유로 하도급대금을 지나치게 감액하는 행위
- 원사업자에 대한 손해발생에 실질적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수급사업자의 과오를 이유로 하도급대금을 감액하는 행위
- 목적물등의 제조·수리·시공 또는 용역수행에 필요한 물품 등을 자기로부터 사게 하거나 자기의 장비 등을 사용하게 한 경우에 적정한 구매대금 또는 적정한 사용대가 이상의 금액을 하도급대금에서 공제하는 행위
- 하도급대금 지급 시점의 물가나 자재가격 등이 납품 등의 시점에 비하여 떨어진 것을 이유로 하도급대금을 감액하는 행위
- 경영적자 또는 판매가격 인하 등 불합리한 이유로 부당하게 하도급대금을 감액하는 행위



## 2. 하도급법 해설

### 2.3. 원사업자의 의무사항(대금 결정 등 관련)

#### 2.3.2. 부당 감액 금지

##### ▪ 구매강제 행위 금지

##### - 의의 및 판단기준

- ✓ 원사업자가 건설 등의 위탁을 하면서 자신이 지정하는 물품이나 장비 등을 구입하게 하거나 사용하도록 강요하는 행위를 말함

#### 구매강제 행위 예시

- 구매·외주담당자 등 하도급거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가 하도급계약 체결 과정에서 구입을 요청하는 경우
- 수급사업자에게 목표량을 할당하여 구입을 요청하거나 불응시 불이익한 취급을 받게 됨을 시사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
- 수급사업자가 구입의사가 없음에도 재차 구입을 요구하거나 수급사업자의 영업행위와 관련이 없는 물품의 구매를 요청하는 경우

##### ▪ 경제적 이익 부당요구 금지

##### - 의의 및 판단기준

- ✓ 원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수급사업자에게 자기 또는 제3자를 위하여 금전, 물품 그 밖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도록 하는 행위를 말함
- ✓ 수급사업자가 원사업자의 경제적 이익제공요구를 수용할 수 밖에 없는 조건을 내세워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행위도 포함하며, '경제적 이익'에는 원사업자가 부담할 비용을 수급사업자에게 전가하는 등의 행위도 포함

#### 경제적 이익 부당요구 예시

- 원사업자 수익 또는 경영여건 악화 등 불합리한 이유로 협찬금, 장려금, 지원금 등 경제적 이익(재물 및 경제적 가치 있는 이익을 포함. 이하 같음)을 요구하는 경우
- 거래 개시, 다량 거래 등을 조건으로 협찬·장려·지원금 등 경제적 이익을 요구하는 경우
- 기타 수급사업자가 부담할 법률상 의무가 없음에도 협찬금 등 경제적 이익을 요구하는 경우



## 2. 하도급법 해설

### 2.3. 원사업자의 의무사항(대금 결정 등 관련)

#### 2.3.3. 설계변경 등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조정

##### ■ 내용

##### - 의의 및 판단기준

- ✓ 원사업자는 제조등의 위탁을 한 후에 다음 각 호의 경우에 모두 해당하는 때에는 그가 발주자로부터 증액받은 계약금액의 내용과 비율에 따라 하도급대금을 증액하여야 함
- ✓ 단,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계약금액을 감액받은 경우에는 그 내용과 비율에 따라 하도급대금을 감액 가능
- ✓ 하도급대금의 감액 또는 증액 시에는 발주자가 해당 수급사업자에게 직접 통지한 경우가 아닌 한, 원사업자는 발주자로부터 계약금액을 증액 또는 감액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발주자로부터 증액 또는 감액받은 사유와 내용을 해당 수급사업자에게 통지 필요
- ✓ 하도급대금의 증액 또는 감액은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계약금액을 증액 또는 감액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하여야 함

#### 구체적인 조정 방법

-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설계변경 등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조정을 받은 경우 추가금액 내용과 비율이 명확한 경우에는 그 내용과 비율에 따라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하고, 내용이 불명확한 경우에는 발주자가 지급한 평균비율을 적용 지급
-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물가변동 등 경제상황의 변동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조정 받은 경우, 하도급계약이 발주자 조정 이전에 체결되었다 하더라도 발주자 조정 기준시점 이후 잔여공사에 대해 수급사업자에게 대금을 조정해준 경우에는 적법한 것으로 봄
- 발주자로부터 조정 받은 기준시점 이후에 체결된 하도급계약분에 대하여는 수급사업자에게 대금을 조정해 주지 않아도 적법함. 다만, 조정기준시점 이전에 이미 선시공 등 사실상 하도급거래가 있었다는 객관적인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상기 첫번째 항에 따라 적용
-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물가변동 관련 추가금액을 지급받고도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간 약정이나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64조(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를 이유로 조정해주지 않은 경우에는 위법
- 물가변동 관련 발주자로부터 조정 받은 추가금액을 수급사업자에게 조정해주는데 있어 물가변동 조정 기준시점 이전에 지급한 선급금은 물가변동 조정대상 금액에서 제외 가능
-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물가변동 등의 이유로 추가금액을 지급받은 때, 일부 공종의 하도급 금액이 원도급금액을 상회한 경우에도 하도급금액을 기준으로 증액필요



## 2. 하도급법 해설

### 2.3. 원사업자의 의무사항(대금 결정 등 관련)

#### 2.3.4. 공급원가 등의 변경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조정 협의 의무

##### ▪ 내용

##### - 조정협의 신청

- ✓ 수급사업자는 제조 등을 위탁받은 후 목적물의 제조 등에 필요한 원재료의 가격이 변동되어 하도급대금의 조정이 불가피한 경우 원사업자에 대금 조정 신청 가능

##### - 조합의 협의개시 요건

- ✓ 아래 요건이 갖추어진 경우, 수급사업자 신청을 받아 중소기업 협동조합도 위와 같은 협의 가능
  - 하도급 계약금액의 10% 이상을 차지하는 원재료의 가격이 하도급 계약일을 기준으로 10% 이상 상승한 경우
  - 하도급계약 체결일을 기준으로 원재료의 가격상승에 따른 변동금액이 나머지 목적물 등에 해당하는 하도급대금의 3%이상인 경우

##### - 조정협의의무의 발생요건 및 의미

- ✓ 납품단가 조정 협의 의무는 '원재료의 가격'이 변동하는 경우에 한하여 인정되며, 인건비 상승, 저가수주로 발생한 적자를 보전하기 위한 이유로는 인정 불가
- ✓ 합의가 성립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 자체는 하도급법위반이 아니지만, 원사업자가 그 조정신청에 성실히 응할 의무를 위배하는 경우에는 하도급법 위반에 해당

#### 정상적인 조정이 아닌 경우

- 조정협의 신청에 응하지 않거나, 개시 이후 회의개최, 의견교환, 단가조정안 제시 등의 실질적인 협의에 참여하지 않는 경우
- 실질적으로 하도급대금의 조정 권한 또는 그에 준하는 책임을 가진 담당자가 협의에 참여하지 않는 경우
- 단가조정을 위한 시장조사, 원가산정 등 객관적인 근거, 합리적인 사유 없이 수급사업자의 신청내용을 계속하여 거부하는 경우
- 정당 사유 없이 또는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근거 없이 하도급대금 조정을 위한 협의일정을 과도하게 지연하는 경우



## 2. 하도급법 해설

### 2.3. 원사업자의 의무사항(대금 결정 등 관련)

#### 2.3.5. 대금 결정 등 관련 사례

#### (주)부영주택의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 사건('21.11.14.)

• 법 위반 사항: 하도급법 제4조 제1항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 금지'

- ✓ (주)부영주택은 '화성향남 B7블럭 부영아파트 신축공사 중 조경식재공사' 등 11건의 공사에서 최저가 경쟁입찰 방식으로 수급사업자를 선정함.
- ✓ 이 과정에서, 최저 입찰가가 자체 실행예산을 초과하지 않는 등의 정당한 사유가 없음에도 재입찰 또는 추가협상을 통해 최저가 입찰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대금 결정.

<하도급대금 결정 예시>

하도급 계약명	계약 체결일	최저 입찰금액(A)	최종 결정금액(B)	인하금액 (A-B)	비 고
□□아파트신축공사중 조경 식재공사 등	'17.2.20.	8.74억	8.6억	0.14억	재입찰 및 추가협상
○○아파트 신축공사 중 조경 식재공사 등	'18.6.11.	27.76억	27.4억	0.36억	재입찰

**(제재) (주)부영주택에 재발방지 명령 및 과징금 1.31억원 부과**



## 2. 하도급법 해설

### 2.3. 원사업자의 의무사항(대금 결정 등 관련)

#### 2.3.5. 대금 결정 등 관련 사례

### 태양금속공업(주)의 부당 감액 및 단가 인하, 어음할인료 등 미지급 사건('21. 9.23.)

• 법 위반 사항: 하도급법 제11조 제1항 '부당감액 금지', 제4조 제2항 '부당한 대금 결정', 제13조 제6항 및 제7항 '어음할인료 등의 지급'

✓ 태양금속공업(주)는 협력업체들로부터 자동차 부품을 수령한 후 매출할인/상생할인 명목으로 하도급대금 약 980만원을 감액하고, 수급사업자들의 납품 단가를 정당 사유 없이 일방적으로 종전 대비 4.5%, 2% 등의 일률적인 비율로 인하

\*\* 종전 단가 대비 인하액 총 1.77억원

✓ 또한, 대금을 어음 등으로 지급하면서 어음 할인료, 수수료 약 500만원을 미지급

**(제재) 태양금속공업(주)에 시정명령 및 과징금 5.3억원 부과, 법인 검찰 고발**



## 2. 하도급법 해설

### 2.3. 원사업자의 의무사항(대금 결정 등 관련)

#### 2.3.5. 대금 결정 등 관련 사례

### 현대산업개발(주)(이하 "HDC")의 하도급대금 조정의무 위반 등 사건 (‘21.12.30.)

#### • 법위반 사항

##### 1) 하도급법 제3조 ‘사전 서면 교부 의무’

- 공사 등 건설·제조 위탁 시 계약 서면을 수급사업자 착공 또는 납품개시 한 후 최소 3일 ~ 최대 413일 지연 발급

##### 2) 하도급법 제 13조 제 8항 ‘어음대체 결제 수수료·하도급대금 지연이자 지급’

- 수급사업자에 하도급대금을 상환기일이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하는 어음대체결제수단으로 지급하면서, 초과기간에 대한 수수료 미지급
-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이 지나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면서, 그 초과 기간에 대한 지연 이자 미지급

##### 3) 하도급법 제 16조 제2항, 제3항 ‘설계 변경 등에 따른 하도급대금 조정 의무’

- 수급사업자에게 발주처로부터 계약금액을 증액받은 사유와 내용을 미통지
- 발주처 증액일로부터 30일을 초과하여 수급사업자와 변경계약 체결

#### • (제재) HDC에 재발 방지 명령 및 과징금 3,000만원 부과



## 2. 하도급법 해설

### 2.3. 원사업자의 의무사항(대금 결정 등 관련)

#### 2.3.5. 대금 결정 등 관련 사례

#### 신태양건설(주)의 부당한 경제적 이익 제공요구 사건('21. 6.30.)

• 법 위반 사항: 하도급법 제12조의2 '정당한 사유 없는 경제적 이익 제공 요구'

- ✓ 신태양건설(주)는 자신이 지분 49.5%를 보유한 오피스텔 분양 시행사를 돕기 위해 관련 하도급업체에 위 시행사로부터 미분양된 7개 상가(약17.3억원)를 분양 받을 것을 요구.
- ✓ 이에 하도급 업체는 상가 매입 의사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신태양건설(주)와의 하도급계약(계약금액 74.5억원) 체결 및 유지를 위해 위 7개 상가를 분양 받음.

**(제재) 신태양건설(주)에 시정명령 및 과징금 1억원 부과**

#### 지안건설(주)의 부당특약 설정, 경제적 이익 부당제공 요구 등 사건('21. 9.23.)

• 법 위반 사항: 하도급법 제3조의4 '부당특약 금지' 및 제12조의2 '경제적 이익 부당 요구'

- ✓ 지안건설(주)는 협력업체에 공사 위탁 시 다음의 불공정 하도급거래 행위를 하였음
  - 1) 부당특약 설정: 하도급계약서와 별개로 공사약정서에 아래의 계약조건 설정
    - ① 공사 중 발생 민원, 발주처 업무 처리 비용을 수급사업자에 부담시키는 약정
    - ② 안전관리 및 사고에 대한 책임과 모든 비용을 수급사업자에 부담시키는 약정
    - ③ 인·허가 등 대관 업무의 모든 책임과 비용을 수급사업자에 부담시키는 약정
  - 2) 경제적 이익 부당 요구
    - 공사비 부족을 이유로 수급사업자로부터 1.2억원 제공 요구 후 수령

**(제재) 지안건설(주)에 재발방지 명령**



## 2. 하도급법 해설

### 2.3. 원사업자의 의무사항(대금 결정 등 관련)

#### 2.3.6. 대금 결정 등 FAQ

##### Q1

- 하도급계약 시점에 따른 물가변동 적용 여부는 어떻게 되는지?

##### A1

- ✓ 물가변동과 관련하여 발주자로부터 대금을 증액받은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 증액을 적용해 주어야 하는 의무 유무 여부는 원칙적으로 하도급계약(위탁)시점을 기준으로 판단
- ✓ 발주자로부터 대금을 조정 받은 조정기준일 이전 체결된 하도급 계약의 경우 발주자로부터 지급받은 내용과 비율에 따라 수급사업자에 대금을 조정해 주어야 할 의무가 있으나, 조정기준일 이후 체결된 하도급계약은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조정할 의무는 없음
- ✓ 단, 계약 지연 등으로 정식 계약은 조정기준일 이후에 체결되었으나, 조정기준일 이전에 이미 선시공 등 사실상 하도급거래가 있었다는 객관적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하도급대금을 조정해 주어야 함

##### Q2

- 하도급계약시 물가변동 적용이 없는 것으로 약정한 경우에도 하도급법 규정에 따라 물가변동 관련 하도급대금을 조정해 주어야 하는 것인지?

##### A2

- ✓ 하도급법은 강행규정이므로, 하도급법 규정과 당사자간 약정의 내용이 상충할 경우 그 약정의 내용과 상관없이 하도급법이 적용됨
- ✓ 하도급법상 물가변동에 따른 하도급대금 조정 사유가 발생한 경우 약정의 내용과 무관하게 원사업자는 물가변동을 수급사업자에게 그 내용과 비율에 따라 증액해 주어야 함
- ✓ 한편, 본건 질의와 같이 하도급 계약에 물가변동 적용은 없는 것으로 약정한 경우 해당 약정은 하도급법상 수급사업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 침해(하도급법에 따른 하도급대금 조정권을 배제하는 약정)하는 부당특약으로 인정 소지 있으므로 유의



## 2. 하도급법 해설

### 2.3. 원사업자의 의무사항(대금 결정 등 관련)

#### 2.3.6. 대금 결정 등 FAQ

##### Q3

- 경쟁입찰을 통하여 수급사업자를 선정 후 수급사업자의 투찰 금액은 변동 없이 세부 하도급 단가를 일률적인 비율로 변경하는 행위가 하도급법에 저촉되는지?

##### A3

- ✓ 투찰금액 변동이 없었다 하여도 합의 등을 이유로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 세부 단가를 일률적으로 변경·결정하는 행위는 추후 세부 공종 단가별로 발주자의 설계변경 및 물가변동, 선급금 지급 등에 따른 추가 금액 반영 등에 있어 수급사업자에 불이익 발생 우려 존재
- ✓ 따라서, 본건 질의의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있어 정당성이 인정 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하도급법상 부당한 하도급대금의 결정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음

##### Q4

- 하도급대금 지급시 특정한 품목의 단가 단위를 절삭(10만원 이하 단위 절삭 등)하여 하도급금액이 일부 감액된 경우 하도급법상 부당 감액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지?

##### A4

- ✓ 하도급법은 원사업자가 제조등의 위탁을 할 때 정한 하도급대금을 감액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 ✓ 위탁할 때 하도급대금을 감액할 조건 등을 명시하지 아니하고 위탁 후 협조 요청 또는 거래 상대방으로부터의 발주취소, 경제상황의 변동 등 불합리한 이유를 들어 하도급대금을 감액하는 행위를 감액금지에 위반되는 부당감액 행위로 규정하고 있음
- ✓ 따라서, 하도급대금 지급시 사전에 명시된 감액조건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특정 단가의 10만원 이하 금액을 절삭하는 행위는 하도급법상 부당한 감액 행위에 해당한다 할 수 있음



## 2. 하도급법 해설

### 2.4. 원사업자의 의무사항(계약 이행 관련)

#### 2.4.1. 부당한 위탁취소의 금지

##### ▪ 내용

##### - 의의

- ✓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제조 등의 위탁을 한 후 수급사업자의 책임으로 돌릴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임의로 제조 등의 위탁을 취소하거나 위탁을 할 때 정한 발주량 또는 사양 등 위탁한 내용을 변경하는 행위를 의미

##### - 부당한 위탁취소 위법성 판단

- ✓ 부당 위탁취소 여부는 수급사업자 책임으로 돌릴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제조 등의 위탁을 임의로 취소·변경한 것인지 여부를 중심으로 판단하되, 위탁계약 체결 및 위탁취소의 경위, 위탁계약의 내용 및 취소한 위탁계약의 범위, 계약이행 상황, 위탁취소의 방법·절차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
- ✓ “수급사업자의 책임으로 돌릴 사유”란 수급사업자 귀책사유로 인해 계약을 이행할 수 없거나 수급사업자가 계약을 위반하여 계약목적 달성을 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함
  - 수급사업자에게 파산·회생절차의 신청 등 경영상의 중대한 사유가 발생하고 그로 인하여 계약내용을 정상적으로 이행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 수급사업자가 감독관청으로부터 영업취소·영업정지 등의 처분을 받은 경우로서 계약내용을 정상적으로 수행할 자격·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 수급사업자가 특별한 이유 없이 목적물 등의 제조·수리·시공 또는 용역의 착수·착공을 거부하여 납품 등의 시기(이하 “납기”라 한다)에 완성·완공할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 수급사업자가 목적물 등의 품질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공정·공법 등을 임의로 변경하는 등 계약의 중요한 내용을 위반하고 그 위반으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
- ✓ “임의로” 위탁을 취소하는 행위는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와 실질적인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위탁을 취소하는 행위를 의미
- ✓ “임의로” 위탁취소 여부는 위탁취소 사유가 해당 하도급 계약서에 규정되어 있고 위탁취소 위 계약의 내용 및 절차에 따라 이루어졌는지, 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간에 실질적인 협의가 있었는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
  - 실질적 협의 여부는 위탁취소 사유 등이 정상 거래관행에 어긋나거나 협의 과정에서 원사업자가 사회통념상 옳바르지 못한 것으로 인정되는 수단·방법을 사용한 것인지 여부 및 협의 과정이 충분했는지 여부 등을 기준으로 판단



## 2. 하도급법 해설

### 2.4. 원사업자의 의무사항(계약 이행 관련)

#### 2.4.1. 부당한 위탁취소의 금지

- 부당한 위탁취소로 볼 수 없는 경우
  - ✓ 수급사업자가 상당기간 공사를 중단하였으나 자발적인 공사재개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고 납기 내 공사 완공 가능성이 없어 위탁을 취소(해지)하는 행위
  - ✓ 다른 사업자의 신형모델 출시로 해당 목적물이 부속되는 제품의 판매부진이 현실화됨에 따라 수급사업자와 충분한 협의를 거쳐 적정한 보상을 하고 위탁을 취소(해지)하는 행위
- 목적물 수령증명서 발급 의무
  - ✓ 원사업자는 목적물의 납품이 있을 때에는 목적물 등에 대한 검사 전이라도 즉시 수령증명서를 발급해야 하며, 건설위탁의 경우에는 검사가 끝난 즉시 목적물을 인수하여야 함

#### 2.4.2. 부당한 수령거부의 금지

##### ■ 내용

- 의의
  - ✓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제조 등의 위탁을 한 후 수급사업자의 책임으로 돌릴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제조 등의 위탁을 할 때 정한 납기 및 장소에서 목적물 등의 납품 등에 대한 수령 또는 인수를 거부하거나 지연하는 행위를 의미
- 위법성 판단기준
  - ✓ “수급사업자의 책임으로 돌릴 사유”란 부당한 위탁취소와 마찬가지로 수급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 또는 수급사업자가 계약내용을 위반하여 계약목적 달성을 할 수 없는 경우 등을 말하며 이를 예시하면 다음과 같음
    - 수급사업자가 일정한 기간이나 계절에 집중적으로 판매되는 목적물의 제조를 충분한 기간을 두고 위탁받았음에도 수급사업자의 사정으로 해당 기간이나 계절을 넘겨 납품하는 경우
    - 수급사업자가 직접 조달한 원재료의 품질불량 등으로 납품 등을 한 목적물 등의 품질·성능 등에 하자가 있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 목적물 등의 생산과정 또는 납품 등을 위한 운송과정에서 수급사업자가 제대로 관리를 하지 아니하여 목적물 등이 오손·훼손되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 2. 하도급법 해설

### 2.4. 원사업자의 의무사항(계약 이행 관련)

#### 부당한 위탁취소, 수령거부 예시

- 위탁내용이 불명확하여 수급사업자가 납품·시공한 목적물의 내용이 위탁내용과 상이한지 판단이 곤란함에도 불구하고 수령을 거부하는 행위
- 검사기준을 정하지 않고 통상의 기준보다 높은 기준을 적용하거나, 검사기준을 정하였다고 하더라도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당초계약에서 정한 검사기준보다 높은 기준을 적용하여 수령을 거부하는 행위
- 위탁시 납기를 정하지 아니하거나 납기를 변경할 경우 이를 명확히 하지 아니하고 납기 지연을 이유로 수령을 거부하는 행위
- 원사업자가 공급하기로 되어 있는 원자재 또는 건축자재 등을 늦게 공급함으로써 납기·공기내 납품 또는 시공이 불가능함에도 납기지연을 이유로 수령을 거부하는 행위
- 원사업자가 발주자·고객 클레임 등을 이유로 이미 위탁한 물품의 수령을 거부하는 행위
-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로부터 납품의 수령요구가 있었음에도 정당한 이유없이 보관장소 부족 등의 사유를 들어 수령을 거부하는 행위
-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의 부도 등에 따라 안정적인 공급이 어렵다고 판단해서 이미 발주 한 물품의 수령을 임의로 거부하는 행위
- 원사업자가 여러 품목을 제조위탁하고 일부 품목의 불량을 이유로 다른 품목에 대하여도 수령을 거부하는 행위
- 발주자의 발주취소 또는 발주중단 등의 이유로 이미 위탁한 목적물의 수령을 거부하는 행위



## 2. 하도급법 해설

### 2.4. 원사업자의 의무사항(계약 이행 관련)

#### 2.4.3. 부당반품의 금지

##### ▪ 내용

##### - 의의

- ✓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로부터 목적물 등을 수령한 후에 수급사업자에게 책임을 돌릴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형식에 상관없이 수령한 목적물 등을 수급사업자에게 되돌려 보내는 행위를 총칭

##### - 위법성 판단기준

- ✓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책임을 돌릴만한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목적물 등을 반품한 것인지 여부를 중심으로 판단
- ✓ 위탁계약 체결 및 반품의 경위, 반품한 목적물 등의 범위, 계약이행 내용과 위탁할 때의 반품조건, 검사방법, 반품에 따른 손실의 분담, 목적물 등의 수령부터 반품까지의 기간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
- ✓ “수급사업자의 책임으로 돌릴 사유”란 수급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수급사업자가 납품 등을 한 목적물 등이 원사업자가 위탁한 내용과 다르거나 목적물 등에 하자 등이 있고 이로 인해 계약목적 달성을 할 수 없는 경우를 의미

#### 부당반품의 예시

- 목적물 등의 하자에 대한 책임소재가 분명하지 않음에도 원사업자가 목적물 등의 하자에 대한 책임을 수급사업자가 전적으로 부담할 것을 요구하면서 반품하는 행위
- 수급사업자의 납기지연이 있었으나 원사업자가 이를 용인한 객관적인 사실이 있었음에도 목적물 등을 수령한 후 납기지연을 이유로 반품 하는 행위
- 원사업자가 거래상대방으로부터의 발주취소·발주중단, 발주자·외국수입업자·고객의 클레임, 원사업자의 생산계획 변경·사양변경·모델단종·판매부진·재고증가·보관소 부족 또는 소비위축·경제상황 변동 등 수급사업자의 책임과는 무관하여 정당성을 가지지 못하는 사유로 반품하는 행위
- 원사업자가 공급한 원자재·부자재, 건축자재 등 원재료의 품질불량으로 인한 것임에도 수급사업자에게 그 책임을 물어 반품하는 행위



## 2. 하도급법 해설

### 2.4. 원사업자의 의무사항(계약 이행 관련)

#### 2.4.4. 목적물의 검사

##### ▪ 내용

##### - 목적물 검사 의무

- ✓ 위탁목적물에 대한 검사의 기준과 방법은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협의하여 객관적이고 공정·타당하게 정하여야 함
- ✓ 검사 방법에는 전수검사, 발취검사, 제3자에 대한 검사의뢰, 수급사업자에게 검사위임, 무검사 합격 등이 존재

##### - 검사결과 통지 의무

- ✓ 원사업자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이외에는 목적물을 수령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검사결과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하며, 기간내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검사에 합격한 것으로 봄
- ✓ 따라서 원사업자는 그 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이후 수급사업자에게 귀책이 있더라도 이를 이유로 제품을 반품하거나 대금을 감액할 수 없음
- ✓ 검사결과 통지 기간의 예외 사유로 인정될 수 있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일일 평균 검사물량의 과다, 발주처에의 납기 준수 등 통상적인 사유에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거대한 건설공사(댐·교량공사, 대단위 플랜트 공사 등), 시스템 통합 용역 등 복잡·다양한 기술적 검사가 필요하여 장기간의 검사가 불가피하게 요구되는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로 인정 가능



## 2. 하도급법 해설

### 2.4. 원사업자의 의무사항(계약 이행 관련)

#### 2.4.5. 계약 이행 관련 사례

#### (주)신성이엔지 및 (주)시너스텍의 부당반품 등 사건('22. 3.23.)

- 법위반 사항

- 1) 서면 미발급(하도급법 제3조 위반)

- (주)신성이엔지와 (주)시너스텍은 수급사업자에게 공정자동화설비 관련 부품 제조를 위탁하면서 하도급계약에 관한 서면을 위탁대상 목적물을 수령한 이후에 발급하거나, 당사자 서명 또는 기명날인 없이 발급

- 2) 부당한 반품 행위 (하도급법 제10조 위반)

- 위탁 목적물을 물품 초과납품 등을 이유로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578일이 지나 수급 사업자에게 반품하였음

- 3) 하도급대금 및 지연이자 미지급 행위 (하도급법 제13조 위반)

- 수급사업자에게 위탁한 목적물을 수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도급대금 4,806만원을 지급하지 아니함
- 하도급대금을 수급사업자에게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하여 지급하면서 그 초과 기간에 대한 지연이자 총 4,256만원을 지급하지 않음
- 하도급대금을 수급사업자에 어음으로 지급하면서 어음 만기일이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함에도 초과 기간에 대한 어음할인료 1,284만원 미지급

- 제재 : 위 2개사에 시정명령, 시너스텍(주)에 과징금 2,000만원 부과



## 2. 하도급법 해설

### 2.4. 원사업자의 의무사항(계약 이행 관련)

#### 2.4.5. 계약 이행 관련 사례

#### 명가토건(주)의 부당한 위탁취소 사건('21. 9. 6.)

- 법 위반 행위: 하도급법 제8조 제1항 '부당한 위탁취소의 금지'

✓ 명가토건(주)는 수급사업자에게 공사 업무를 위탁한 후, '다른 업체와 이중 계약되었으므로, 늦게 계약된 귀사와의 계약은 취소하겠다'라는 문서를 발송하여 수급사업자의 기존 하도급 공사 중 일부 공사 업무를 해지

\*\* 명가토건(주)는 해당 계약 해지 시 수급사업자와 충분한 협의를 거치거나 정당한 보상을 하지 않음

#### (제재) 명가토건(주)에 재발방지 명령



## 2. 하도급법 해설

### 2.4. 원사업자의 의무사항(계약 이행 관련)

#### 2.4.5. 계약 이행 관련 사례

##### (주)피앤씨랩스의 부당한 수령거부 행위 사건('22. 2.28.)

- 법위반 사항

- 1) 하도급법 제3조 '사전 서면 교부 의무'

- (주)피앤씨랩스는 마스크 팩 원단을 수급사업자에 제조 위탁하면서, 하도급대금·납품 시기 등 하도급법상 법정 기재사항이 누락된 서면을 발급

- 2) 하도급법 제 8조 '부당한 수령거부 금지'

- 납품 받은 마스크 팩 원단에 개미가 유입되었으나 수급사업자의 피해 보상이 없었다는 이유로 해당 건과는 별개 위탁 건인 마스크 팩 원단의 수령을 거부

- (제재) 향후 동일 또는 유사한 행위를 반복하지 않도록 재발 방지를 명령



## 2. 하도급법 해설

### 2.4. 원사업자의 의무사항(계약 이행 관련)

#### 2.4.6. 계약 이행 관련 FAQ

##### Q1

- 현재 하도급계약 이행 중인 수급사업자의 재정문제로 소속 직원의 퇴사가 이어지는 등 해당 수급사업자 담당 업무에 문제가 발생할 것이 확실해 보이는 상황임. 이를 이유로 하도급 계약을 해지할 경우 부당 위탁취소에 해당하는지?

##### A1

- ✓ 하도급법은 '수급사업자의 귀책이 없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하도급 계약을 해지하는 행위'를 부당한 위탁취소 행위로 규정하여 제재하고 있음
- ✓ 본건의 경우, 업체 재정문제로 향후 계약 이행 가능성이 불안정해 보인다고 하여, 해당 하도급계약상 계약해지 사유가 발생하지 않았음에도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할 경우 하도급법상 부당한 위탁취소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음
- ✓ 하도급업체와 계약 해지 시는 반드시 1) 하도급 계약에 정한 계약해지 사유가 발생한 상황에서 2) 동 계약에서 정한 해지 절차에 따라 해지하여야 한다는 점 유의

\*\* 해당 계약상 해지 사유, 절차 등이 정당한 내용인지(부당특약에 해당하지 않는지) 여부는 별도로 판단 필요

##### Q2

- 수급사업자로부터 물품을 수령하여 검사까지 완료하였으나 현재 당사에 해당 물품을 보관할 장소가 부족하여 수급사업자에 양해를 구한 다음 물품을 수급사업자에게 돌려 보낸 뒤 이를 잠시만 보관하여 줄 것을 부탁하였음. 이 경우 부당반품에 해당하는지?

##### A2

- ✓ 하도급법상 부당반품행위란 수급사업자로부터 목적물 등을 수령한 후에 수급사업자 귀책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형식과는 상관없이 수령한 목적물 등을 수급사업자에게 되돌려 보내는 행위를 총칭함
- ✓ 따라서, 본건의 경우 그 의도와는 무관하게 부당반품에 해당할 소지가 있으며, 이러한 경우 해당 업체와 별도 물품보관 계약 등을 체결하여 합당한 대가를 지불할 필요 있음



## 2. 하도급법 해설

### 2.5. 원사업자의 의무사항(하도급대금 지급 관련)

#### 2.5.1. 선급금의 지급

##### ▪ 내용

##### - 선급금 지급 의무

- ✓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선급금을 지급받은 때에는 그 내용과 비율에 따라 선급금을 지급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함
- ✓ 발주자가 선급금의 사용용도, 지급 대상품목 등 선급금의 사용내역을 구체적으로 지정 하여 원사업자에게 지급한 경우, 원사업자는 그 내역별로 상기 방식과 같이 하도급 율을 감안한 선급금을 산정하여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면 됨
- ✓ 선급금을 어음으로 지급하는 경우 어음만기일이 법정지급기일을 초과할 때에는 초과 기간에 대한 어음할인료 또는 수수료(금융기관과 사전에 약정한 수수료율)를 지급하여야 함

#### 선급금 지급 의무 위반 유형 예시

- 발주자로부터 선급금을 지급받고 15일이 지난 이후에 선급금을 지급하는 경우
- 선급금은 하도급대금의 일부를 미리 지급한 것이므로 기성비율에 맞추어 공제하는 것이 타당하나, 일시에 전액을 공제하거나 기성율보다 높게 선급금을 조기 공제하는 경우
- 발주자로부터 선급금을 40% 수령하였으나 하도급업체에는 25%만 지급한 경우



## 2. 하도급법 해설

### 2.5. 원사업자의 의무사항(하도급대금 지급 관련)

#### 2.5.2. 하도급대금의 지급

##### ▪ 기본 원칙

- 하도급대금의 지급 시기
  - ✓ 하도급대금은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지급하는 것이 원칙
  - ✓ 하도급계약시 하도급대금의 지급시기를 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목적물을 수령한 날이 지급기일이 되며,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하는 날을 지급기일로 정한 경우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째 되는 날이 지급기일이 됨
  - ✓ 단, 발주자로부터 도급 대금을 받은 경우 그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 이내의 시기 중 더 빠른 일자에 대금을 지급하여야 함
  
- 지연이자 등의 지급
  - ✓ 선급금, 하도급대금을 위 지급시기를 초과하여 지급하는 경우 그 초과기간에 대한 지연이자 지급 필요
  - ✓ 이자율은 공정위 고시 비율에 따름('22. 4. 기준 연 15.5%)
  
- 현금지급비율 및 어음만기일 유지 의무
  - ✓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지급할 경우 발주자로부터 위탁과 관련하여 받은 현금비율 미만으로 지급 불가
  - ✓ 이 경우, 발주자로부터 지급받은 준공금이나 기성금의 현금비율보다 같거나 더 높은 비율로 지급하여야 함
  
- 중견기업에의 적용
  - ✓ 하도급대금 지급 조항은 중견기업과 원사업자간 거래에도 적용



## 2. 하도급법 해설

### 2.5. 원사업자의 의무사항(하도급대금 지급 관련)

#### 2.5.3. 부당한 대물변제의 금지

##### ▪ 부당한 대물변제의 금지

###### - 내용

- ✓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의 의사에 반하여 하도급대금을 물품으로 지급 불가
- ✓ 수급사업자의 의사에 반하여라는 의미는 수급사업자가 원하지 않았지만 원사업자의 의사에 의하여 할 수 없이 합의하거나 동의하는 경우도 포함하고, 당초부터 하도급대금을 물품으로 지급하는 것을 전제로 자유로운 협의를 통해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의사에 반하는 대물변제로 보기 어려움

###### - 대물변제시 서면 교부 절차

- ✓ 원사업자는 변제 전 물품의 권리·의무 관계 확인 가능한 자료 수급사업자에 제공
- ✓ 변제 시 지체 없이 원사업자 자료 제시일, 자료 주요 목차, 수급사업자가 자료를 받은 사실, 양 당사자 상호명, 사업장 소재지·전화번호,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 상호 기명날인한 서면을 작성하여 수급사업자에 교부

#### 2.5.4. 관세 등 환급액의 지급 및 내국신용장 개설 의무

##### ▪ 내용

###### - 관세 등 환급액 지급의무

- ✓ 원사업자가 수출용 원자재 등과 관련하여 관세를 환급 받은 경우,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게 환급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그 내용에 따라 지급
- ✓ 위 기간(환급 받은 날로부터 15일)보다 하도급대금 지급기일인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이 먼저 도래하는 경우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지급 필요
- ✓ 원사업자가 관세 환급금을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면서 법정지급기일을 초과 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기간에 대한 연 15.5%의 지연이자를 부담하여야 함

###### - 내국신용장 개설 의무

- ✓ 수출물품을 제조위탁한 경우 15일 이내 내국신용장 개설 필요
- ✓ 내국신용장 개설 시 검사완료 즉시 물품수령증(인수증) 교부 필요
- ✓ 원사업자가 수출할 물품·용역을 수급사업자에게 제조위탁 또는 용역위탁한 경우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사전/사후 구매확인서를 수급사업자에 발급하여야 함
  1. 원사업자가 개설 한도 부족 등 정당한 사유로 내국신용장 발급이 어려운 경우
  2. 수급사업자의 구매확인서 발급 요청이 있는 경우



## 2. 하도급법 해설

### 2.5. 원사업자의 의무사항(하도급대금 지급 관련)

#### 2.5.5. 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

##### ▪ 내용

##### - 하도급대금 직접 지급 사유

- ✓ 원사업자의 지급정지·파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유가 있거나 사업에 관한 허가·인가·면허·등록 등의 취소로 원사업자의 하도급대금 지급이 불가능한 경우로 수급사업자가 하도급대금 직접 지급을 요청한 때
- ✓ 발주자가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하기로 발주자·원사업자 및 수급사업자 간에 합의한 때
- ✓ 원사업자가 하도급법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는 하도급대금의 2회분 이상을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수급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을 요청한 때
- ✓ 원사업자가 하도급법에 따른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로 수급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을 요청한 때
  - ☞ 위 사유들 발생 시 의무적으로 하도급대금 직접 지급 필요
  - ☞ 이 경우, 원사업자에 대한 발주자의 대금지급채무와 수급사업자에 대한 원사업자의 하도급대금 지급채무는 그 범위에서 소멸한 것으로 봄

##### - 하도급대금 직접 지급의 예외

- ✓ 수급사업자의 귀책으로 인하여 하도급대금 지급이 지체되고 있는 경우 등
  - ☞ 원사업자가 발주자에게 해당 하도급 계약과 관련된 수급사업자의 임금, 자재대금 등의 지급 지체 사실(원사업자의 귀책사유로 그 지급 지체가 발생한 경우는 제외)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 중지를 요청한 경우, 발주자는 직접 지급 사유가 발생하였더라도 그 대금을 직접 지급하여서는 아니 됨

##### - 기타 사항

- ✓ 본 규정에 따라 발주자가 해당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할 때 발주자가 원사업자에게 이미 지급한 하도급금액은 차감하여 지급
- ✓ 수급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하도급대금을 직접 받기 위하여 기성부분의 확인 등이 필요한 경우 원사업자는 지체 없이 이에 필요한 조치를 이행 필요



## 2. 하도급법 해설

### 2.5. 원사업자의 의무사항(하도급대금 지급 관련)

#### 2.5.6. 하도급대금 지급 관련 사례

##### (주)새롬어패럴의 하도급대금 미지급 등 사건('21. 9. 9.)

• 법 위반 행위: 하도급법 제3조 '서면의 발급' 및 제13조 '하도급대금의 지급'

- ✓ (주)새롬어패럴은 수급사업자에게 의류 제조를 위탁하면서 하도급대금 및 양 당사자 서명이나 기명날인이 누락된 서면을 발급(서면 미발급)
- ✓ 또한, 수급사업자로부터 수령한 의류를 판매하던 중, 의류에 하자가 있다는 이유로 하도급 대금 5.82억원을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지 않음(대금 미지급).  
\*\* 목적물 수령 후 10일 이내에 하자 통지 없었고, 상당수 제품은 이미 판매하였음

**(제재) (주)새롬어패럴에 재발방지 명령 및 하도급대금·지연이자 지급명령**

##### 동우콘트롤(주)의 하도급대금 및 지연이자 미지급 등 사건('21. 6.30.)

• 법 위반 행위: 하도급법 제13조 '하도급대금 지급 및 지연 지급 시 지연이자 지급'

- ✓ 동우콘트롤(주)는 협력업체에게 부품 제조를 위탁한 후 목적물을 수령하였음에도, 자신이 지급한 사급자재를 협력업체가 반환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납품받은 목적물 대금 일부인 0.8억원을 미지급하였고, 해당 금액에 대한 지연이자 총 0.1억원도 미지급함.

**(제재) 동우콘트롤(주)에 재발방지 명령 및 미지급 지연이자 0.1억원에 대한 지급 명령**



## 2. 하도급법 해설

### 2.5. 원사업자의 의무사항(하도급대금 지급 관련)

#### 2.5.7. 하도급대금 지급 관련 FAQ

##### Q1

- 수급사업자가 스스로 선급금 포기확인서를 제출하여 원사업자가 선급금을 지급하지 않은 행위가 하도급법에 저촉되는 행위인지?

##### A1

- ✓ 수급사업자가 선급금 지급 보증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자율적으로 선급금을 지급받을 것을 포기하여 이를 이유로 원사업자가 선급금을 해당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지 않은 경우에는 하도급법에 따른 참작 사유에 해당될 수 있음
- ✓ 이 경우 원사업자는 선급금 미지급이 수급사업자 귀책사유라는 점 입증 필요
- ✓ 한편, 하도급거래 공정화지침은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 선급금 포기각서 제출 강요 후 선급금을 지급하지 않는 행위를 탈법행위로 예시하여 중대한 하도급법 위반행위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강요행위는 절대 금지됨

##### Q2

- 수급사업자가 본인의 건설현장 노동자에 노무비를 미지급하고 있는데,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에서 해당 노무비를 노동자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는지?

##### A2

- ✓ 하도급법은 발주자의 수급사업자에 대한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의무와 직접지급사유를 규정하고 있음
- ✓ 그러나, 수급사업자의 건설 노동자와 원사업자의 관계는 하도급법상 하도급거래 관계가 아니므로 이 경우 원사업자에 하도급법상 직접 지급의무 미발생(노동자는 수급사업자가 아님)
- ✓ 따라서,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 지급하여야 할 하도급대금을 수급사업자 합의 없이 수급사업자의 건설현장 노동자에게 직접 지급하는 경우 하도급대금 미지급 행위에 해당되어 하도급법 위반이 될 수 있다는 점 유의 필요



## 2. 하도급법 해설

### 2.5. 원사업자의 의무사항(하도급대금 지급 관련)

#### 2.5.7. 하도급대금 지급 관련 FAQ

##### Q3

- 수급사업자가 하자보증서를 미제출하여 계약에 따라 하자 보증금 및 하자 보수용 자재대금 해당 금액을 수급사업자 보증서 제출 시까지 유보하는 행위는 하도급법 위반인지?

##### A3

- ✓ 하도급법은 하도급법 위반행위에 관하여 수급사업자 귀책이 있는 경우 시정 조치 등을 적용할 때 이를 고려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 또한, 하도급거래 공정화 지침은 목적물 납품 및 인도 후 원사업자가 정당하게 요구한 하자보증의무 등을 수급사업자가 이행하지 않아서 그 범위 내에서 대금지급이 지연된 경우 참작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예시하고 있음
- ✓ 따라서, 계약 등에 따라 정당하게 요구한 하자 보증서 등이 미제출 되어 그 범위 내의 하도급대금 지급을 유보하는 행위는 상기 참작사유 해당 가능

##### Q4

- 지연이자 및 어음할인료를 수급사업자와 합의하여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지?

##### A4

- ✓ 지연이자 및 어음할인료 등의 지급의무는 하도급법에 의한 강제규정으로 수급사업자와 합의로 면제할 수 없음
- ✓ 따라서, 수급사업자와 합의로 미지급한 경우 하도급법 위반에 해당



## 2. 하도급법 해설

### 2.5. 원사업자의 의무사항(하도급대금 지급 관련)

#### 2.5.7. 하도급대금 지급 관련 FAQ

##### Q5

- 도급 대금을 수령하지 못해도 하도급대금을 지급해야하는지?

##### A5

- ✓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로부터 정상적으로 목적물을 수령한 경우 원사업자는 발주자로부터 도급 대금을 수령하였는지 여부와는 관계없이 해당 목적물의 수령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수급사업자에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여야 함

##### Q6

- 지급한 어음이 부도난 경우에도 하도급대금 지급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보는지?

##### A6

- ✓ 원사업자로부터 수급사업자가 지급받은 어음이 그 만기일 이전에 부도처리되었다면, 이는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하도급법에 따른 대금 지급의무의 미이행에 해당(하도급거래 공정화 지침)



## 2. 하도급법 해설

### 2.6. 원사업자의 의무사항(기술탈취 금지)

#### 2.6.1. 기술자료의 의의

▪ 내용

– 기술자료의 정의

판단	① 비밀관리성	② 독립된 경제적 가치
정의	협력업체가 합리적 노력으로 비밀로 유지하고 있는 것 중에서	1. 제조·수리·시공 또는 용역수행 방법에 관한 정보·자료 2. 지식재산권과 관련된 기술정보·자료 중 협력업체에 기술적으로 유용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가 있는 것 3. 기타 정보·자료 중 협력업체에 기술적으로 유용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가 있는 것
예시	작업공정도, 공정 설명서, 작업표준서(지시서), 설계도, 회로도, 공정 또는 설비 배치도, 장비 제원, 시방서, 기계운용매뉴얼, 시공 프로세스 매뉴얼, 연구자료, 연구개발 보고서(실패한 연구보고서 포함), 소프트웨어 테스트방법, 소스코드 또는 소스코드 관련 정보 등	

– 기술자료 관련 법적 요구사항

- ✓ 원칙적 금지: 기술자료를 요구하는 행위, 기술자료를 유출/유용 행위
- ✓ 기술자료 요구 허용: 아래 ① + ② + ③의 요건을 충족한 경우 기술자료 요구 가능
  - ① 정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 ② 최소한의 범위 내 ③ 사전협의 및 서면(법정사항 기재) 발급
- ✓ 기술자료 수령 전 자료 제공 업체(수급사업자)와 사전에 법정 기재사항 반영된 비밀 유지 계약 체결 필요



## 2. 하도급법 해설

### 2.6. 원사업자의 의무사항(기술탈취 금지)

#### 2.6.2. 기술자료의 제공 강요 및 유용 등 금지

##### ▪ 내용

##### - 개요

- ✓ 기술자료 제공 요구는 원칙적으로 위법
- ✓ 단, 정당한 사유가 있음을 입증하는 경우 위법하지 않음
- ✓ 정당한 사유가 있음을 입증한 경우에도, 요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필요 최소한의 범위를 넘어서는 범위의 기술자료를 요구하는 것은 위법

#### 정당한 사유 여부 예시

- 공동 특허 개발 과정에서 특허출원을 위하여 필요한 기술자료를 요구 ☞ 가능
- 공동 기술개발 약정을 체결하고 동 약정 범위 내에서 개발에 필요한 기술자료를 요구 ☞ 가능
- 제품 하자 발생 원인규명을 위해 하자과 직접 관련된 기술자료를 요구 ☞ 가능
- 불필요한 내용을 삭제하여 제공된 기술자료의 전체 완본을 요구 ☞ 위법

- 원사업자는 기술자료를 제공받는 날까지 아래 법정 기재사항이 반영된 비밀유지 계약서를 수급사업자와 체결 하여야 함

1. 기술자료의 명칭 및 범위
2. 기술자료의 사용기간
3. 기술자료를 제공받아 보유할 임직원의 명단
4. 기술자료의 비밀유지의무
5. 기술자료의 목적 외 사용금지
6. 위 제4호 또는 제5호의 위반에 따른 배상
7. 기술자료의 반환·폐기 방법 및 일자



## 2. 하도급법 해설

### 2.6. 원사업자의 의무사항(기술탈취 금지)

#### 2.6.2. 기술자료의 제공 강요 및 유용 등 금지

##### ■ 기술자료의 요구 방법

##### - 기술자료 요구 서면의 발급

✓ 시기 : 기술자료 요구시 발급

✓ 내용 : 계약당사자, 계약기간 등 하도급법이 명시한 법정 기재사항 모두 기재 필요

※ 법정 기재사항

1. 기술자료 요구목적
2. 기술자료의 권리귀속 관계
3. 기술자료의 대가/대가의 지급방법
4. 기술자료의 명칭 및 범위
5. 요구일/제공일 및 제공방법

6. 그 외 원사업자의 기술자료 제공 요구가 정당함을 입증할 수 있는 사항

✓ 발급: 양 당사자 서명 - 계약서 등 명칭을 불문하고 양 당사자 서명 필요. 일방당사자의 날인만 있는 서면은 적법한 서면으로 보지 않음

##### ■ 기술자료의 유용/유출

##### - 취득한 기술자료를 부당하게 유용/유출 불가

✓ "부당하게": "기술자료 제공 요구서에 기재한 요구목적, 합의된 사용범위 등을 벗어나서"

✓ "유용/유출": 부당하게 자기 또는 제3자를 위하여 사용하는(유용)/제3자에게 제공하는 것(유출)

☞ 유용 예) 제공받은 기술자료를 최초 목적과 다르게 사용하여 자신이 직접 제품을 생산

☞ 유출 예) 계약 이행을 위해 제공받은 기술자료를 입찰설명회 자료로 배포하는 방식으로 경쟁자에 무단으로 전달하는 행위



## 2. 하도급법 해설

### 2.6. 원사업자의 의무사항(기술탈취 금지)

#### 2.6.3. 기술자료 유사 개념: 경영상 정보의 제공 요구 금지

##### ▪ 내용

- 정당한 사유 없는 "경영상 정보" 제공 요구 불가

✓ 정당한 사유: 위탁 목적 달성 위해 경영정보가 절차적·기술적으로 불가피하게 필요하게 되는 경우

※ 단, 이 경우에도 목적달성을 위해 필요 최소한 범위 내에서 정보 요구 가능

예1) 원사업자가 법령 상 자신의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예2) 원/수급사업자가 공동으로 입찰참여 시 상호 공유할 필요가 있는 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예3) 원/수급사업자가 공동으로 신제품 개발 중 필요한 세부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예4) 미양산 또는 시장가격 미형성 품목의 하도급계약 관련 정산 등 계약의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 위반 시 "부당 경영간섭 행위"로 처벌

✓ 단, 정보 요구 시 별도의 요구 서면 발급은 불필요

- 경영상 정보의 종류 및 예시

경영상 정보의 종류	예시
수급사업자가 목적물 등의 납품을 위해 투입한 재료비, 노무비 등 원가 관련 정보	원가계산서, 원가내역서, 원가명세서, 원가산출내역서, 재료비, 노무비 등의 세부지급 내역 등
수급사업자가 타 사업자에 납품하는 목적물 등의 매출 관련 정보	매출계산서, 거래처별 매출명세서 등
수급사업자의 경영전략 관련 정보	제품 개발·생산계획, 판매계획, 신규투자 계획 등
수급사업자의 영업 관련 정보	거래처명부, 타 사업자에 납품하는 납품조건 (납품가격 포함) 등
수급사업자가 타 사업자와 거래 시 사용하는 전산망의 고유명칭, 비밀번호 등 해당 전산망 접속을 위한 정보	수급사업자가 타 사업자와 거래하는 구매시스템의 명칭, 접속 비밀번호 등



## 2. 하도급법 해설

### 2.6. 원사업자의 의무사항(기술탈취 금지)

#### 2.6.4. 기술탈취 행위 사례

#### 엘지전자(주)의 기술자료 요구 서면 미발급 사건('22. 3. 7.)

- **법위반 사항: 하도급법 제12조의 3 제2항 '기술자료 요구 요구서면 발급'**

- ✓ 엘지전자(주)는 협력업체에 가전제품 부품의 제작을 위탁하고 납품 받는 과정에서, 협력업체에 이메일로 16건의 기술자료를 요구하고 제공받으면서 하도급법상 기술자료 요구 서면을 미발급 하였음

\*\* 요구기술자료: 부품 승인도 및 승인원, 품질 관련 자료

- 승인도: 제품 공급 전원사업자가 최종 승인한 수급사업자의 제품 제작 관련 도면

- 승인원: 원사업자가 위탁한 목적물을 수급사업자가 제조·조립하는데 사용되는 자료로 발주 제품에 대해 사전약정된 검사 기준에 적합한 부품을 사용한다는 내용 및 제품의 설계도면이 발주자가 사전 공지한 사양 등에 부합한다는 내용에 대한 승인을 요청하기 위해 수급사업자가 원사업자에 발송하는 자료

- **(제재) 엘지전자(주)에 시정명령 및 과징금 0.44억원 부과**



## 2. 하도급법 해설

### 2.6. 원사업자의 의무사항(기술탈취 금지)

#### 2.6.4. 기술탈취 행위 사례

#### 엘에스엠트론(주)의 수급사업자 기술자료 유용 사건('22. 3. 3.)

- **법위반 사항: 하도급법 제12조의3 '기술자료 유용 등 금지'**

##### 1) 부당한 기술자료 유용

- 엘에스엠트론(주)는 수급사업자로부터 금형 제조방법에 관한 기술자료를 제공 받은 후, 수급사업자와 협의 없이 본인 단독명의로 제조 방법에 대한 특허를 출원·등록하는 방식으로 기술자료를 유용함.

##### 2) 부당한 기술자료 요구

- 엘에스엠트론(주)은 금형 설계도면을 2건을 정당한 사유 없이 수급사업자에게 요구하여 제공 받았으며, 요구 시 필요한 부분을 특정하지 않고 전체 도면의 제공을 요구하였음.

##### 3) 기술자료 요구 서면 미교부

- 또한, 공동 특허출원을 목적으로 수급사업자에 금형 제조방법에 대한 연구 노트를 요구하면서, 법정 요구 서면도 수급사업자에 교부하지 않음.

\* 기술자료 요구 목적이 정당하더라도, 법정 요구 서면은 교부 되어야 함.

- **(제재) 엘에스엠트론(주)에 시정명령 및 쿠퍼스탠다드(주)에 과징금 13.86억원 부과**

\* 엘에스엠트론(주)로부터 물적 분할된 쿠퍼스탠다드(주)가 분할 전 회사의 위반행위로 과징금 부과 받은 사례임



## 2. 하도급법 해설

### 2.6. 원사업자의 의무사항(기술탈취 금지)

#### 2.6.4. 기술탈취 행위 사례

#### 두산인프라코어(주)의 기술자료 관련 불공정 하도급 거래행위 사건('18. 7.18.)

• 법 위반 사항: 하도급법 제12조의3 '기술자료 유용 등 금지'

(1) 382건 승인도 관련

• 요구서면 미발급

- 30개 수급사업자로부터 승인도 382건을 수령하면서 법정사항 기재 서면 미발급 (이메일, 전화로 요구)

(2) A社の 에어컴프레셔 도면 관련

• 기술자료 부당요구

- 정당한 사유 없이 협력업체 수급사업자 A社에 에어탱크 단품 도면 제공을 요구

(3) B社, C社の 기술자료 도면·승인도 관련

• 기술자료 유용

① 소형 에어컴프레셔 도면 유용

- ✓ 수급사업자 B社の 소형 에어컴프레셔 제품 도면을 甲社에 전달
- ✓ 甲社는 전달받은 도면 활용하여 해당 제품 개발 및 시제품 완성

② 중형 에어컴프레셔 승인도 유용

- ✓ 수급사업자 C社の 중형 에어컴프레셔 제품 승인도 甲社에 전달
- ✓ 甲社는 승인도 활용하여 해당 제품 개발

(4) K社の 냉각수 저장 탱크 승인도 관련

• 기술자료 유출

- 수급사업자 K社の 냉각수 저장탱크 승인도를 입찰자료에 포함하여 입찰사에 배포하는 방식으로 기술자료를 5개 경쟁사에 전달하고 공급 가능 여부 확인

• (제재) 두산인프라코어(주)에 시정명령, 과징금(3.82억), 법인 및 임직원 5명 고발



## 2. 하도급법 해설

### 2.6. 원사업자의 의무사항(기술탈취 금지)

#### 2.6.5. 기술탈취 FAQ

##### Q1

- 물품의 제작 도면은 기술자료 인지?

##### A1

- ✓ 도면의 기술자료 여부는 자료의 명칭·형태·종류만으로는 알기 어려우며, 하도급법상 요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
- ✓ 하도급법은 기술자료를 ① 합리적인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② 제조 또는 용역 수행 방법에 관한 자료 등이라고 정의하고 있음

##### Q2

- 공정위는 기술자료를 유용, 유출하는 행위를 중대한 하도급법 위반으로 규정하여 이를 철저히 단속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음. 이러한 기술자료의 유용, 유출 해당 행위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 A2

- ✓ 업체 입찰제안서의 기술자료를 직접 유용하거나 계열사 등 제3자에 유출한 경우 [유출]
- ✓ 수령한 기술자료를 납품가격 경쟁 유도를 위해 업체의 경쟁사에 제공하는 경우 [유출]
- ✓ 사전에 정한 기술자료 반환·폐기 기한을 위반하여 반환·폐기 없이 해당 자료 사용하는 경우 [유용]
- ✓ 납품단가 인하 또는 업체 변경 위해 기존업체의 기술자료를 제3자에게 제공하고 동일 또는 유사 제품을 제조·납품하도록 하는 경우 [유용]
- ✓ 거래 종료 후 기존에 제공받은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를 활용하여 자신이 직접 제품을 생산하거나 제3자에게 전수하여 납품하도록 하는 경우 [유용]



## 2. 하도급법 해설

### 2.6. 원사업자의 의무사항(기술탈취 금지)

#### 2.6.5. 기술탈취 FAQ

##### Q3

- 기술자료 요구서는 모든 업체에 다 발급하여야 하는 것인지?

##### A3

- ✓ 하도급법상 기술자료 규정은 당사와 거래하는 하도급업체가 하도급법상의 수급사업자(중소기업)일 경우에만 적용
- ✓ 따라서, 현행 하도급법에 따르면 대기업 및 중견기업에 기술자료를 요청하는 경우 별도의 기술자료 요구서면 발급 없이 기술자료를 요청해도 무방

##### Q4

- 당사가 제공한 사양이나 기술지도를 바탕으로 제작된 자료도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로 볼 수 있는지?

##### A4

- ✓ 하도급거래의 특성 상 수급사업자가 작성한 기술자료에는 원사업자의 기술이 상당 부분 포함되어 있는 경우가 많음. 그러나 이러한 사실만으로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가 아니라고 단정할 수 없음.
- ✓ 원사업자가 사양을 제공하였더라도, 수급사업자가 해당 자료에 사양 이외에 자신의 기술(예: 공정 순서, 품질 관리를 위한 공정 관리 방안 등)을 포함하였다면, 이는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에 해당함(공정위 의결 제2020-244호)
- ✓ 또한 원사업자의 기술지도를 바탕으로 수급사업자가 기술자료를 작성한 경우에도, 해당 자료에 수급사업자의 임가공 노하우와 경험이 반영되어 있는지, 기술지도의 정도 및 수준이 어떠한지에 따라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로 볼 수도 있음(공정위 의결 제2020-303호)



## 2. 하도급법 해설

### 2.7. 원사업자의 의무사항(기타 불공정 하도급거래 행위 금지)

#### 2.7.1. 부당 경영간섭·보복 조치·탈법행위의 금지

##### ▪ 내용

##### - 부당한 경영 간섭의 금지

- ✓ 원사업자는 하도급거래량을 조절하는 방법 등을 이용하여 수급사업자의 경영에 간섭 불가
- ✓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원사업자의 행위는 부당한 경영간섭으로 봄
  1. 정당한 사유 없이 수급사업자가 기술자료를 해외에 수출하는 행위를 제한하거나 기술자료의 수출을 이유로 거래를 제한하는 행위
  2. 정당한 사유 없이 수급사업자로 하여금 자기 또는 자기가 지정하는 사업자와 거래하도록 구속하는 행위
  3. 정당한 사유 없이 수급사업자에게 원가자료 등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하는 경영상의 정보를 요구하는 행위

##### - 보복 조치의 금지

- ✓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 또는 조합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것을 이유로 그 수급 사업자에 대하여 수주기회 제한, 거래 정지, 그 밖에 불이익 행위를 하여서는 안됨
  1. 원사업자가 이 법을 위반하였음을 관계 기관 등에 신고한 행위
  2. 하도급법에 따른 원사업자에 대한 하도급대금의 조정신청 또는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에 대한 조정신청
  3. 관계 기관의 조사에 협조한 행위
  4. 하도급거래 서면실태조사를 위하여 공정위가 요구한 자료를 제출한 행위

##### - 탈법 행위의 금지

- ✓ 원사업자는 하도급거래와 관련하여 우회적인 방법에 의하여 실질적으로 이 법의 적용을 피하려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됨



## 2. 하도급법 해설

### 2.8. 하도급법 위반 시 제재

#### 2.8.1. 상세 제재 내용

제재 유형	내용
시정조치 및 시정권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공정위는 발주자와 원사업자에 대하여 하도급대금 등의 지급, 법 위반행위 중지, 특약 삭제나 수정, 향후 재발방지, 그 밖에 시정에 필요한 조치 및 시정조치를 받았다는 사실의 공표를 명령 가능</li> <li>또한, 공정위는 하도급법 위반 발주자와 원사업자에 대해 시정 방안을 정하여 이에 따를 것을 권고할 수 있음</li> </ul>
공공입찰 참가 제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공정위는 하도급법을 위반한 원사업자에 그 위반 및 피해 정도를 고려해 벌점을 부과</li> <li>과거 3년간의 누산 벌점이 법상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공공입찰 참가 제한(5점)·건설법상 영업정지(10점) 요청 가능</li> </ul>
상습법 위반사업자 명단 공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과거 3년간 하도급법 위반을 이유로 공정위 경고, 시정조치 또는 시정권고를 3회 이상 받은 사업자 중 누산 벌점 4점 초과한 자는 상습적 법위반 사업자로서 공정위가 그 명단을 의무적 공표</li> </ul>
과징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발주자·원사업자에 대해 수급사업자에게 제조 등 위탁한 하도급 대금의 2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 부과 가능</li> </ul>
형사처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위탁한 하도급대금의 2배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아래 벌금 대상 규정위반 외 원사업자 의무사항 위반 시</li> </ul> </li> <li>3억원 이하의 벌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보복조치 행위 금지 규정 위반 시</li> </ul> </li> <li>1억 5천만원 이하의 벌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부당 경영간섭·탈법행위 금지 규정 위반 및 공정위 시정명령에 따르지 않은 자</li> </ul> </li> </ul>
손해배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하도급법 위반으로 손해를 입은 자가 있는 경우 원사업자는 발생 손해에 대하여 배상책임을 부담함. 다만, 원사업자가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한 경우에는 제외</li> <li>다음 경우는 실제 발생 손해의 3배 미만 범위에서 배상책임 부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li> <li>- 부당 위탁취소/수령 지연·거부, 부당반품 및 부당감액</li> <li>- 기술자료의 유용·유출</li> <li>- 보복조치</li> </ul> </li> </ul>



### 3. 약관규제법 해설

#### 3.1. 약관규제법 개요

##### 3.1.1. 기본 사항

###### ▪ 의의

###### - 목적

사업자가 거래상의 지위를 남용하여 불공정한 내용의 약관을 작성하여 거래에 사용하는 것을 방지하고 불공정한 내용의 약관을 규제함으로써 건전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이를 통하여 소비자를 보호하고 국민생활을 균형 있게 향상시키는 것

###### - 거래 주체에 관계없이 일반적으로 적용되며, 강행법규임

###### ▪ 약관의 개념

- 명칭이나 형태 또는 범위를 불문하고 계약의 한쪽 당사자가 여러 명의 상대방과 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일정한 형식으로 미리 마련한 계약의 내용

###### - 약관의 요건

일방당사자(사업자)에 의하여 마련된 것이어야 하고(**일방성**), 다수의 상대방(고객)과 계약을 체결하기 위한 것이어야 하며(**일반성**), 일정한 형식에 의하여(**형식성**) 미리 마련된 것이어야 함(**사전성**)



### 3. 약관규제법 해설

#### 3.2. 약관의 명시 및 설명 의무

- 사업자는 고객이 약관의 내용을 쉽게 알 수 있도록 한글로 작성하고, 표준화·체계화된 용어를 사용하며,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부호, 색채, 굵고 큰 문자 등으로 명확하게 표시하여 알아보기 쉽게 약관을 작성하여야 함
- 사업자는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고객에게 약관의 내용을 계약의 종류에 따라 일반적으로 예상되는 방법으로 분명하게 밝히고, 고객이 요구할 경우 그 약관의 사본을 고객에게 내주어 고객이 약관의 내용을 알 수 있게 하여야 함
- 사업자는 약관에 정하여져 있는 중요한 내용을 고객이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여야 함
- **명시·설명 대상 - '중요한 내용'**
  - 약관규제법상 명시·설명 대상은 계약의 '중요한 내용'
  - '중요한 내용'이라 함은 사회통념에 비추어 고객이 계약체결의 여부나 대가를 결정하는데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을 말하고, 약관조항 중에서 무엇이 중요한 내용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는 일률적으로 말할 수 없으며, 구체적인 사건에서 개별적 사정을 고려하여 판단됨
  - 명시·설명 의무가 제대로 이행되었더라도 그러한 사정이 그 계약의 체결 여부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였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인정된다면 이러한 명시·설명 의무의 대상이 되는 계약의 '중요한 내용'으로 볼 수 없음
- **명시·설명 의무의 상대방**
  - 원칙적으로 당사자인 고객에게 설명하여야 하나, 대리인과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대리인에게 설명 하는 것으로도 충분함
- **명시·설명 의무 위반의 효과**
  - 사업자가 약관의 명시 및 설명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해당 약관을 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음. 약관의 전부 또는 일부 조항이 명시·설명 의무 위반으로 계약의 내용으로 편입되지 못하더라도 계약은 나머지 부분만으로 유효하게 존속함
  - 다만, 유효한 부분만으로는 계약의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거나 일방 당사자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경우 해당 계약은 무효임
  - 명시·설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5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



### 3. 약관규제법 해설

#### 3.3. 약관 해석의 원칙

- **개별약정 우선의 원칙**
  - 약관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에 관하여 사업자와 고객이 약관의 내용과 다른 개별 약정을 한 경우, 개별 약정이 약관에 우선함
  
- **객관적, 획일적 해석의 원칙**
  - 약관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해석되어야 하며, 고객에 따라 다르게 해석되어서는 안됨
  
- **작성자 불이익의 원칙**
  - 약관의 뜻이 명백하지 않은 경우에는 고객에게 유리하게 해석되어야 함



### 3. 약관규제법 해설

#### 3.4. 불공정 약관

##### 3.4.1. 일반원칙 - 신의성실의 원칙

###### ■ 의의

-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반하여 공정성을 잃은 약관 조항은 무효임
- “공정을 잃은”이란, 사업자의 이익과 고객의 이익 사이에서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것을 말하며, 사업자의 이익과 고객의 이익을 비교형량하여 판단함
- 단, ①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 ② 고객이 계약의 거래형태 등 관련된 모든 사정에 비추어 예상하기 어려운 조항 ③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정도로 계약에 따르는 본질적 권리를 제한하는 조항은 공정성을 잃은 것으로 추정됨

###### ■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

- 사업자가 해당 조항으로 인하여 얻은 이익과 고객에게 부여된 이익을 비교형량하여 판단함
- ‘고객의 이익’은 고객집단의 평균적이고 전형적인 이익을 의미하며, 계약당사자의 개별적인 사정을 고려하지 않음
- ‘부당성’은 당해 약관을 설정한 의도 및 목적, 당해 업종에서의 통상적인 거래관행, 관계법령, 거래대상 상품 또는 용역의 특성, 사업자의 영업상의 필요 및 고객이 입을 불이익의 내용과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함

###### ■ 고객이 계약의 거래형태 등 관련된 모든 사정에 비추어 예상하기 어려운 조항

- 사업자가 통상적인 약관의 테두리를 벗어나 의외조항을 삽입하는 것을 규제하기 위한 것으로, 의외성은 평균적 고객의 입장에서 판단함

###### ■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정도로 계약에 따르는 본질적 권리를 제한하는 조항

- 본질적 권리란 그 계약유형에 특징적인 것으로 계약 목적 달성을 위해 중요한 것이면 충분함
- 계약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지 여부는 물리적 불능에 한정되지 않으며, 사회통념상 계약 목적의 달성이 위태로운 경우도 포함됨



### 3. 약관규제법 해설

#### 3.4. 불공정 약관

##### 3.4.2. 개별원칙 - 면책조항의 금지(약관규제법 제7조)

- 면책조항이란, 현재 또는 장래에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할 자가 법규상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원인과 범위에 대하여 유리한 법적 취급을 받을 것을 정한 약관조항을 뜻함
- 계약 당사자의 책임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약관의 내용 중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을 정하고 있는 조항은 무효임(약관규제법 제7조)

- ❖ 사업자, 이행 보조자 또는 피고용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법률상의 책임을 배제하는 조항
- ❖ 상당한 이유 없이 사업자의 손해배상 범위를 제한하거나 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할 위험을 고객에게 떠넘기는 조항
- ❖ 상당한 이유 없이 사업자의 담보책임을 배제 또는 제한하거나 그 담보책임에 따르는 고객의 권리행사의 요건을 가중하는 조항
- ❖ 상당한 이유 없이 계약목적물에 관하여 견본이 제시되거나 품질·성능 등에 관한 표시가 있는 경우 그 보장된 내용에 대한 책임을 배제 또는 제한하는 조항

#### 면책조항 유형

- 민법상 자신의 고의·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음에도 귀책사유 및 책임의 정도를 고려하지 아니하고 입점 후 화재, 도난 기타 사유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사업자가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는 조항
- 아파트 분양계약의 법적 성질은 매매계약이고 매매계약에 있어서 건축물 및 대지의 공급면적이 당초의 계약면적과 달리 증감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담보책임으로 민법상 대금감액청구권, 손해배상청구권, 계약해제권 등을 부여하고 있음에도登記면적에 다소 증감이 있는 경우에 이에 따른 매매대금을 정산하지 아니한다는 조항
- 매도인의 매매물건에 하자가 있는 경우 계약당사자의 귀책사유에 따라 제품의 하자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여야 함에도 사업자가 대리점에 공급한 제품의 반품 또는 교환을 원칙적으로 금지한 후 사업자가 자기의 책임을 인정하거나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반품 또는 교환을 인정하는 조항



### 3. 약관규제법 해설

#### 3.4. 불공정 약관

##### 3.4.2. 개별원칙 - 손해배상액의 예정(약관규제법 제8조)

- 고객에게 부당하게 과중한 지연 손해금 등의 손해배상 의무를 부담시키는 약관 조항은 무효임
- 해배상액의 예정이란 채무불이행시 발생할 손해배상의 액수에 관하여 당사자들이 미리 정해 놓은 것을 말함. 지연손해의 배상·전보배상·위약벌 등 그 명칭을 불문하고 약관상 금전지급이 실질적으로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의 성질이 있는 경우에는 모두 손해배상액의 예정에 포함됨
- '부당하게 과중한' 지의 여부는 거래유형에 따라 계약당사자의 경제적 지위, 계약의 목적과 내용, 손해배상액을 예정한 동기, 채무액에 대한 예정액의 비율, 예상 손해액의 크기, 그 당시의 거래관행과 경제상태 등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함

#### 부당한 손해배상액의 예정 유형

- 부동산 거래에 있어서의 위약금은 거래대금의 10% 수준이 통상의 거래관행임에도 총 분양대금의 20~30%를 위약금으로 정한 조항
- 계약금을 위약금으로 하기로 하는 특약이 있는 경우에 계약금은 민법 제398조 제4항에 의하여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서의 성질을 가진 것임에도 계약해제로 인하여 매도인 또는 임차인이 입은 손해에 대하여 매수인 또는 임대인에게 배상 책임을 다시 물을 수 있도록 한 조항
- 손해배상액의 예정은 채권자의 실제 손해액이 예정배상액을 초과하더라도 그 초과액을 청구할 수 없음이 원칙임에도 계약금을 위약금으로 정하는 외에 별도로 연체료까지 청구하거나 기납부금에서 공제할 수 있도록 한 조항



### 3. 약관규제법 해설

#### 3.4. 불공정 약관

##### 3.4.2. 개별원칙 - 계약의 해제·해지권 제한(약관규제법 제9조)

- 계약의 해제·해지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약관의 내용 중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내용을 정하고 있는 조항은 무효임

- ❖ 법률에 따른 고객의 해제권 또는 해지권을 배제하거나 그 행사를 제한하는 조항
- ❖ 사업자에게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는 해제권 또는 해지권을 부여하여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는 조항
- ❖ 법률에 따른 사업자의 해제권 또는 해지권의 행사 요건을 완화하여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는 조항
- ❖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로 인한 원상회복의무를 상당한 이유 없이 고객에게 과중하게 부담시키거나 고객의 원상회복 청구권을 부당하게 포기하도록 하는 조항
- ❖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로 인한 사업자의 원상회복의무나 손해배상의무를 부당하게 경감하는 조항
- ❖ 계속적인 채권관계의 발생을 목적으로 하는 계약에서 그 존속기간을 부당하게 단기 또는 장기로 하거나 묵시적인 기간의 연장 또는 갱신이 가능하도록 정하여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는 조항

#### 계약의 해제·해지권 유형

- 계약당사자는 상대방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최고 등의 절차를 거쳐 해제·해지권을 행사할 수 있음에도 고객의 해제·해지 요구에 대하여 사업자가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만 해제·해지할 수 있다는 조항
- 민법상 채무불이행에 해당함에도 고객이 사업자에게 계약의 해제·해지를 청구할 수 없도록 하는 조항
- 계약서에 정한 사항을 위반한 경우 이외에 기타 관리상 필요에 의한 사업자의 요구에 불응한 경우에도 최고 등의 절차 없이 사업자가 일방적으로 해제·해지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
- 고객의 경미한 의무위반에 대하여 사업자가 법률이 규정하고 있는 최고 등의 절차 없이도 일방적으로 해제·해지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
- 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되었으나 계약물건의 반환이 불가능하여 물건의 가격으로 반환할 경우 그 가액산정을 사업자가 일방적으로 정하기로 하는 조항
- 계약의 해제·해지 시에 고객이 원상회복의무를 사업자보다 먼저 이행하도록 하는 조항
- 민사상 채무불이행 책임은 채무자의 귀책사유가 있음을 전제로 하는 것임에도 귀책사유의 유무와 관계없이 계약금을 일체 반환하지 않는다는 조항



### 3. 약관규제법 해설

#### 3.4. 불공정 약관

##### 3.4.2. 개별원칙 -채무의 이행(약관규제법 제10조)

- 채무의 이행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약관의 내용 중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을 정하고 있는 조항은 무효임

- ❖ 상당한 이유 없이 급부(給付)의 내용을 사업자가 일방적으로 결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는 조항
- ❖ 상당한 이유 없이 사업자가 이행하여야 할 급부를 일방적으로 중지할 수 있게 하거나 제3자에게 대행할 수 있게 하는 조항

- 급부에는 사업자 자신이 제공하여야 할 급부와 고객이 제공하여야 할 급부를 모두 포함되며, 급부의 변경에는 약속한 급부의 수량, 성질, 이행시기나 이행장소의 변경, 급부제공의 방법 등이 모두 포함됨
- '상당한 이유'가 있는지의 여부는 당해 약관을 설정한 의도 및 목적, 당해 업종에서의 통상적인 거래관행, 관계법령, 거래대상 상품 또는 용역의 특성, 고객과의 협의가능성, 일방적인 변경가능성, 사업자의 영업상의 필요 및 고객이 입을 불이익의 내용과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함



### 3. 약관규제법 해설

#### 3.4. 불공정 약관

##### 3.4.2. 개별원칙 - 고객의 권익 보호(약관규제법 제11조)

- 고객의 권익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약관의 내용 중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내용을 정하고 있는 조항은 무효임

- ❖ 법률에 따른 고객의 항변권(抗辯權), 상계권(相計權) 등의 권리를 상당한 이유 없이 배제하거나 제한하는 조항
- ❖ 고객에게 주어진 기한의 이익을 상당한 이유 없이 박탈하는 조항
- ❖ 고객이 제3자와 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조항
- ❖ 사업자가 업무상 알게 된 고객의 비밀을 정당한 이유 없이 누설하는 것을 허용하는 조항

#### 고객의 권익 관련 조항 유형

- 고객의 채무불이행시 사업자는 계약을 해지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나, 이 경우에도 사업자의 귀책사유나 손해배상액의 과다 등을 이유로 이익을 제기하거나 법적조치를 취하는 것은 고객의 당연한 권리임에도 사업자의 민·형사상 조치에 대하여 아무런 이익을 제기할 수 없도록 하는 조항
- 기한의 이익은 채무자를 위한 것으로 추정되고 이행지체의 경우에도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이행을 최고하고 그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아니한 때 기한의 이익을 박탈함이 타당함에도 채무의 일부라도 기한 내에 변제하지 아니하면 당연히 기한의 이익을 박탈하는 조항



### 3. 약관규제법 해설

#### 3.4. 불공정 약관

##### 3.4.2. 개별원칙 - 의사표시의 의제(약관규제법 제12조)

- 의사표시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약관의 내용 중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내용을 정하고 있는 조항은 무효임

- ❖ 일정한 작위(作爲) 또는 부작위(不作爲)가 있을 경우 고객의 의사표시가 표명되거나 표명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는 조항
- ❖ 고객의 의사표시의 형식이나 요건에 대하여 부당하게 엄격한 제한을 두는 조항
- ❖ 고객의 이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업자의 의사표시가 상당한 이유 없이 고객에게 도달된 것으로 보는 조항
- ❖ 고객의 이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업자의 의사표시 기한을 부당하게 길게 정하거나 불확정하게 정하는 조항

##### 의사표시의 의제 유형

- 고객이 채무를 이행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모든 경우에 손해가 발생하는 것은 아닐 뿐만 아니라 손해액에 대한 다툼이 있을 수 있음에도 합리적인 기준도 없이 고객이 채무를 불이행하는 경우에는 사업자에게 유형·무형의 손해가 발생한 것으로 인정하도록 하는 조항
- 사업자의 의사표시에 관하여 발신만으로 효력을 발생하게 하거나 연착이나 도착하지 않은 경우에도 통상 도착하여야 하는 때에 고객에게 도착한 것으로 간주하는 조항

##### 3.4.2. 개별원칙 - 대리인의 책임 가중(약관규제법 제13조)

- 고객의 대리인에 의하여 계약이 체결된 경우 고객이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대리인에게 그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행할 책임을 지우는 내용의 약관 조항은 무효임

- ❖ 고객의 대리인에 의하여 체결된 계약이 무효·취소로 되는 경우 대리인이 그에 대한 무과실의 손해배상책임을 지도록 하는 조항
- ❖ 고객이 약관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 대리인이 그 이행 책임을 진다는 조항

##### 3.4.2. 개별원칙 - 소송상 권리의 제한(약관규제법 제14조)

- 소송 제기 등과 관련된 약관의 내용 중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내용을 정하고 있는 조항은 무효임

- ❖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소송 제기 금지 조항 또는 재판관할의 합의 조항
- ❖ 상당한 이유 없이 고객에게 입증책임을 부담시키는 약관 조항



### 3. 약관규제법 해설

#### 3.5. 불공정약관 주요 사례

#### 한국자산신탁(주)의 차입형 토지신탁계약서상 불공정약관조항에 대한 건 ('21. 5. 6.)

##### • 문제된 약관

- ✓ 신탁사무의 처리와 관련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존 시공사의 부도 및 파산 등에 따라 불가피하게 시공사를 재선정하여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일체의 이의 제기를 금지하는 조항
- ✓ 신탁등기의 유효성과 관련하여 사업자가 법률상의 책임을 배제하거나, 상당한 이유없이 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할 위험을 고객에게 떠넘기는 조항

##### • 관련 약관규제법 조항

- ✓ **(이의제기 금지조항)**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약관법 제6조 제2항 제1호) 내지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이의(소송) 제기 금지조항(약관법 제14조 제1호)
- ✓ **(면책조항)** 상당한 이유 없이 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할 위험을 고객에게 떠넘기는 조항(약관법 제7조 제1호 및 제2호)

**(제재) 해당 약관조항의 사용금지명령**

#### 아고다의 환불규정상 불공정약관조항에 대한 건 ('19. 2. 11.)

##### • 문제된 약관

- ✓ 고객이 사업자의 온라인 숙소 검색·예약 플랫폼을 통해 한 숙박예약을 취소하는 경우 예약취소 시점 및 숙박예정일로부터 남은 기간과 상관없이 일률적으로 숙박대금 전액을 환불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환불불가' 조건

##### • 관련 약관규제법 조항

- ✓ 고객에게 부당하게 과중한 손해배상 의무를 부담시키는 약관조항(약관규제법 제8조)

**(제재) 해당 약관조항의 사용금지 및 삭제, 수정명령**



### 3. 약관규제법 해설

#### 3.6. 약관규제법 위반 시 제재

##### 3.6.1. 상세 제재 내용

- 약관규제법에 위반되는 약관 조항은 무효임. 약관의 일부가 무효인 경우 나머지 조항은 유효하게 존속하는 것이 원칙이나, 유효한 부분만으로는 계약의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거나 일방에게 불리한 경우에는 계약 전체가 무효임

제재 유형	내용
시정조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업자가 약관규제법을 위반하여 불공정한 약관조항을 계약 내용에 포함시키는 경우, 공정거래위원회는 사업자에게 해당 조항의 삭제·수정 등 시정에 필요한 조치를 권고할 수 있음</li> </ul>
시정명령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정거래위원회는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약관규제법을 위반한 사업자에게 해당 약관조항의 삭제·수정 등 시정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업자가 공정거래법상 시장지배적사업자인 경우</li> <li>• 사업자가 자신의 거래상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li> <li>• 일반공중에게 물품·용역을 공급하는 계약으로서 계약체결의 긴급성·신속성으로 인하여 고객이 계약을 체결할 때에 약관조항의 내용을 변경하기 곤란한 경우</li> <li>• 사업자의 계약당사자로서의 우월적 지위가 현저하거나 고객이 다른 사업자를 선택할 범위가 제한되어 있어 약관을 계약의 내용으로 하는 것이 사실상 강제되는 경우</li> <li>• 계약의 성질 또는 목적상 계약의 취소·해제 또는 해지가 불가능하거나 그로 인하여 고객에게 현저한 재산상의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li> <li>• 사업자가 시정조치 권고를 정당한 사유없이 따르지 아니하여 다수 고객이 피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현저한 경우</li> </ul> </li> </ul>
벌칙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음</li> <li>• 약관의 명시·설명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자, 표준약관과 다르게 정한 주요 내용을 고객이 알기 쉽게 표시하지 않은 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음</li> <li>• 표준약관과 다른 내용을 약관으로 사용하면서 표준약관 표지를 사용하였거나,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는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음</li> </ul>



## 4. 상생협력법 해설

### 4.1. 상생협력법 개요

- 의의
  - 목적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상생협력 관계를 공고히 하여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양극화를 해소하여 동반성장을 달성함으로써 국민경제의 지속성장 기반을 마련함

- 대기업과 중소기업 사이의 위수탁거래에 적용됨

- 주요 개념

구분	내용
상생협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중소기업 상호간 또는 위탁기업과 수탁기업 간에 기술, 인력, 자금, 구매, 판로 등의 부문에서 서로 이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하는 공동의 활동</li> </ul>
수탁·위탁거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조, 공사, 가공, 수리, 판매, 용역을 업으로 하는 자가 물품, 부품, 반제품 및 원료 등의 제조, 공사, 가공, 수리, 용역 또는 기술개발을 다른 중소기업에 위탁하고, 제조를 위탁받은 중소기업이 전문적으로 물품 등을 제조하는 거래</li> <li>※ 제조·가공위탁·수리위탁·건설위탁·용역위탁을 의미하는 하도급법상 '하도급거래' 보다 범위가 넓음</li> </ul>



## 4. 상생협력법 해설

### 4.2. 상생협력법상 의무 및 금지행위

구분	내용
약정서, 수령증 발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위탁기업이 수탁기업에 물품등의 제조를 위탁할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위탁의 내용, 납품대금의 금액, 대금의 지급 방법, 지급기일, 검사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적은 약정서를 그 수탁기업에 발급하여야 함</li> <li>위탁기업은 수탁기업으로부터 물품등을 받으면 물품등의 검사 여부에 관계없이 즉시 물품 수령증을 발급하여야 함</li> </ul>
비밀유지계약 체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수탁기업이 위탁기업에 기술자료를 제공하는 경우 수탁기업과 위탁기업은 기술자료의 제공 목적 및 범위, 비밀유지의무의 내용, 계약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하는 기술자료의 비밀유지계약을 서면으로 체결하여야 함</li> </ul>
납품대금 지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위탁기업은 납품 검사 여부와 관계없이 납품대금 지급기일을 물품등을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의 최단기간으로 정해야 하며, 지급기일을 약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물품등의 수령일을 대금지급기일로 봄</li> <li>수탁기업은 물품등의 제조를 위탁받은 후 공급원가 변동으로 납품대금 조정이 불가피한 경우 위탁기업에 납품대금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음</li> </ul>
검사 및 불합격 통보 의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위탁기업은 객관적이고 타당성 있는 검사기준을 정해 수탁기업의 납품 물품을 신속히 검사하고, 검사 결과 불합격한 물품에 대해서는 불합격 사유를 문서로 통보해야 함</li> </ul>
납품대금 결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위탁기업은 수탁기업의 귀책사유가 없는데도 물품등의 수령을 거부하거나 납품대금을 깎아서는 안됨</li> <li>위탁기업은 수탁기업이 납품하는 물품등과 같은 종류이거나 유사한 물품등에 대하여 통상적으로 지급되는 대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격으로 납품대금을 정해서는 안됨</li> </ul>
발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물품등에 흠이 없는데도 정당한 사유 없이 발주물량을 통상적으로 발주하는 수량보다 현저히 감소시키거나 발주를 중단해서는 안됨</li> <li>물품등의 제조를 의뢰한 후 그 제조된 물품등에 대한 발주를 정당한 사유 없이 기피해서는 안됨</li> </ul>
기술자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정당한 사유 없이 기술자료 제공을 요구해서는 안됨</li> <li>기술자료의 임치를 요구한 수탁기업에 불이익을 줘서는 안됨</li> <li>취득한 수탁기업의 기술자료를 부당하게 자기 또는 제3자를 위해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해서는 안됨</li> </ul>



## 4. 상생협력법 해설

### 4.3. 상생협력법 위반 시 제재

#### 3배 손해배상

- 위탁기업이 수탁기업의 기술을 부당하게 유용하거나 수탁기업이 위탁기업의 상생협력법 금지행위를 관계 기관에 고지하는 행위 등을 한 것을 이유로 수탁기업에 불이익을 주어 손해를 입은 자가 있는 경우에는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하지 않는 이상 손해를 입은 자에게 발생한 손해의 3배 범위에서 배상책임을 짐

#### 공정위에 대한 조치요구

-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위탁기업이 제21조, 제22조, 제22조의2, 제23조, 제2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사실이 있고 그 위반사실이 하도급법, 공정거래법에 따른 금지행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정위에 필요한 조치를 해 줄 것을 요구해야 함

#### 입찰참가자격제한

-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상생협력법 제21조, 제21조의2제1항, 제22조, 제22조의2, 제23조 또는 제2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위탁기업에 대해 벌점을 부과할 수 있고, 그 벌점이 일정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관계 중앙관서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음

#### 형사 처벌

- 타인의 기술자료를 절취 등 부정한 방법으로 입수하여 기술자료의 임치등록을 한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그 재산상 이득액의 2배 이상 10배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음
-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사업조정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음
- 비밀유지의무를 위반하거나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시정명령 불이행 공표 후 1개월이 지날 때까지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음
- 양벌규정에 따라 법인도 그 대표자 등과 함께 처벌

#### 과태료

- 일시정지명령을 위반한 자에게는 1억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
- 약정서를 발급하지 않거나 비밀유지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



## 5. 부정경쟁방지법 해설

### 5.1. 부정경쟁방지법상의 영업비밀 침해금지

#### 5.1.1. 부정경쟁방지법상 영업비밀의 의의

##### ■ 영업비밀의 침해 행위

##### - 의의

- ✓ “영업비밀”이란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않고 독립된 가치를 지니는 것으로써 비밀로 관리된 생산방법, 판매방법, 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를 의미

##### - 영업비밀 침해 행위

1. 절취, 기망, 협박, 그 밖의 부정한 수단으로 영업비밀을 취득하는 행위 또는 그 취득한 영업비밀을 사용하거나 공개(비밀을 유지하면서 특정인에게 알리는 것을 포함)하는 행위
2. 영업비밀에 대하여 부정취득행위가 개입된 사실을 알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하고 그 영업비밀을 취득하는 행위 또는 그 취득한 영업비밀을 사용하거나 공개하는 행위
3. 영업비밀을 취득한 후에 그 영업비밀에 대하여 부정취득행위가 개입된 사실을 알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하고 그 영업비밀을 사용하거나 공개하는 행위
4. 계약관계 등에 따라 영업비밀을 비밀로서 유지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자가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그 영업비밀의 보유자에게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그 영업비밀을 사용하거나 공개하는 행위
5. 영업비밀이 위 4.에 따라 공개된 사실 또는 그러한 공개행위가 개입된 사실을 알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하고 그 영업비밀을 취득하는 행위 또는 그 취득한 영업비밀을 사용하거나 공개하는 행위
6. 영업비밀을 취득한 후에 그 영업비밀이 위 4.에 따라 공개된 사실 또는 그러한 공개행위가 개입된 사실을 알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하고 그 영업비밀을 사용하거나 공개하는 행위



## 5. 부정경쟁방지법 해설

### 5.1. 부정경쟁방지법상의 영업비밀 침해금지

#### 5.1.2. 영업비밀과 하도급법상 기술자료의 비교

##### 부경법상 영업비밀 정의

\*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 제2호)

“영업비밀”이란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않고 독립된 가치를 지니는 것으로서

① 비공지성

② 경제적 유용성

비밀로 관리된 생산방법, 판매방법, 그 밖에

③ 비밀관리성

영업 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를 뜻함

##### 하도급법상 기술자료 정의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5항)

“기술자료”란 합리적인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① 비밀관리성

제조·수리·시공 또는 용역수행 방법에 관한 자료,

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자료를 뜻함

② 경제적 유용성

- 하도급법 상 기술자료는 비공지성을 요건으로 하지 않음
- 정당한 사유 없는 경영상 정보 요구는 부당한 경영간섭에 해당(하도급법 제18조)



## 5. 부정경쟁방지법 해설

### 5.1. 부정경쟁방지법상의 영업비밀 침해금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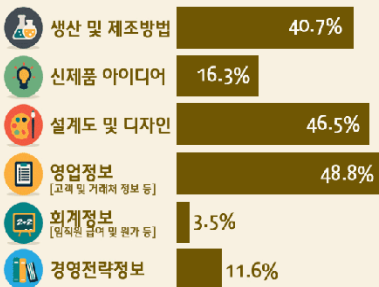
#### 5.1.3. 영업비밀 침해 유형

- 영업비밀은 임직원 이직과 거래 관계에서 주로 유출
- 유출 시 매출액 감소나 대외 이미지 하락과 같은 피해 발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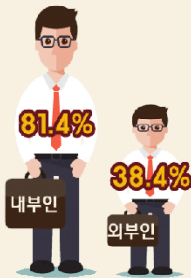
### 국내외 영업비밀 피침해 실태

#### 01. 국내에서의 영업비밀 피침해 실태 [출처: 2016년도 우리나라 기업의 국내외 영업비밀 피침해실태조사, 특허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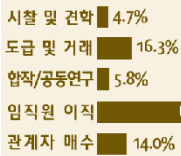
##### 영업비밀 유출 종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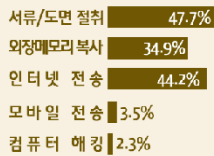
##### 영업비밀 유출 주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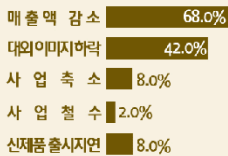
##### 영업비밀 유출 경로



##### 영업비밀 유출 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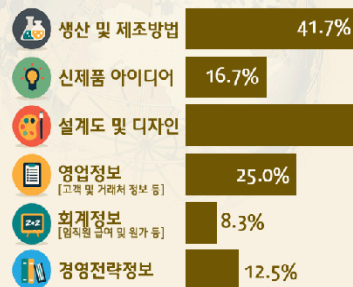


##### 영업비밀 유출 피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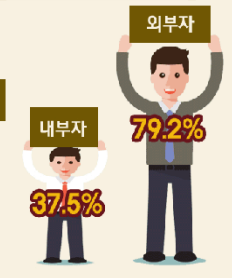


#### 02. 해외에서의 영업비밀 피침해 실태 [출처: 2016년도 우리나라 기업의 국내외 영업비밀 피침해실태조사, 특허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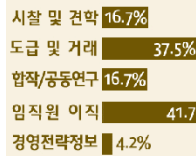
##### 영업비밀 유출 종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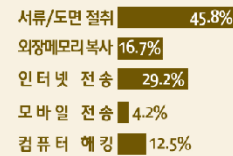
##### 영업비밀 유출 주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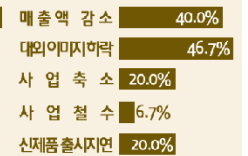
##### 영업비밀 유출 경로



##### 영업비밀 유출 방법



##### 영업비밀 유출 피해



<그림 출처: 특허청 영업비밀보호센터>



## 5. 부정경쟁방지법 해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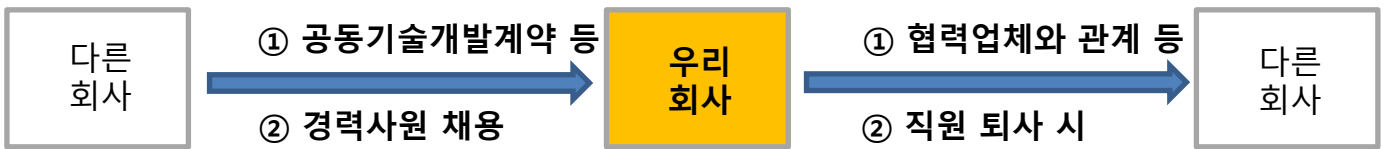
### 5.1. 부정경쟁방지법상의 영업비밀 침해금지

#### 5.1.3. 영업비밀 침해 유형

#### [영업비밀 침해·유출 도식]

##### [ 정보 유입 ]

##### [ 정보 유출 ]



↘ 경력사원 채용 과정에서 타사 영업비밀 침해가 발생하는 경우

↘ 권한 없는 타사 임직원 또는 비공식적 경로로 정보를 취득, 사용한 경우

↘ 경쟁사의 임직원이었던 자와 고문/자문/컨설팅 계약을 맺어 타사 영업비밀 정보 수집하는 경우

↘ 협력사로부터 제공받은 자료를 제공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 협력사에 대하여 비밀유지의무를 부담 하는 자료를 제3자에게 제공함으로써 영업비밀을 유출하는 경우

↗ 내부 임직원이 영업비밀 해당 자료를 외부 제3자에게 제공하여 영업비밀 유출 발생하는 경우

↗ 타사와 공동연구개발 진행 과정에서 비밀유지 약정 등을 체결하지 않고 회사 기술정보 등을 타사에 제공하는 경우

↗ 퇴사자가 재직 중 취득한 경영정보 등을 사용하여 퇴사 후 관련 영업 등을 하는 경우

↗ 영업비밀 해당하는 회사의 기술정보에 회사와 무관한 제3자 접근이 가능하여 영업비밀 유출 발생하는 경우



## 5. 부정경쟁방지법 해설

### 5.1. 부정경쟁방지법상의 영업비밀 침해금지

#### 5.1.3. 영업비밀 관련 법령 비교

구분	하도급법(공정위)/ 상생협력법(중기부)	부정경쟁 방지법(특허청)
목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수급사업자의 기술보호</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부정경쟁행위방지 및</li> <li>타인의 영업비밀 침해 방지</li> </ul>
보호 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기술자료(=기술정보)</li> <li>* 경영상의 정보는 별도 규정</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타인의 상호, 상표, 아이디어</li> <li>영업비밀(기술정보+경영정보)</li> </ul>
요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비밀관리성</li> <li>경제적유용성</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비밀관리성</li> <li>경제적유용성</li> <li>비공지성</li> </ul>
금지 행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절차: 기술자료요구서 미발급</li> <li>행위: 기술자료 유출, 유용</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부정경쟁행위 : 타인의 상호, 아이디어등 침해</li> <li>영업비밀 침해행위 : 부정취득, 사용, 공개</li> </ul>
처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절차위반: 과징금</li> <li>유용행위: 고발</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10년 ↓ 징역 또는 5억원 ↓ 벌금</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양벌규정</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양벌규정</li> </ul>
민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징벌적손해배상(3배)</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징벌적손해배상(3배)</li> </ul>



## 5. 부정경쟁방지법 해설

### 5.1. 부정경쟁방지법상의 영업비밀 침해금지

#### 5.1.4. 영업비밀 관련 사례

#### ['듀폰' 대 '코오롱' 소송 ('11.~'15.)]

##### • 사건 개요

- ✓ 코오롱이 전직 듀폰 직원을 컨설턴트로 채용하여 듀폰 영업비밀(아라미드 소재)을 부정 취득·사용하였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 ✓ 해당 직원에 대한 압수수색에서, 듀폰에 반납했다고 한 자료가 해당 직원 컴퓨터에 있었으며, 이를 코오롱 직원에게 이메일로 전송한 증거도 발견됨
- ✓ 미 법원은 코오롱의 영업비밀침해를 인정하여 약 9억 달러의 손해배상 및 전 세계에서 20년 간 관련 제품 생산·판매 금지를 명하였고, 코오롱이 배상금 3억 달러 지급 조건으로 합의
- ✓ 코오롱은 별도로 검찰에 벌금 8,500만 달러 납부
- ✓ 결과적으로, 코오롱의 5년 간 아라미드 수출액은 30억원에 불과하나 이 사건 해결 과정에서 4,000억원 이상을 지출



## 5. 부정경쟁방지법 해설

### 5.1. 부정경쟁방지법상의 영업비밀 침해금지

#### 5.1.4. 영업비밀 관련 사례

##### ['신일철주금' 대 '포스코' 소송 ('12.~'15)]

- 신일철주금이 포스코가 자사 퇴직 사원을 고문으로 채용해 방향성 전기강판 기술을 빼돌렸다고 일본 및 미국 법원에 1조원 규모의 소를 제기함
- 포스코는 영업비밀 및 특허침해 합의금 명목으로 신일철주금에 3,000억원을 지급하기로 합의하고 분쟁 종결
  - ☞ 특허로 공개된 기술이어도 명세서에 공개되지 않은 세부적 노하우는 영업비밀로 보호 가능

##### ['LG화학' 대 'SK이노베이션' 분쟁('19.~'21)]

- 자동차용 2차전지 연구개발 등을 담당하던 LG화학 직원들이 2년 동안 76명 이직, LG화학은 'SK이노베이션이 핵심 인력과 기술을 빼갔다'며 ITC(미 국제무역위원회) 등에 제소.
- 조사 시, SK 내부에 “각자 PC, 메일함, 팀룸에 경쟁사 관련 자료는 모두 삭제 바랍니다. PC 검열 및 압류 들어 올 수 있으니... 본 메일도 조치 후 삭제 바랍니다.”는 이메일이 존재하였음 확인.
- 양사 ITC 최종 결정에 따라 아래 조건으로 최종 합의
  - ▲ 국내외 모든 분쟁의 상호 취하
  - ▲ 현재 소송 중인 특허·영업비밀과 관련해 발생한 모든 책임면제와 영구적인 라이선스
  - ▲ 양사 특허에 대해 향후 10년간 원칙적 분쟁송합의
  - ▲ 이에 대한 대가로 LG에너지솔루션에게 일시금 1조원과 총 1조원 한도의 로열티 지급



## 5. 부정경쟁방지법 해설

### 5.1. 부정경쟁방지법상의 영업비밀 침해금지

#### 5.1.5. 영업비밀 관련 FAQ

##### Q1

- 법규상 영업비밀 침해 행위에는 어떠한 행위들이 있는지?

##### A1

✓ 부정경쟁방지법상 "영업비밀 침해행위"란 다음 어느 하나의 행위를 말함

가. 부정한 수단으로 영업비밀을 취득/사용/공개하는 행위

나. 부정취득행위 개입된 영업비밀임을 알면서 or 중과실로 알지 못하고 취득·사용·공개하는 행위

다. 영업비밀을 취득한 후 부정 취득행위의 개입을 알면서 또는 중과실로 알지 못하고 이를 사용, 공개하는 행위

라. 비밀유지 의무 있는 자가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영업비밀 보유자에게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이를 사용, 공개하는 행위

마. '라'의 영업비밀임을 알면서 또는 중과실로 알지 못하고 취득, 사용, 공개하는 행위

바. 영업비밀 취득 후 '라'의 영업비밀임을 알면서 또는 중과실로 알지 못하고 사용, 공개하는 행위

※ 공개: 비밀을 유지하면서 특정인에게 알리는 것을 포함

##### Q2

- 영업비밀 인정 요건인 비밀관리성은 어떤 경우에 인정되는가?

##### A2

✓ 비밀등급 분류·표시: 대상 정보 비밀로 분류, 정보 자체에 비밀표시, 전자적인 파일의 경우 파일명에 비밀등급이나 비밀문서임을 표시한 경우 등

✓ 접근대상자 한정: 대상 정보 접근·사용 가능한 사람을 한정하였는지 등

✓ 접근대상자 비밀유지의무 부과: 정보 접근 가능자 및 그 사용자에게 정보를 비밀로 관리하도록 고지 또는 서약·약정을 체결하였는지 등

✓ 접근방법 제한: 정보를 시건장치 또는 출입 통제된 장소에 보관, 전자파일의 암호 설정 또는 보안 시스템 보관 여부 등

## IV. 공정거래 체크리스트

1. 체크리스트 안내
2. 한화에너지  
CP 자가점검 체크리스트
3. 공정거래법 체크리스트
  - 2.1. 부당공동행위 관련
  - 2.2. 불공정거래행위 관련
  - 2.3. 부당지원행위 관련
4. 하도급법 체크리스트
5. 기타법령 체크리스트
  - 4.1. 약관 관련 자율점검
  - 4.2. 상생협력법 관련 자율점검
6. 영업비밀 체크리스트



## 1. 체크리스트 안내

- 본 장의 체크리스트는 임직원이 회사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스스로 공정거래 관련 법규 위반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회사에 발생 가능한 법규 위반 Risk를 사전에 예방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 관련 업무를 수행하시는 임직원 여러분들께서는 본 장의 체크리스트를 적극 활용하시어 본인의 업무가 공정거래 관련 법규에 위반되는 사항이 있는지 사전/사후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만, 해당 체크리스트는 임직원의 자율점검을 위한 기본적인 Check-Tool 이며 그 결과가 곧 관련 사안에 대한 최종적인 법률적 판단 결과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므로, 개별 사안에 대한 정확한 공정거래 관련 법규 위반 여부는 CP 주관부서, 법무팀 등 법무부서에 문의하시어 최종적인 법률 검토 의견을 제공받아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 현재 본 편람에서 제공하고 있는 체크리스트는 다음과 같습니다.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CP자가점검 체크리스트
  3. 공정거래법 체크리스트
  4. 하도급법 체크리스트
  5. 영업비밀 보호 체크리스트
  6. 기타 법령 체크리스트



## 2. 한화에너지 CP 자가점검 체크리스트

### 공정거래 관련 법령 업무연관성 등 관련 자율점검

구분	점검 항목
1	• 우리 팀은 외부업체, 협력업체 등에 제조, 수리, 건설, 용역 등을 위탁하거나, 관련 업무를 한다.
2	• 우리 팀은 외부업체, 협력업체 등에 제조, 수리, 건설, 용역 등을 위탁하거나, 관련 업무를 한다.
3	• 우리 팀은 외부업체, 협력업체에 대한 대금, 대금 단가, 대금 결제 조건 등을 협상하거나 결정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4	• 우리 팀은 외부업체, 협력업체에 자료 제출 등을 요구하거나 제공받는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5	• 우리 팀은 외부업체, 협력업체와 협상, 협력, 소통하는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6	• 우리 팀은 외부업체, 협력업체에 작업 지시를 내리거나, 결과물을 검수 및 수령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7	• 우리 팀 업무에 <b>동종업체</b> , 경쟁업체 등과 업무상 협의, 미팅, 교류하는 것이 수반된다.
8	• 우리 팀 업무로 계열사, 자회사 등과 거래한 적이 있거나, 향후 업무상 거래할 가능성이 있다.
9	• 우리 팀이 체결하는 계약이 상대 업체의 운영방식이나 수익구조 등 상대 업체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다.
10	• 최근 3년 내에 우리 팀 업무로 인하여 거래처, 협력업체 등과 이견, 마찰, 분쟁이 발생한 적이 있거나, 향후 발생할 우려가 있다.
11	• 우리 팀 업무는 공정거래법, 하도급법, 부정경쟁방지법 등과 연관되어 있거나, 교육 필요성이 있다.
12	• 기타 의견 및 건의사항



### 3. 공정거래법 체크리스트

#### 3.1. 부당공동행위 관련 자율점검

구분	점검 항목
협회 등 참석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동종업계 협회, 사업자단체 등의 모임에 참석하고 있는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해당 모임 중 가격, 생산량, 거래지역, 거래상대방, 입찰가격 등 결정 관련 주제가 언급 된 적이 있는가?</li> <li>해당 주제 언급 시 관련 협의 또는 합의가 진행되었는가?</li> <li>협의, 합의가 진행되었다면 이에 찬성하거나 의사표시를 한 적이 있는가?</li> </ul> </li> </ul>
경쟁사 직접 접촉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경쟁사와 정기/비정기적인 교류나 모임을 하고 있는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모임 중 가격, 생산량, 거래지역/상대방, 입찰가격 등 결정 관련 주제로 협의/합의 가 진행된 적이 있는가?</li> <li>협의/합의가 있었다면 그러한 협의/합의시 찬성 하거나 의사표시 한 적이 있는가?</li> </ul> </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경쟁사와 만날 수 밖에 없는 공식적인 회의 시 상호 협력하고자 하는 사업에 대한 가격정보, 조건 등을 교환하고 기록을 유지하고 있는가?</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구체적인 합의(서면, 구두, 명시적, 묵시적 합의를 모두 포함) 내용을 당사의 가격 등 결정에 반영한 적이 있는가?</li> </ul>
경쟁사 간접 접촉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원재료 공급업체(또는 협력업체)의 가격인상 요청에 대해 경쟁사와 합의하여 가격인상 요청에 응하지 않거나, 경쟁사와 합의하여 가격 인상폭을 정하거나, 또는 특정 업체로부터만 구매하기로 합의한 적이 있는가?</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직접적인 교류 외의 방법(전화, 팩스, 이메일, 영상미팅 기타. 이하 '간접 접촉')으로 경쟁사와 접촉한 적이 있는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간접 접촉 시 가격 등에 대한 구체적인 협의나 합의가 있었던 적이 있는가?</li> <li>간접 접촉 시 주고받은 정보가 당사 가격결정에 반영된 적이 있는가?</li> </ul> </li> </ul>
자료 점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당사 내부 문건(보고서, 회의록, 배포자료 등) 작성시 경쟁사와의 "협력", "공동대응", "정보공유", "교류"등의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가?</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공문, 이메일, 팩스 기타 방법으로 경쟁사와 주고받은 문건에 "가격 등" 결정을 위한 요청사항이나 협의내용이 포함된 적이 있는가?</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오해를 살 수 있는 표현(가격협의, 공동대응, 정보공유, 교류 등)이 적힌 이메일, 수첩, 달력, 메모 등을 작성해 보관하고 있는가?</li> </ul>



### 3. 공정거래법 체크리스트

#### 3.1. 부당공동행위 관련 자율점검

구분	점검 항목
입찰가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다른 사업자와 <b>공동으로 최저입찰가격 등을 결정</b>하거나 이에 응한 적이 있는가?</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타 사업자와 <b>입찰가격을 협의</b>하거나 관련 <b>정보 교환·제공</b> 통해 입찰가격을 결정한 적 있는가?</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입찰 참가 시 타 사업자 산출내역서를 복사·대신 작성해 주는 등 방법으로 입찰한 적이 있는가?</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예정가격 인상을 목적으로 예정금액보다 높은 수주 금액을 정한 후 고의적으로 유찰시킨 적이 있는가?</li> </ul>
낙찰 예정자 사전 결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수주예정자가 낙찰받도록 하기 위해 다른 입찰참가자와 공동으로 수주예정자보다 입찰가격을 높게 응찰하는 행위를 한 적이 있는가?</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개별 사업자의 지명회수, 수주실적 등을 정리해 낙찰예정자 선정의 우선순위를 정하고 입찰 참가하려는 다른 사업자들에게 이에 협조하도록 강요하는 행위를 한 적이 있는가?</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타 업체에게 낙찰 협조 대가로 차기 사업발주시 낙찰의 협조, 금품지급 등의 이익을 주겠다고 약정하는 방법에 의해 낙찰자를 사전 결정하는 행위를 한 적이 있는가?</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입찰에 참가하려는 사업자에 대하여 수주예정자 결정에 따르도록 강요하고 협력하지 않는 사업자에 대해 입찰참가를 방해하는 행위를 한 적이 있는가?</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특정 입찰에 대한 연고권 주장을 통해 특정 업체에 낙찰이 이루어지도록 하거나 이에 협조하는 행위를 한 적이 있는가?</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특정 업체와 사업을 교대로 수주하거나 다른 입찰참가업체들의 산출내역서를 대신 작성해 주며 입찰에 참가하게 하거나 입찰내역서를 첨부하지 않고 입찰에 참가해 특정업체의 낙찰을 밀어주는 행위를 한 적이 있는가?</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산출내역서를 전문적으로 작성하는 용역업체에 다른 사업자의 산출내역서 작성을 의뢰하고 이를 참여사업자에게 배분하는 행위를 한 적이 있는가?</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수주예정자 선정과 관련해 타 사업자와 공동으로 낙찰예정자를 결정한 뒤 이를 관련 사업자에게 통지하고 협조를 요구하는 행위를 한 적이 있는가?</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낙찰자 선정 협조의 대가로 낙찰자에게 사례금·특별회비·부과금 등을 받은 적 있는가?</li> </ul>



### 3. 공정거래법 체크리스트

#### 3.1. 부당공동행위 관련 자율점검

구분	점검 항목
경쟁계약의 수의계약 의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타 사업자와 공동으로 당해 입찰을 수의계약으로 유도할 것을 합의하고 입찰참가자 모두 예정가격보다 높은 가격에 의해 계속적으로 유찰시키거나 입찰참가를 의도적으로 거부하는 행위를 한 적이 있는가?</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특정 사업자의 수주를 목적으로 몇몇 사업자와 공모하여 들러리 등 형식적으로 입찰에 참여하였다가 도중에 입찰을 포기하여 특정사업자 이외의 다른 사업자가 입찰에 참여하는 것을 실질적으로 봉쇄하여 수의계약으로 유도하는 행위를 한 적이 있는가?</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타 사업자와 공동으로 객관적 기준없이 특정한 사업자를 입찰계약과 관련하여 부당 업자 또는 불량업자로 구분하여 관련부서에 통보하거나 대외공표함으로써 입찰참여를 방해한 후 수의계약을 유도하는 행위를 한 적이 있는가?</li> </ul>
수주물량 등 결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타 사업자와 공동으로 회합 등을 통해 수주물량을 결정하거나 입찰참가자간 수주물량배분을 결정하는 행위를 한 적이 있는가?</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타 사업자들과 공동으로 수주물량 배분 등의 결정을 하면서 비협조적인 사업자에 대해 입찰참가 방해 또는 기타 불이익 제공 등의 차별적 취급을 하는 행위를 한 적이 있는가?</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단독으로 사업을 수행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물량에 대하여만 응찰하여 다른 사업자와의 공동 수주를 유도하는 행위를 한 적이 있는가?</li> </ul>
경영간섭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타 사업자와 공동으로 사전에 입찰참여자로서 하여금 수주물량의 일부를 특정 사업자에게 하도급 형태로 분할하는 조건이나 특정사업자로부터의 자재구입 사용조건 등을 정해 입찰에 참여하도록 한 적이 있는가?</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낙찰예정자로 하여금 계약금액의 일정률을 기부금이나 특별회비 등으로 납부하도록 하여 이익의 일부를 공동사용 또는 배분하도록 한 적이 있는가?</li> </ul>
정보교환 담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다른 사업자와 정보를 주고받을 것을 합의하고 가격, 생산량, 원가 등의 경쟁상 민감한 정보를 알리는 행위(정보교환 행위)를 한 적이 있는가?</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정보교환 행위가 있는 경우, 가격 인상, 생산량 축소 등 시장의 경쟁을 제한할 목적으로 정보교환 행위를 하였는가?</li> </ul>



### 3. 공정거래법 체크리스트

#### 3.2. 불공정거래행위 관련 자율점검

##### 3.2.1. 거래 개시 단계

구분	점검 항목
기타의 거래거절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단독으로 자기와 거래하기 위해서 자신이 지정하는 사업자의 물품·용역을 구입할 것을 의무화하고 이에 응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거래개시를 거절하고 있는가?</li> </ul>
가격차별·거래조건차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거래개시 과정에서 자신의 시장지위 강화를 위하여 합리적 이유 없이 낮은 가격 또는 유리한 거래조건을 설정함으로써 경쟁사업자를 배제할 가능성이 있는 행위를 하고 있는가?</li> </ul>
집단적 차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특정사업자와 거래를 개시함에 있어서 합리적 이유 없이 그 사업자에 대해서만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가격, 거래조건, 거래내용 등에 차별을 설정하고 있는가?</li> </ul>
계열회사를 위한 차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자신의 계열회사 및 비계열회사와 동시에 거래를 개시하면서 비계열회사에 대하여 현저히 불리한 거래조건을 설정하고 있는가?</li> </ul>
부당 이익에 의한 고객유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경쟁사업자의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도하기 위하여 자신의 상품이나 용역을 구입할 경우에 정상 거래관행에 비추어 부당하거나 과도한 리베이트를 지급(제의)하고 있는가?</li> </ul>
위계 의한 고객유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경쟁사업자에 대한 영업, 품질, 기술력 등에 관해 사실과 다른 허위 정보를 발주자에게 제공하여 당해 사업을 수주하고 있는가?</li> </ul>
거래방해에 의한 고객유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경쟁사업자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도하기 위하여 경쟁사업자와 고객 사이에 계약이 성립되는 것을 저지하거나 해지되도록 유도하고 있는가?</li> </ul>
끼워팔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거래상대방에게 인기 있는 상품이나 용역을 판매 하는 조건으로 인기 없는 상품, 용역을 함께 구입하도록 설정하고 있는가?</li> </ul>
기타의 거래강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자신 또는 계열회사의 협력업체인 거래상대방과 거래를 개시함에 있어서 정상적인 거래관행에 비추어 부당하게 불리한 거래조건을 제시하고 이를 충족시키지 못할 경우 거래물량을 축소하거나 협력업체에서 탈락시킬 것을 고지하는 등 불이익을 제공하고 있는가?</li> </ul>
배타조건부 거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자신이 해당 상품에 대한 구매력이 상당하고 경쟁 사업자는 대체 거래선 확보가 곤란한 상태에서 거래상대방에게 해당 상품을 구입하는 조건으로 경쟁사업자에 공급하지 말 것을 요구하고 있는가?</li> </ul>
인력의 부당 유인·채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특정사업자와 거래를 개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쟁사업자의 핵심인력을 과도한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할 제의를 하고 있는가?</li> </ul>
기타의 사업 활동 방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거래상대방과 거래를 개시하면서 거래상대방의 특정시설을 다른 사업자들은 이용할 수 없도록 하는 조건을 부과하고 있는가?</li> </ul>



### 3. 공정거래법 체크리스트

#### 3.2. 불공정거래행위 관련 자율점검

##### 3.2.2. 거래 계속 단계

구분	점검 항목
공동의 거래거절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자기와 경쟁관계에 있는 다른 사업자들과 공동으로 계속적인 거래관계에 있는 특정 사업자에 대한 거래를 중단하거나 거래하는 상품이나 용역의 수량 및 내용을 현저히 제한하고 있는가?</li> </ul>
기타의 거래강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자신 또는 계열회사의 협력업체인 거래상대방에게 정상적인 거래관행에 비추어 부당하게 불리한 거래조건을 제시하고 충족시키지 못할 경우 거래 물량을 축소하거나 협력업체에서 탈락시킬 것을 고지하는 등 불이익을 제공하고 있는가?</li> </ul>
기타의 거래거절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자기 또는 자기와 밀접한 관계에 있는 사업자와 독점적으로 거래하는 사업자와는 거래 하면서, 경쟁사업자와도 거래하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거래를 중단·제한하고 있는가?</li> </ul>
가격차별·거래조건차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거래상대방 중 일부 사업자들에 대하여 할인율, 수수료, 거래조건 등에 있어서 유리한 취급을 하고 있는가?</li> </ul>
집단적 차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다른 사업자들과 공동하여 특정사업자에 대하여 가격이나 거래조건을 차별하는 계약내용으로 변경하거나 그러한 차별행위를 하고 있는가?</li> </ul>
계열회사를 위한 차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계열사가 유리한 지위에 설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계열회의 경쟁사업자에게 원재료를 불리한 거래조건으로 계약내용을 변경하거나 그러한 조건으로 공급하고 있는가?</li> </ul>
계속적 부당판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당해 시장에서 경쟁자 및 신규진입을 시도하는 사업자를 퇴출 및 저지시킬 목적으로 제조원가에 미달하는 가격으로 계속하여 상품이나 용역을 공급하고 있는가?</li> </ul>
일시적 부당판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자신의 상품을 1회 또는 단기간(1주일 이내)에 걸쳐 제조원가나 매입원가를 하회하는 현저히 낮은 대가로 공급하고 있는가?</li> </ul>
부당고가매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경쟁사업자나 신규진입자의 사업에 필요한 상품이나 용역 및 필수적인 요소를 통상 거래가격보다 높은 가격으로 매점하고 있는가?</li> </ul>
부당 이익에 의한 고객유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자신의 제품과 경쟁사업자의 제품을 판매하는 판매업자에게 자신의 제품을 우선하여 판매하도록 음성적인 리베이트를 제공하고 있는가?</li> </ul>
위계에 의한 고객유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자신의 제품과 경쟁사업자의 제품을 판매하는 판매업자에게 경쟁사업자에 대한 근거 없는 사실을 유포하여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하고 있는가?</li> </ul>
끼워팔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거래상대방에게 신제품을 판매하면서 구제품이나 재고품을 함께 구입하도록 계약을 변경하거나 그러한 구입을 강요하고 있는가?</li> </ul>
구입강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계속적 거래관계인 판매업자에게 주문하지도 않은 상품을 임의로 공급하고 반품을 허용하지 않았는가?</li> </ul>
이익제공강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거래상대방에게 자신이 구입하는 물량의 일정비율만큼 무상으로 제공하도록 요구하고 있는가?</li> </ul>



### 3. 공정거래법 체크리스트

#### 3.2. 불공정거래행위 관련 자율점검

##### 3.2.2. 거래 계속 단계

구분	점검 항목
불이익 제공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거래상대방과 거래를 함에 있어서 원가계산상의 착오로 인한 경우에 사업자가 해당 계약금액을 무조건 환수 또는 감액할 수 있다는 조건을 설정하고 있는가?</li> </ul>
경영간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대리점 계약을 체결하면서 당초 계약 내용과 달리 취급 품목, 가격, 요금 등에 관하여 지도를 하거나 자신의 허가 또는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는가?</li> </ul>
배타조건부 거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거래상대방에게 해당 제품에 대한 수리 및 보수는 오직 자신과 거래하도록 요구하고 있는가?</li> </ul>
거래/거래 상대방 제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사업자는 거래상대방에게 자신의 상품을 특정인이나 특정지역에 한하여 판매하도록 요구하고 있는가?</li> </ul>
기술의 부당 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거래상대방의 기술을 무단으로 이용하여 거래상 대방의 생산이나 판매활동에 심각한 곤란을 초래하고 있는가?</li> </ul>
인력 부당 유인·채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거래상대방의 핵심인력을 과도한 이익을 제공하거나 이를 통해 채용함으로써 거래상대방의 사업활동에 현저한 곤란을 초래하고 있는가?</li> </ul>
거래처 이전 방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거래처 이전 의사를 밝힌 거래상대방에게 기존에 구입한 물량을 일방적으로 반품처리하거나 담보 해제를 해주지 않는 등으로 거래처이전을 방해하고 있는가?</li> </ul>
기타의 사업 활동 방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거래상대방에게 경쟁관계에 있는 다른 사업자에 대하여 근거 없는 비방 전단을 살포 하고 있는가?</li> </ul>

##### 3.2.3. 거래 종료 단계

구분	점검 항목
기타의 거래거절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자기의 제품과 경쟁사업자 제품을 모두 취급하는 거래상대방에게 경쟁사업자 제품을 취급하지 않을 것을 요구하는 등 부당한 요구를 하고, 상대방이 이를 지키지 않았음을 이유로 거래를 일방적으로 종료하고 있는가?</li> </ul>
불이익 제공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거래상대방에 대한 자신의 거래상 지위를 이용하여 거래상대방에게 합리적 이유 없이 거래거절을 하여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하고 있는가?</li> </ul>
불이익 제공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거래상대방이 정당하게 거래종료를 요청함에도 자신의 거래상 지위를 이용하여 거래상대방에게 부당한 조건을 제시하고 충족하지 못할 경우에 거래종료를 거부할 의사를 표시하고 있는가?</li> </ul>



### 3. 공정거래법 체크리스트

#### 3.3. 부당지원행위 관련 자율점검

구분	점검 항목
<b>수의계약 가능 여부</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해당 거래가 당사와 동일 기업집단 소속인 계열회사와의 거래인지?</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천재지변, 긴급한 행사, 원자재 가격 급등락 등 경쟁입찰에 부칠 여유가 없거나 경쟁입찰에 부쳐서는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인지?</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아래에 해당하는 계약인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i) 특허, 실용신안권 등으로 보호되는 물품의 제조자와의 계약</li> <li>(ii) 해당 물품을 제조·공급한 자가 직접 그 물품을 설치·조립 또는 정비하는 경우</li> <li>(iii) 특정인의 토지·건물 등 부동산을 매입하거나 재산을 임차 또는 특정인에게 임대하는 경우</li> </ul> </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특정인의 기술이 필요하거나 해당 물품의 생산자가 1인 뿐인 경우 등 경쟁이 성립될 수 없는 경우인지?</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거래금액이 1억 원 미만인 경우로서 계약의 목적·성질에 비추어 경쟁입찰을 하는 것이 비효율적이라고 판단되는 경우인지?</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업집단의 이미지 통일 및 표준화 계획 또는 경영 정책상 통일성·일관성을 유지할 필요가 있는 경우인지?</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입찰공고 후 입찰자가 1인이거나 참가자가 없어 재공고 입찰을 진행하였으나 재차 참여자가 1인이거나 없는 경우인지?</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다른 자와의 거래로는 달성하기 어려운 비용절감, 판매량 증가, 품질개선, 기술개발 등 효율성 증대효과가 있거나, 다른 자와 거래할 경우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 또는 정보 등이 유출되어 경제적으로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를 초래하거나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인지?</li> </ul>
<b>사업기회 제공</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상대방 계열사에 영업권, 영업상 중요 자산, 자회사 주식 등을 양도하는 거래인지?</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공 대상 사업기회가 당사가 직접 수행 시 상당한 이익이 될 수 있는 경우인지?</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당사가 해당 사업기회를 수행할 능력이 없는지?</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업기회 제공에 대한 정당한 대가가 지급되었는지?</li> </ul>



### 3. 공정거래법 체크리스트

#### 3.3. 부당지원행위 관련 자율점검

구분	점검 항목
<p style="text-align: center;"><b>가격의 적정성 여부</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해당 거래가격은 정상가격과 비교하였을 때 적절한 수준인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정상가격: 시기, 종류, 규모, 기간, 신용상태 등이 유사한 상황에서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와의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으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의한 가격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비교 가격: 유사 상황에서 당사가 특수관계인 아닌 제3자와 거래 시 적용된 가격 혹은 제3자 간 거래에서 적용된 가격</li> <li>② 시장 가격: 객관적인 시장가격(가격지수, Index, report 등)</li> <li>③ 평가 가격: 감정평가를 통해 도출되는 가격</li> <li>④ 비교 견적가: 타 업체로부터 제시받은 견적 가격</li> <li>⑤ 기타 정상가격: 기타 정상가격으로 제시할 수 있는 기준</li> <li>⑥ 계속 거래 시 전년비 계약금액 변동분·변동률 등 구체적 변동 사유</li> </ol> </li> </ul> </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수의계약 건인 경우 거래 대상 계열사가 아닌 타 회사 견적을 통해 정상가격 여부를 확인·검토하는 절차를 거쳤는지?</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계열사간 거래가격이 공정거래법상 안전지대[정상가격과의 차이 7% 미만 &amp; 연간 거래총액 50억원(상품·용역거래는 200억 원) 미만인 경우] 범위에 해당하는지?</li> </ul>
<p style="text-align: center;"><b>효율성 존재 여부</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해당 계열사와의 거래 시 다른 자와의 거래로는 달성하기 어려운 비용절감, 판매량 증가, 품질개선, 기술개발 등 효율성 증대효과가 있는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효율성 증대효과 예시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전후방 연관관계인 계열사간 상품생산에 필요한 부품소재를 공급하는 경우</li> <li>② 산업연관성이 높은 계열회사로부터 필수 서비스를 공급하는 경우</li> <li>③ 일부 사업을 전문화된 계열사에 전담시키고 이를 그 계회사와 거래하는 경우</li> <li>④ 인적, 물적으로 협업 체계가 이미 구축되어 있는 경우</li> <li>⑤ 전문지식과 인력보유, 대규모·연속사업의 일부 또는 계약이행 신뢰성 등을 고려하여 거래하는 경우</li> </ol> </li> </ul> </li> </ul>



### 3. 공정거래법 체크리스트

#### 3.3. 부당지원행위 관련 자율점검

<b>보안성 존재 여부</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해당 계열사와 거래하지 않고 다른 자와 거래할 경우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 또는 정보 등이 유출되어 경제적으로 회복이 불가능한 피해를 초래 또는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인지?</li> <li>- 보안성 예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전사적 자원관리시스템, 공장, 연구개발시설 또는 통신기반시설 등 필수시설 구축·운영, 핵심기술의 연구·개발·보유 등과 관련된 경우</li> <li>② 거래 과정에서 영업·판매·구매 등과 관련된 기밀 또는 고객의 개인정보 등 핵심적인 경영정보에 접근 가능한 경우</li> </ul> </li> </ul>
구분	점검 항목
<b>통행세 거래</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거래상 역할이 없거나 미미한 다른 회사(계열사 포함)를 거래단계에 추가하거나 거쳐서 거래하는 경우인지?</li> <li>• 다른 회사(계열사 포함)를 거래 단계에 추가 또는 거쳐서 거래하면서 거래상 역할대비 과도한 대가를 지급하는 거래인지?</li> <li>• 당사가 거래 단계에 추가되어 다른 회사(계열사 포함)와 거래 시 실질적이고도 충분한 역할을 확보하고 수행하는지?</li> <li>• 당사가 거래 단계에 추가되어 다른 회사(계열사 포함)와 거래 시 당사가 지급받는 대가는 실제 확보한 역할 대비 과도하거나 지나치게 낮지는 않은지?</li> </ul>



## 4. 하도급법 체크리스트

### 4.1. 거래 개시 이전 ~ 계약 체결 단계 자율점검

#### 4.1.1. 거래 개시 이전 단계

구분	점검 항목
하도급 거래 해당 여부	• 해당 거래가 매입계약이고, 거래 상대방이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인지?
	• 해당 거래가 단순 상품 내지 상용품의 납품에 해당하는 거래인지?
	• 해당 거래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하도급 거래인지? - (건설 하도급) 건설업을 등록한 사업자(건설업자)가 그 업에 따른 건설 공사 전부 또는 일부를 건설업자에게 위탁하여 수행하는 거래 - (제조 하도급) 물품제조·판매·수리업자 또는 건설업자가 자신의 업을 위한 물품(범용품, 상용품 제외) 제조를 다른 사업자에게 위탁하여 수행하는 거래 - (용역 하도급) 지식·정보성과물의 작성 또는 역무의 제공을 업으로 하는 자(용역업자)가 자신의 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용역업자에 위탁하여 수행하는 거래 - (수리 하도급) 수리업자가 다른 수리업자에게 수리행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하여 수행하는 거래

#### 4.1.2. 계약 체결 단계

구분	점검 항목
사전 서면 발급	• 업체가 업무를 개시하기 전 또는 당사가 업체에 업무를 지시하기 이전에 목적물의 내용, 하도급대금 및 대금지급방법과 지급기일 등 중요사항을 기재하고 양 당사자 기명날인을 완료한 계약서면이 발급되었는지?
부당특약 설정 금지	• 하도급 계약 체결 시 공정위 표준 하도급계약서를 사용하여 체결하였는지?
부당특약 설정 금지	• 공정위 표준 하도급 계약서를 사용하지 않은 하도급 계약의 경우, 해당 계약서 내에 법령 등에 따라 당사가 부담할 비용을 수급사업자에게 전가하는 것 등과 같은 수급사업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거나 제한하는 내용의 약정이 포함되어 있는지?
물품 등의 구매 강제	• 목적물의 품질유지·개선 등 정당한 사유 외의 사유로 당사가 지정하는 물품·장비 또는 역무의 공급을 수급사업자에게 매입 또는 사용하도록 요구하였는지?
건설하도급 지급 보증	• 해당 하도급 거래가 건설 하도급인 경우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공사대금 지급 보증이 되었는지?



## 4. 하도급법 체크리스트

### 4.2. 계약 수행 단계 자율점검

#### 4.2.1. 계약 수행 단계

구분	점검 항목
선급금의 지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당사가 발주자로부터 선급금을 지급받은 경우 그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받은 선급금의 내용과 비율에 따라 수급사업자에게 선급금이 지급되었는지?</li> </ul>
부당위탁취소/수령거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위탁(발주) 이후 이를 임의로 취소(계약해지, 발주취소 등) 또는 변경(발주량 감축 등)하거나, 수급사업자가 제조 등을 수행하여 납품한 위탁목적물의 수령을 거부 하거나 지연하였는지?</li> </ul>
부당 결제 청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당사가 수급사업자에게 목적물 제조 등의 수행에 필요한 물품 등을 당사로부터 사게 하거나 귀사의 장비 등을 사용하게 하는 경우, 하도급대금 지급기일 전에 물품 구매대금이나 장비 사용의 대가를 지급하게 하거나, 당사가 구입 또는 사용하거나 제3자에 공급하는 조건보다 현저하게 불리한 조건으로 구매대금이나 사용대가를 지급하게 한 사실이 있는지?</li> </ul>
부당한 경제적 이익 제공요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수급사업자에게 귀사 또는 제3자를 위해 금전, 물품, 용역, 그 밖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도록 한 사실이 있는지?</li> </ul>
기술자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수급사업자에게 기술자료 요구한 경우 계약체결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기술자료를 요구 시 요구 목적, 권리귀속관계, 대가 등을 미리 협의하여 정한 후 그 내용을 적은 서면을 사전 협의 후 수급사업자에게 발급(양 당사자 기명날인 완료)하였는지?</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기술자료 수령 전 기술자료를 제공하는 수급사업자와 비밀유지에 관한 사항, 기술자료 보유 임직원 명단 등을 기재한 비밀유지계약을 체결하였는지?</li> </ul>
하도급대금 조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설계변경 또는 경제상황 변동 등을 이유로 도급계약금액이 증액되고 추가비용이 발생하였을 때, 추가 증액 금액의 내용과 비율에 따라 하도급대금이 증액되었는지?</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공급원가 변동에 따른 수급사업자의 하도급대금 조정신청이 있는 경우 그 신청에 대하여 10일 안에 수급사업자와 협의를 개시하였는지?</li> </ul>
경영간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하도급거래량을 조정하는 방법으로 수급사업자 경영에 간섭하거나, 수급사업자에 정당한 사유 없는 기술자료 해외 수출 제한·기술자료 수출을 이유로 한 거래 제한·당사/당사 지정 사업자와 거래하도록 구속·정당한 사유 없는 원가자료 등 경영상정보 요구 등의 행위를 하였는지?</li> </ul>



## 4. 하도급법 체크리스트

### 4.3. 하도급대금 지급 ~ 계약종료 단계 등 자율점검

#### 4.3.1. 하도급대금 대금 지급 단계

구분	점검 항목
하도급대금 지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하도급대금은 목적물 등의 수령일(건설위탁의 경우 인수일, 용역위탁의 경우 용역 수행 마친 날, 납품 등이 잦아 월 1회 이상 세금계산서 발행일을 정한 경우 그 정한 날)부터 60일 이내의 가능한 짧은 기한으로 정한 지급기일까지 지급되었는지?</li> <li>발주자로부터 준공금이나 기성금 등을 지급받은 날부터 15일(대금 지급 기일이 그 전에 도래하는 경우 그 지급기일) 이내에 하도급대금이 지급되었는지?</li> </ul>
지연이자 / 어음수수료 등 지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하도급대금을 어음으로 지급하는 경우에 어음을 교부한 날부터 어음의 만기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할인료가 어음교부일에 수급사업자에게 지급되었는지?</li> <li>하도급대금이 목적물 수령일부터 60일 또는 발주자로부터 대금 등을 지급받은 날로부터 15일이 지나서 지급되는 경우 수급사업자에게 지연이자가 지급되었는지?</li> </ul>
부당한 대물변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하도급대금을 물품으로 지급할 수밖에 없는 사정(당사 어음 또는 수표 부도, 은행 당좌거래 정지, 파산신청, 회생절차개시 등)이 없음에도 하도급대금을 물품으로 지급하는지?</li> </ul>

#### 4.1.4. 계약 종료 단계

구분	점검 항목
검사결과 통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납품 목적물에 대한 검사기준·방법을 서로 협의하여 정하고 목적물이 납품된 경우,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납품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검사 결과가 통지되었는지?</li> </ul>
부당반품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수급사업자의 귀책사유가 없음에도 목적물을 반품하였는지?</li> </ul>
부당 감액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정당한 사유가 없음에도 제조 등을 위탁할 당시 정했던 하도급대금을 이후에 감액하여 지급하였는지?</li> </ul>

#### 4.1.5. 기타 - 분쟁 발생 시

구분	점검 항목
불이익 제공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수급사업자가 하도급법 위반행위를 신고하거나 조정신청 또는 조사 협조하였다는 이유로 수급사업자에 수주기회를 제한하거나 거래정지 등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하였거나 또는 우회적으로 하도급법 적용을 회피하려 하였는지?</li> </ul>



## 5. 기타 법령 체크리스트

### 5.1. 약관 관련 자율점검

구분	점검 항목
계약 해제 관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업자에게 원자재 공급지연 등을 이유로 물품 인도 기일을 연기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있으나, 고객에게는 그러한 권한을 부여하지 않은 조항이 있는가?</li> <li>• 사업자가 계약 해제 의사를 통지한 때 곧바로 해제의 효력이 발생하도록 정한 조항이 있는가?</li> <li>• 계약 존속을 어렵게 할 정도가 아닌 고객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사업자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이 있는가?</li> </ul>
책임 관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업자의 귀책사유 유무와 관계없이 상품의 반품 또는 교환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조항이 있는가?</li> <li>• 사업자의 책임과 관련된 조항을 지나치게 포괄적이거나 불분명하게 규정하여 사업자의 자의적 해석을 통해 이를 면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이 있는가?</li> <li>• 고객이 약관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대리인에게 그 책임을 부담시키는 조항이 있는가?</li> </ul>

### 5.2. 상생협력법 관련 자율점검

구분	점검 항목
계약 체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수탁기업에 대한 제조 등 위탁시 위탁의 주요 내용이 기재된 약정서를 발급했는가?</li> <li>• 수탁기업으로부터 기술자료를 제공받아야 하는 경우, 기술자료 및 비밀유지 의무의 주요 내용이 기재된 비밀유지계약을 서면으로 체결했는가?</li> <li>• 납품 대금을 통상적인 경우보다 현저히 낮게 정하지는 않았는가?</li> </ul>
거래 과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수탁기업이 제공한 기술자료를 부당하게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지는 않았는가?</li> <li>• 정당한 사유 없이 통상적인 수준보다 발주 물량을 현저히 감소시키거나 중단하지는 않았는가?</li> </ul>
대금지급 및 검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수탁기업의 납품에 대해 객관적이고 타당한 검사기준을 바탕으로 신속히 검수하였는가?</li> <li>• 수탁기업의 귀책사유가 없는데도 물품 등의 수량을 거부하지는 않았는가?</li> </ul>



## 6. 영업비밀 체크리스트

### 6.1. 영업비밀 분야 자율점검

#### 6.1.1. 영업비밀 침해 행위

구분	점검 항목
취득	• 부정한 방법으로 타사의 영업비밀을 취득한 적이 있는가?
	• 경쟁사 영업비밀을 취득할 목적으로 경쟁사 임직원에게 금품이나 향응을 제공한 적이 있는가?
공개	• 컨소시엄으로 알게된 타사의 영업비밀을 제3자와 공유한 적이 있는가?
	• 협력사 기술 정보를 외부에 누설한 적이 있는가?
	• 협력사 기술 정보를 외부에 누설한 적이 있는가?
	• 제품의 전략화 계획 등 영업비밀을 협력사에 제공한 적이 있는가?
사용	• 업무상 확보한 영업비밀을 회사의 사전승인 없이 학술목적으로 사용, 공개한 적이 있는가?
	• 제 3자의 영업비밀 사용시 동의를 받지 않고 사용한 적이 있는가?
	• 경력자의 경우, 이전 회사에서 개발했던 소스 코드를 재사용하여 프로그램을 개발한 적이 있는가?

#### 6.1.2. 영업비밀의 보호

구분	점검 항목
비밀유지의무	• 영업상 비밀을 유지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부정한 이익을 위해 그 영업비밀을 사용한 적이 있는가?
퇴직자 등	• 퇴사자 또는 전배자 발생시 관련 영업비밀 인수인계 등 정해진 절차에 따른 조치에 따라 제대로 퇴사/전배가 이루어지고 있는가?

## V. 공정거래 관련 법령

1. 공정거래법 및 관련 법규
2. 하도급법 및 관련 법규
3. 부정경쟁 방지법 및 시행령
4. 약관법 및 관련 법규
5. 상생협력법 및 관련 법규



1. 공정거래법 및 관련 법규

※ 법규 클릭 시 해당 법규로 이동

구분	법령명
법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a href="#">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a></li> </ul>
시행령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a href="#">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a></li> </ul>
고시·지침	<b>시장지배적 지위남용</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a href="#">계속적 재판매거래등에 있어 거래상 지위 남용행위 세부유형 지정고시</a></li> <li>• <a href="#">부당 공동행위 자진신고자 등에 대한 시정조치 등 감면제도 운영 고시</a></li> <li>• <a href="#">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 심사기준</a></li> </ul>
	<b>기업결합</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a href="#">기업결합 관련 시정조치 불이행에 따른 이행강제금 부과기준</a></li> <li>• <a href="#">기업결합 시정조치 부과기준</a></li> <li>• <a href="#">기업결합 시정조치 부과지침</a></li> <li>• <a href="#">기업결합 신고규정 위반사건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a></li> <li>• <a href="#">기업결합 심사기준</a></li> <li>• <a href="#">기업결합의 신고요령</a></li> </ul>
	<b>경제력집중억제</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a href="#">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회사 등의 중요사항 공시에 관한 규정</a></li> <li>• <a href="#">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회사 등의 중요사항 공시의무 위반사건에 관한 과태료 부과기준</a></li> <li>• <a href="#">기업집단 관련 신고 및 자료제출의무 위반행위에 대한 고발지침</a></li> <li>• <a href="#">대규모내부거래 등에 대한 이사회 의결 및 공시에 관한 규정</a></li> <li>• <a href="#">대규모내부거래 등에 대한 이사회 의결 및 공시의무 위반사건 과태료 부과기준</a></li> <li>• <a href="#">독립경영 인정제도 운영지침</a></li> <li>• <a href="#">지주회사 관련 규정에 관한 해석지침</a></li> <li>• <a href="#">지주회사 설립·전환 신고 및 지주회사 등의 주식소유현황 등 보고에 관한 요령</a></li> <li>• <a href="#">합병관련 순환출자 금지 규정 해석지침</a></li> </ul>



1. 공정거래법 및 관련 법규

※ 법규 클릭 시 해당 법규로 이동

구분	법령명
고시·지침	<b>부당공동행위</b>
	• <a href="#">공동행위 및 경쟁제한행위의 인가신청요령</a>
	• <a href="#">공동행위심사기준</a>
	• <a href="#">사업자단체활동지침</a>
	• <a href="#">입찰에 있어서의 부당한 공동행위 심사지침</a>
	• <a href="#">행정지도가 개입된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심사지침</a>
	<b>불공정거래행위</b>
	• <a href="#">병행수입에 있어서의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고시</a>
	• <a href="#">부당한 지원행위의 심사지침</a>
	• <a href="#">불공정거래행위 심사지침</a>
	• <a href="#">신문업에 있어서의 불공정거래행위 및 시장지배적지위남용행위의 유형 및 기준</a>
	• <a href="#">재판매가격유지행위 심사지침</a>
	• <a href="#">재판매가격유지행위가 허용되는 저작물의 범위</a>
	• <a href="#">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거래상지위남용행위 심사지침</a>
	<b>심사절차</b>
	• <a href="#">경제분석 의견서 등의 제출에 관한 규정</a>
	• <a href="#">공정거래위원회 심판정의 질서유지를 위한 규칙</a>
	• <a href="#">공정거래위원회 회의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a>
	• <a href="#">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에 관한 운영지침</a>
	• <a href="#">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등의 위반행위의 고발에 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지침</a>
	• <a href="#">동의의결제도 운영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칙</a>
	• <a href="#">자료의 열람·복사 업무지침</a>
	• <a href="#">재신고사건 처리지침</a>



1. 공정거래법 및 관련 법규

※ 법규 클릭 시 해당 법규로 이동

구분	법령명
고시·지침	기타
	• <a href="#">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 운영 및 유인 부여 등에 관한 규정</a>
	• <a href="#">공정거래법 등 위반행위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a>
	• <a href="#">공정거래위원회 사건기록 관리 규정</a>
	• <a href="#">공정거래위원회 의결 등의 공개에 관한 지침</a>
	• <a href="#">공정거래위원회 조사절차에 관한 규칙</a>
	• <a href="#">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조치 운영지침</a>
	• <a href="#">과징금 납부기한 연장 및 분할납부 기준에 관한 고시</a>
	• <a href="#">과징금 환급업무 처리기준</a>
	• <a href="#">과징금부과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a>
	• <a href="#">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등에 의한 이해관계인 등 경비지급 규정</a>
	• <a href="#">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등의 위반여부 사전심사청구에 관한 운영지침</a>
	• <a href="#">법령 등의 경쟁제한사항 심사지침</a>
	• <a href="#">지식재산권의 부당한 행사에 대한 심사지침</a>
	• <a href="#">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행위 심사지침</a>
	• <a href="#">공동행위 및 경쟁제한 행위의 인가신청 요령</a>
	• <a href="#">공동행위 심사기준</a>
	• <a href="#">기업집단에서 제외되는 중소기업의 연간 연구개발비 비중 산정기준</a>
	• <a href="#">독립경영 인정제도 운영지침</a>
	• <a href="#">부당한 공동행위의 자진신고자 등에 대한 시정조치 등 감면제도 운영고시</a>
	• <a href="#">부당한 지원행위의 심사지침</a>
	• <a href="#">사업자 간 정보교환이 개입된 부당한 공동행위 심사지침</a>
	• <a href="#">사업자단체활동지침</a>
	• <a href="#">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정 기준금액 산정기준</a>



## 1. 공정거래법 및 관련 법규

※ 법규 클릭 시 해당 법규로 이동

구분	법령명
고시·지침	기타
	• <a href="#">소상공인 단체 행위에 대한 심사지침</a>
	• <a href="#">입찰에 있어서의 부당한 공동행위 심사지침</a>
	• <a href="#">지주회사 관련 규정에 관한 해석지침</a>
	• <a href="#">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행위 심사지침</a>
	• <a href="#">합병 관련 순환출자 금지 규정 해석지침</a>
	• <a href="#">행정지도가 개입된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심사지침</a>



## 2. 하도급법 및 관련 법규

※ 법규 클릭 시 해당 법규로 이동

구분	법령명
법률	• <a href="#">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a>
시행령	• <a href="#">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a>
고시·지침	• <a href="#">건설하도급대금 지급보증 면제대상</a>
	• <a href="#">기술심사자문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a>
	• <a href="#">기술자료 제공 요구·유용행위 심사지침</a>
	• <a href="#">대·중소기업간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 등에 관한 기준(하도급분야)</a>
	• <a href="#">부당특약 심사지침</a>
	• <a href="#">부당한 위탁취소, 수령거부 및 반품행위에 대한 심사지침</a>
	• <a href="#">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 및 감액 행위에 대한 심사지침</a>
	• <a href="#">선급금 등 지연지급 시의 지연이율 고시</a>
	• <a href="#">어음에 의한 하도급대금 지급시의 할인율 고시</a>
	• <a href="#">용역위탁 중 역무의 범위 고시</a>
	• <a href="#">용역위탁 중 지식·정보성과물의 범위 고시</a>
	• <a href="#">제조위탁의 대상이 되는 물품의 범위 고시</a>
	• <a href="#">하도급거래 공정화 지침</a>
	• <a href="#">하도급대금 지급관리시스템 지정고시</a>
	• <a href="#">하도급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에 관한 고시</a>
• <a href="#">하도급법상 요구가 금지되는 경영상 정보의 종류 고시</a>	

## 3. 부정경쟁 방지법 및 시행령

※ 법규 클릭 시 해당 법규로 이동

구분	법령명
법률	• <a href="#">부정경쟁 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a>
시행령	• <a href="#">부정경쟁 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a>



#### 4. 약관법 및 관련 법규

※ 법규 클릭 시 해당 법규로 이동

구분	법령명
법률	• <a href="#">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a>
시행령	• <a href="#">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a>
고시·지침	• <a href="#">약관심사지침</a>

#### 5. 상생협력법 및 관련 법규

※ 법규 클릭 시 해당 법규로 이동

구분	법령명
법률	• <a href="#">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a>
시행령	• <a href="#">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a>
고시·지침	• <a href="#">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a>
	• <a href="#">수탁, 위탁거래 공정화지침</a>

# 부록

## 1. H-Standard

## H-Standard (한화인의 기준)

구분	항목	세부 실천 사항
나	신의성실 및 품위유지	한화인으로서 자부심을 갖고 품위를 유지하며, 신의성실의 자세로 책임을 다합니다.
	공정·투명한 업무수행	법령, 상식과 원칙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업무를 수행하고, 업무와 관련하여 금품·이익을 수수하지 않습니다.
회사	동료 존중 및 배려	동료의 인격을 존중하고 다양성을 인정하며, 언어적·신체적 폭력, 성희롱, 따돌림 및 부당한 업무지시를 하지 않습니다.
	건강·안전한 업무 환경	우리의 안전을 위해 안전·보건 기준을 준수하고, 건강하고 활기찬 업무 분위기를 형성합니다.
	회사 자산 및 정보 보호	회사의 비용, 유무형 자산을 업무 목적에 맞게 사용하고, 영업비밀 등 회사 정보를 보호합니다.
	회사와의 조화	개인의 불법적 이익을 추구하지 않고, 사적인 관계로 인해 회사와 이해가 상충할 경우 회사의 이익이 침해되지 않도록 유의합니다.
사회	고객 존중	고객의 다양한 의견을 존중하고, 고객의 믿음과 만족을 위해 최선을 다합니다.
	사업파트너와 상생	사업파트너와의 상생을 통해 동반자로서 상호이익과 발전을 추구하고, 부당한 행위를 하지 않습니다.
	사회가치 존중	우리 사회의 보편적 가치를 추구하고, 사회규범과 약속을 존중하여 업무수행의 사회적 신뢰를 확보합니다.
	글로벌 스탠다드 준수	글로벌 스탠다드를 준수하고, 해외 현지 사회의 문화와 가치관을 존중합니다.

# 실천사항

품위 있고 깨끗한 나, 동료와 함께 만드는 건강하고 활기찬 회사, 고객·사업파트너와 동반성장하고, 사회가치를 존중하며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는 기업문화를 이루기 위한 우리 한화인의 기준\*을 실천하기 위해 다음 사항의 준수에 최선을 다합니다.

\* 한화인의 기준(H(Hanwha)-Standard): 한화인의 행동 양식 및 업무에 임하는 자세의 기준을 의미하며, 한화의 핵심가치인 ‘헌신’과 ‘정도’ 실천을 지향함

## 1. 신의성실 및 품위유지

한화인으로서 자부심을 갖고 품위를 유지하며, 신의성실의 자세로 책임을 다합니다.

- 회사의 경영이념을 이해하고, 성실하고 책임감 있게 업무에 임합니다.
- 나의 행동과 의사결정이 회사의 명성과 신뢰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인식하고, 절제되고 품격 있는 생활을 실천합니다.
- 업무, 일상, SNS활동 등에서 회사 또는 타인을 비방하거나 회사 이미지를 실추시키는 언행을 하지 않습니다.

## 2. 공정·투명한 업무수행

법령, 상식과 원칙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업무를 수행하고, 업무와 관련하여 금품·이익을 수수하지 않습니다.

- 공과 사를 명확히 구분하여 공정·투명하게 업무를 처리하고, 법규와 상거래 관습을 준수하며, 보편적 양식에 따라 행동합니다.
- 모든 정보는 정확·정직하게 기록하고 보고하며, 중요 사항을 누락하거나 허위로 기재하지 않습니다.
- 공직자 등에게 부정청탁을 하거나 청탁금지법이 금지하는 금품 등을 제공하지 않고, 이해관계자로부터 금품·향응·접대 등을 수수하지 않으며, 임직원 사이에서도 금품·향응·접대 등을 주고 받지 않습니다.

### 3. 동료 존중 및 배려

동료의 인격을 존중하고 다양성을 인정하며, 언어적·신체적 폭력, 성희롱, 따돌림 및 부당한 업무지시를 하지 않습니다.

- 동료의 능력과 경험, 다양성을 존중·배려하고, 성별·연령·학력·혈연·지역·학연 등을 이유로 우대하거나 차별하지 않습니다.
- 동료에게 고통을 주는 언어적·신체적 폭력, 성희롱, 따돌림 등을 하지 않습니다.
- 직무 권한 또는 지위를 남용한 부당한 업무 지시, 영향력 행사 등으로 근무환경을 해치지 않습니다.

### 4. 건강·안전한 업무 환경

우리의 안전을 위해 안전·보건 기준을 준수하고, 건강하고 활기찬 업무 분위기를 형성합니다.

- 안전기준에 맞게 안전 점검과 관리를 철저히 하여 직무상 사고, 부상, 재해, 질병 등을 예방합니다.
- 업무 집중과 휴식의 조화로운 배분으로 일과 삶이 균형을 이루는 직장을 만듭니다.
- 임직원 개개인의 자율과 창의성을 존중하여 건강하고 활기찬 근무환경이 되도록 노력합니다.

### 5. 회사 자산 및 정보 보호

회사의 예산, 유무형 자산을 업무 목적에 맞게 사용하고, 영업비밀 등 회사 정보를 보호합니다.

- 회사의 재산을 내 것처럼 아끼고, 회사의 예산과 자산을 규정·지침에 따라 목적에 맞게 사용합니다.
- 회사 자금의 횡령 및 사적 유용, 회사 자산의 절도 등 회사에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행위를 하지 않습니다.
- 회사의 지식재산권, 영업비밀을 보호하고, 외부에 유출하거나 사적 용도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 6. 회사와의 조화

개인의 불법적 이익을 추구하지 않고, 사적인 관계로 인해 회사와 이해가 상충할 경우 회사의 이익이 침해되지 않도록 유의합니다.

- 거래관계, 고용, 평가 등에 있어 사적 관계로 인해 회사의 이익이 침해되지 않도록 유의합니다.
- 미공개 정보, 업무상 취득한 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증권·투자상품 거래 등에 활용하여 개인의 불법적 이익을 추구하지 않습니다.
- 회사 업무에 영향을 주는 외부 영리활동에 참여하거나 겸업(이중취업) 또는 업무에 지장을 주는 부업활동을 하지 않습니다.

## 7. 고객 존중

고객의 다양한 의견을 존중하고, 고객의 믿음과 만족을 위해 최선을 다합니다.

- 고객 의견에 항상 귀를 기울이고, 고객 만족을 최우선 판단의 기준으로 삼습니다.
- 신용과 의리를 바탕으로 고객과의 약속을 지키며, 고객의 이익 보호를 위해 끊임 없이 노력합니다.
- 개인정보유출 등으로 고객이 부당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고객보호에 만전을 기합니다.

## 8. 사업파트너와 상생

사업파트너와의 상생을 통해 동반자로서 상호이익과 발전을 추구하고, 부당한 행위를 하지 않습니다.

- 관계 법령에 규정된 기준과 절차에 따라 거래 기회를 공정하게 부여하고, 투명하고 공정한 거래를 위해 노력합니다.
- 상호신뢰, 협력 관계를 유지하며, 사업파트너의 지식재산권과 영업비밀을 존중합니다.
- 사업파트너와의 관계에서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무례한 언사, 부당한 행위 등을 하지 않습니다.

## 9. 사회가치 존중

우리 사회의 보편적 가치를 추구하고, 사회규범과 약속을 존중하여 업무수행의 사회적 신뢰를 확보합니다.

- 개개의 행동에서 우리 사회의 윤리규범을 준수하며, 사회적 신뢰를 얻도록 합니다.
- 사회의 보편적 가치를 실현함으로써 나의 활동이 사회와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노력합니다.
- 우리 사회의 다양성을 존중하고, 회사의 업무 처리와 관련하여 사회적 이슈나 정치적 견해에 대해서 중립적 입장을 견지합니다.

## 10. 글로벌 스탠다드 준수

글로벌 스탠다드를 준수하고, 해외 현지 사회의 문화와 가치관을 존중합니다.

- 국제협약, 국제회계기준, ESG 관련 규범 등 세계적으로 통용되는 기준을 준수합니다.
- 해외 현지 사회의 문화와 전통을 널리 이해하고, 해당 지역의 가치관을 존중합니다.
- 글로벌 기업시민으로서 모두의 지속가능한 발전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합니다.

# End of document

- 발행부서: 한화에너지(주) 법무팀
- 발행연월: '23. 6.
- 개정연월: '26. 4.

※ 본 자율준수 편람의 무단 복제·배포·수정 시 관련 법령에 따라 민형사상 책임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의바랍니다.

※ 본 자율준수 편람과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법무팀으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